

발 간 등 록 번 호
11-1380729-00003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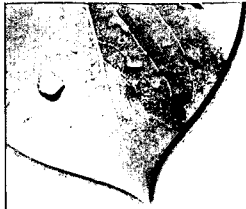
지리적표시 등록업무 추진 백서

- 보성녹차 등록사례를 중심으로 -

농 립 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머 / 리 / 말

우리나라는 WTO의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국제적으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보호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농산물과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99. 7. 1부터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리적표시등록제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며, 기본적으로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서는 당해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생산하는 그 지역의 전체 생산자가 단체를 구성하고, 자체적으로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품질의 특성이 지리적인 요인에 기인된다는 자료를 준비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등록된 보성녹차의 신청, 심의 및 등록과정을 정리하여 책자로 발간하였습니다.

농산물시장의 국제적인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자료가 우리 농업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지리적표시제도 관련 최신 자료들을 우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의 “자료실”에 게시하겠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기 바랍니다.

2002.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서연

목 차 CONTENTS

I.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

1. 지리적표시등록제 도입 및 보성녹차 등록 경과	3
2.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요약)	7
3. 지리적표시등록 심의회 자료(요약)	35
4.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1차) 개최결과(보고서)	64
5.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	70
6.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자료조사 결과 보고서(요약)	82
7. 지리적표시등록 심의결과 및 통보 문서	120
8.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사항 공고(요약)	128
9. 지리적표시 등록증 교부 및 등록사항 공고	130
10.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추진일지(요약)	149
11. 보성녹차 지리적특산품의 표시 및 출하	158

II. 지리적표시등록제도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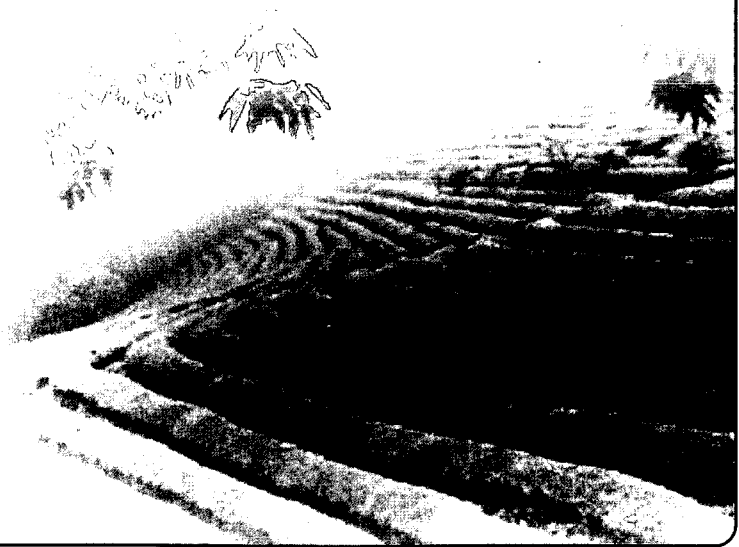
1. 개요	161
2. 외국의 지리적표시제 운용현황	176

3. 지리적표시 등록절차와 주요내용	189
4. 지리적표시등록제도 세부내용	191
5.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의 선결요건 및 성공요인	200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작성예시	207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작성방법	208

III. 참고자료

1. 지리적표시등록제도 관련법령(발체)	217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 고시	224
3. 지리적표등록심의회 구성운영규정	225
4.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 명단	229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번호	230

I. 보성녹차 지리적 표시 등록



1. 지리적표시등록제 도입 및 보성녹차 등록 경과

가. 지리적표시등록제 도입배경 및 목적

- ▶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음
- ▶ 「TRIPs」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의무화하고 있으나, EU는 '92년부터 EU규정을 제정하여 지리적표시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고,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등록제 도입
- ▶ 지리적표시등록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정보제공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가 그 목적
 -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도모
 - 국내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나. 지리적표시등록제 실시경과

-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시행근거 규정마련('99.7.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용규정 제정(2000.9.21)
- ▶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고시(2000.9.26)



- 녹차,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2001.8.25)
- 당연직 10명, 위촉직 17명

다.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 경과

- ▷ 전남 농업기술원 차 시험장에서 지리적표시제 시책교육 실시(2001.2.27)
 - 녹차생산자 19명, 보성군·차시험장·농관원 관계자 등 9명 참석
 - 보성 녹차의 지리적 표시제 추진을 결의하고 추진 주체로서 “보성녹차 생산자 협의회”에서 주관하기로 결정(협의회장 : 최연호)
-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2001.3.19~4.13)
 - 장소 : 전남농업기술원 보성 차 시험장
 - 참석 :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차 시험장, 농관원, 녹차 생산업체 등
 - 협의회 구성 및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항 검토(3.19)
 - 지리적표시등록에 따른 업체관계자 회의 및 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설명, “보성 녹차 생산자 협의회” 내에 지리적표시 업무주관 부서를 신설키로 하고 그 책임자로 조상래(보성신옥로제다) 선임(3.27)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단체 회칙 제정, 녹차 생산계획서 작성, 녹차 품질의 특성 설명, 자체 품질기준 협의(4.13)
-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 준비(2001.5.20이후)
 - “보성녹차 생산자 협의회”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서 표시등록 서류 준비, 7월 중순경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추진
-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추진 여건조사 현지출장(2001.7.9~7.10)
 - 전남농업기술원 차 시험장, 녹차가공공장, 보성녹차 생산자협의회 등
 -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추진상황, 녹차 생산현황,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의 문제점, 기타 생산시설 견학 등

-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2001.8.23)
 - 영농조합법인 → 전남지원 보성출장소 → 전남지원 → 원장
- ▶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요청(2001.8.31)
 - 농관원장 → 보성녹차연합회장
 -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2. 보성녹차의 품질특성, 5. 지리적표시지역의 표시, 6. 차제품 품질기준, 7. 품질관리계획서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류 보완제출(2001.9.3)
- ▶ 지리적표시등록 심사요청 및 등록심의회 개최계획 통보(2001.9.4)
 - 농관원장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및 심의회 위원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개최(2001.9.11) 및 결과보고(9.12)
 - 위원장 : 박노형 고려대학교수
 -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재심의
 - 조사위원 구성 : 5명(당연직 3, 위촉직 2)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2001.9.14)
 - 심의회 위원장 → 심의회 위원, 농관원장
 - 회의안건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신청한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상 관련자료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회의
 - 협조요청사항 : 신청서원본 열람, 조사위원 활동비 지원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1차, 2001.9.19)
 - 조사위원장 : 황종환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 각 위원별로 위원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취합한 후 위원장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기로 함
-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심의 자료조사를 위한 현지출장(2001.11.4~11.6)
 - 출장자 : 4명(위원 3, 서기 1)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회원사 공장여건 및 품질관리 실태, 차밭조성실태, 보성녹차의 특성 및 명성, 품질관리 의지 등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2차, 2001.11.14)
 - 장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회의실(서울)
 - 토의 결과 제시된 의견을 서기가 정리하여 종합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참석한 조사위원 공람 및 의견을 첨삭하여 최종보고안을 작성
 - 작성된 최종보고안을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이 되면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키로 함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3차, 2001.12.04)
 - 작성된 보고서 내용 중 조사자 소수의견 및 최종결론 부분 수정키로 함
 - 보고서를 수정한 후 조사위원모두 서명하여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
-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심의 자료조사결과 보고서 제출(2001.12.05)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 심위위원장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개최(2001.12.11)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등록기준 적합 심의 의결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개최결과 보고(최종) 및 심의 결과 통보(2001.12.12)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 농관원장
- ▷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공고 관보게재(농관원공고 제2001-2호, 2001.12.18) 및 농관원 홈페이지 게재(1개월간 이의신청 접수)
- ▷ 지리적표시의 등록증 교부 및 공고(농관원공고 제2001-1호, 2002.1.25)
 - 신청자에게 등록증 교부, 관보게재 의뢰, 농림부보고, 지원 및 보성군 통보, 홈페이지 게시
 -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문 관보게재(2002.1.30)

2.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류(요약)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6월				
신청서	단체명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대표자	최연호				
	주소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762-4번지				
생산계획	품목	녹차				
	재배면적	237 ha	생산지역	보성군관내	생산량 (등록신청량)	188,900kg (10,210)
	포장또는 가공공장소재지	보성군 관내(14업체)				
지리적표시 등록의 주요내용	보성녹차(우전, 곡우, 세작)					
<p>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01년 8월 일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 연합회 신청인 대표 최연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포함 한다. 2.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3.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6. 자체품질기준 1부 7. 품질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건당10만원 (수입인지 뒷쪽붙임)	

1. 생산계획서

가. 단체의 생산계획서

▷ 등급별 원료 총 생산량(생엽기준)

업체명	면적	생 산 량				
		계	상 품 (곡우,세작)	중 품 (중작)	하 품 (대작)	기 타 (엽차,티백)
10a당 평균		kg 412	kg 26	kg 25	kg 29	kg 332
합계	ha 237	976,100	61,266	59,266	68,977	786,591
영농조합법인보 성제다	74	296,000	17,760	17,760	20,720	239,760
대한다업(주)	50	200,000	12,000	12,000	14,000	162,000
신옥로제다	20	90,000	5,400	5,400	6,300	72,900
동양다원 영농조합법인	8	60,000	3,600	3,600	4,200	48,600
보성녹차영농 조합법인2공장	32	128,000	7,680	7,680	8,960	103,680
은곡다원	5	35,000	2,100	2,100	2,450	28,350
붓재다원	14	52,000	3,120	3,120	3,640	42,120
성원식품	4	23,100	1,386	1,386	1,617	18,711
반야다원	4	28,000	1,680	1,680	1,960	22,680
보성작설원	5	35,000	2,100	2,100	2,450	28,350
샘골녹차	2	8,000	480	480	560	6,480
징광입차공장	13	2,000	2,000	-	-	-
동다원	2	3,000	1,000	1,000	1,000	-
(주)남양다원	4	16,000	960	960	1,120	12,960

▶ 등급별 가공품 총생산량(제품기준)

업체명	제품명	면적	생 산 량				
			계	상 품 (곡우,세작)	중 품 (중작)	하 품 (대작)	기 타 (엽차,티백)
10a당 평균			kg 79.7	kg 4.3	kg 4.2	kg 4.8	kg 66.4
합 계		237ha	188,900	10,210	9,877	11,495	157,318
영농조합법인 보성제다	보성녹차	74	57,325	2,960	2,960	3,453	47,952
대한다업(주)	봉로차	50	38,733	2,000	2,000	2,333	32,400
신옥로제다	옥로차	20	17,430	900	900	1,050	14,580
동양다원 영농조합법인	유비차	8	11,620	600	600	700	9,720
보성차영농조합 법인2공장	보성녹차	32	24,789	1,280	1,280	1,493	20,736
은곡다원	은곡녹차	5	6,778	350	350	408	5,670
붓재다원	수재차	14	10,071	520	520	607	8,424
성원식품	성원차	4	4,473	231	231	269	3,742
반야다원	반야차	4	5,423	280	280	327	4,536
보성작설원	보성 작설차	5	6,778	350	350	408	5,670
샘골녹차	샘골녹차	2	1,549	80	80	93	1,296
징광입차공장	진차	13	333	333	-	-	-
동다원	봉정차	2	499	166	166	167	-
(주)남양다원	보성산 녹차	4	3,099	160	160	187	2,592

나. 지리적표시 참여 가공업체 현황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1	영농조합법인 보성제다	최연호 서찬식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762-4	(061) 853-4116
2	대한다업(주)	장영섭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1921	(061) 852-2593
3	신옥로제다	조상래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7-9	(061) 852-8283
4	동양다원 영농조합법인	김영숙	보성군 보성읍 봉산리1212-5	(061) 852-2255
5	보성녹차영농 조합법인2공장	임화춘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935-7	(061) 853-3000
6	은곡다원	주영순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94	(061) 852-8412
7	붓재다원	임흥준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1-7	(061) 853-1117
8	성원식품	안효봉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394	(061) 853-3529
9	반야다원	이상봉	보성군 회천면 영천리34	(061) 853-5194
10	보성작설원	서찬식	보성군 노동면 대련리523-3	(061) 853-4116
11	샘골녹차	박춘순	보성군 미력면 초당리423	(061) 852-2367
12	징광입차공장	차정금	보성군 벌교읍 징광리857-1	(061) 857-1156
13	동다원	정보금	보성군 문덕면 봉갑리931	(061) 852-5665
14	(주)남양다원	임대접	보성군 벌교읍 연산리 616	(061) 858-0160

2. 보성녹차의 품질특성

가. 보성녹차의 성분함량

구분	총질소 (%)	아미노산 (mg/100g)	탄닌 (%)	카페인 (%)	엽록소 (%)
보성녹차	4.6	1,347	14.1	3.3	4.6

※ 자료: 차 시험장(2001), 보성 지방 녹차 제품상품의 평균치임

- ▶ 보성 녹차는 총질소와 총아미노산 함량이 낮아 맛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며 음용 후 감칠 맛이나고 탄닌 함량이 적당하여 떫고 쓴맛 등 5미가 분명하다. 또한 향과 맛이 독특하며 수색이 맑아 음다의 욕구를 촉진시켜주며 다음에 다시 찾게되는 것이 특징임

나. 보성녹차의 품질특성

- ▶ 득량만과 보성강에서 일어나는 안개를 먹고 자란 부드럽고 살찐 햇차의 어린잎(雀舌크기)을 손으로 채취한후 빠른 시간내에 덥음 또는 증열처리를 하여 발효를 정지시킨 후 유념하는 등 보성녹차 특유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거치므로서 독특한 맛, 향 등이 뛰어나며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있는 제품으로서 보성녹차는 안심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고품질 녹차로 평가받고 있음

다. 품질특성에 관한 설명

(1) 품종(종자) 특성

- ▶ 보성 지방에 자라고 있는 차는 일본차나 중국차에 비해 기(氣)가 풍부하며 이 지역의 기후풍토에 수 백년 동안 적응하여온 재래종으로서 특이한 향과, 맛 을 갖고 있으며 여러 잡종 집단이 되어 차의 맛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특유한 맛을 내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음



(2) 경작과정상의 특징

- ▶ 보성강과 득량만 주변, 제암산 및 존재산 아래에 남향으로 다원이 형성되어있어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아 고품질 차를 생산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음
- ▶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고급차 생산시기인 4월중 온도가 타 지역보다 0.7~2.4℃ 높아 차의 생장이 빠르며 차의 생장에 최적 조건을 이루고 있음
- ▶ 토양은 미량요소가 풍부하며 수확 후 영양소의 공급을 위해 매년 봄, 가을에 유기물인 퇴비위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후와 토양 여건이 차의 주산지의 구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최상의 품질을 자연이 제공해 주고있음

라. 가공과정

(1) 우전(雨前茶), 곡우(穀雨茶), 세작(細雀)

- ▷ 이른봄 첫 싹이 처음 나오는 4월에 어린잎이 1심 2엽이 되면 손으로 새순을 채취한다(곡우이전(우전)과 곡우무렵(곡우)). 새순채취 기간은 채취 시작일 부터 5 ~ 7일에 한정
- ▷ 세작은 약간 뒤인 4월하순~5월 초순까지 새순이 1심 2엽인 새잎을 손으로 채취하며 새순채취기간은 10일이내
- ▷ 수확후 빠른 시간 내에 덩음 또는 증열 처리로 발효를 중지시키고 유념작업을 7 ~ 8회 반복하여 수분이 5% 정도 되도록 건조하여 보관하였다가 출고직전 가향(加香) 처리 과정을 거쳐서 녹차 특유의 5미(쓰고, 뽀고, 시고, 달고, 짠맛)를 갖는 상품을 생산

(2) 중작

- ▷ 상품의 채취가 끝나면 온도가 높아져 차잎이 자연히 크고 넓어지므로 1심 2~3엽의 새순을 손으로 채취하여 우전, 곡우, 세작의 제조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다한다. 이때는 특히 온도가 높으므로 수확후 오랜시간 방치하지 않고 제다하는 것이 특징임

(3) 대작

- ▶ 중작의 채취가 끝나면 온도가 높아져 차잎이 자연히 크고 넓어지므로 1심 2~3엽의 새순을 손으로 채취하여 중작의 제조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다한다. 이때는 특히 온도가 높으므로 수확후 오랜시간 방치하지 않고 제다하는 것이 특징임

마. 포장과정

- ▶ 녹차의 포장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소포장 은박비닐에 100g 또는 50g씩 밀봉하여 습기와 외부의 공기 침입을 막고, 지관 또는 나무 상자에 100g씩 넣어서 완전 상품화한다

3.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역사적 입증자료

- ▶ 우리나라에 차가 자라고있는 곳은 총 261개소이며 그중 전라도 지방에는 235개소가 자생되고있으며 복홀군(伏忽郡)이 마한에서 백제로 통합(근초고왕(369년경)되면서 처음으로 차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고 기록
※ 별첨자료 있음: (1)-가1 ~ 가6
- ▶ 동국여지승람(1478年)보성군편(卷47,705面)土產品으로 茶生産
※ 별첨자료 있음: (1)-나1 ~ 나6
- ▶ 山陽誌(송정기원후재신유:1741년2月刊行)에 茶가 土產品으로 記錄, 1478年이전부터 茶가 생산되고 있다고 기록
※ 별첨자료 있음: (1)-다1 ~ 다3
- ▶ “다향 보성”의 탐(탐의사진 첨부)
목포 - 부산간 국도 2호선 변 소공원에 세워진 탐, 비문에 수백년 전부터 차를 생산하여 왕실에 진상하기도 하였거니와 세금으로 차를 현물로 납세 하였다고 기록

※ 별첨자료 있음: (1)-라1 ~ 라5

▶ 보성군사(1995년 발행)

“차문화의 증흥과 보성(제5장)” 수백년 전부터 차를 재배하여 오다 수요의 증가에 따라 1960년부터 확대 재배로 매년 재배면적의 증가와 생산량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기록

※ 별첨자료 있음: (1)-마1 ~ 마15

나. 국내외 인지도 (유명성)

▶ 1985년부터 매년 5월중에 실시하는 보성의 차를 알리는 “보성다향제”는 전국규모의 차 문화 행사로서 전국 각지의 차 애호가들이 참관하고, 최고의 품질의 차를 만드는 행사에 참여하여, 한국차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다향 보성으로서 명실 상부한 한국 최고의 차의 자리 차지

※ 별첨자료 있음: (2)-1

다. 수상경력 주요 언론보도

(1) 수상경력

▶ 2000년 6월 한·중·일 공동 주최하고 중국에서 주관하는 제2회국제명차 평심위원회에서 주최한 국제 차박람회교역회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관내 보성제다에서 출품하여 차 영예상을 받은 바 있으며, 1991년부터 매년 11월에 열리는 전국 농수특산물 경진대회에서 매년 출품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음

※ 별첨자료 있음: (3)-가1~ 가2

(2) 언론보도

▶ 신문분야

국내 중요 일간신문, 조선, 동아, 대한, 중앙, 경향, 한겨레, 스포츠 관련신문 등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물론 주간, 월간 신문잡지 등 수 많은 보도가 되었음

※ 별첨자료 있음 : (3) 신문분야 1 - 35

▶ T.V분야

KBS 뉴스와 6시내고향, 생방송 오늘, 맛자랑 멋자랑, MBC 뉴스 생방송 모닝스페셜, 고향은지금, SBS 뉴스, 생방송 모닝와이드 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보성녹차의 우수성이 보도되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음

※ 별첨자료 있음

라. 품질 인증등에 의한 인증여부

▶ 보성 지방의 제다업체에서는 그 동안 품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여온 결과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바 있음

주 소	업체명	상품명	인증구분	인증년월일	인증번호	인증품목 및 규격
보성군 미력면	보성제다	보성녹차	전통식품	1999.09.13	농림전통	녹차(방습포장녹차
도개리 762-4	곡우	품질인증	140호			뒤음차/고급TO24)
보성군 보성읍	동양다원	유비차	"	2000.03.14	농림전통	녹차(방습포장녹차
봉산리 1214	영농조합	148호	.			뒤음차/고급TO24)
보성군 회천면	봇재다원	보성	"	2000.12.14	농림전통	녹차(방습포장녹차
영천리 1 - 7	수제차	156호				뒤음차/고급 TO24)

4. 품질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련성

가. 대상지역의 행정구역

▶ 동경 127.10도 북위 34.5도를 중심으로 면적은 662.29km²의 보성군 일원으로 한다. 남쪽은 해안선인 득량만과 순천만 일부를 경계로 한 회천면 일대와 제암산 주변, 보성읍을 중심으로 보성강이 흘러 주암호에 이르는 주변지역, 존재산 아래 징광계곡을 대상지역으로 함

나. 지리적 기상특성

▶ 이 지역은 년 평균기온은 13.4℃이고 강우량도 1,459mm로서 차나무재배에 알맞은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이다. 특히 3월부터 10월 생육기 중에 1,310mm의 많은 비가 내려 차의 생육을 좋게 해줌

〈표 1〉 차 재배 지역별 온도 분포

지역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평균 기온
광주	-0.6	1.1	5.7	11.4	16.8	21.4	25.6	26.1	20.9	14.0	8.2	2.4	12.8
보성	0.4	1.5	5.2	13.6	17.8	21.2	24.8	25.8	21.4	15.1	8.1	2.3	13.4
강진	0.5	1.8	5.6	12.4	17.1	21.4	23.8	26.4	21.2	14.6	8.4	2.4	12.9
광양	0.5	1.8	6.6	12.9	18.1	21.6	24.7	26.3	21.2	15.5	4.3	2.0	13.0
구례	-0.1	1.7	6.5	12.9	17.6	22.0	25.3	25.8	20.8	14.5	7.5	2.1	13.0
하동	-0.4	1.0	4.8	11.2	17.2	21.8	24.9	25.6	20.8	15.8	10.0	3.2	15.9
서귀포	6.0	6.6	9.7	14.0	17.9	20.9	25.1	26.7	23.2	18.5	13.4	8.4	15.9

〈표 2〉 차 재배 지역별 강우량 분포

지역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광주	31.5	34.4	69.1	82.1	92.0	168.8	222.6	201.2	189.5	51.9	42.9	56.8	1,222	
전남	보성	13.5	58.2	70.0	184.0	138.3	273.1	218.7	254.9	125.9	45.4	42.7	35.0	1,459
	강진	34.0	32.8	71.2	164.2	101.2	254.2	204.8	232.1	135.4	47.0	45.4	36.2	1,227
	구례	30.5	37.7	62.2	97.5	96.7	205.2	320.4	264.0	134.8	50.7	48.3	25.8	1,374
서귀포	57.8	77.2	108.0	188.7	205.9	282.3	282.6	216.5	160.9	71.3	78.4	41.8	1,776	
경남 하동	49.2	55.6	73.1	158.4	108.1	188.0	201.8	226.4	120.0	87.5	48.6	42.0	1,358	

다. 토양특성

- ▶ 토양은 사양토로 많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잘되며 바다와 강이 인접해있어 온도가 따뜻하고 안개 일수가 많아 차나무 성장기에 많은 수분을 공급하는 한편 그늘을 마련하여 주어 차의 맛을 좋게하는 천혜의 특징을 갖고 있음

라. 지리적요인과 품질특성과의 인과관계

- ▶ 토양: 사양토로서 맥반석 지대의 토양으로 토심이 깊음
- ▶ 기후: 바다와 호수가 인접해있어 차나무 성장에 가장 적합한 기온, 강우량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 지형: 차가 자생되는 곳은 대부분 남향이며 야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특히 계곡이 많으며 주변지역보다 표고가 높은 분지 형태를 이루고있어 사계절의 한계가 뚜렷하며 일중 온도 교차가 많은 것이 특징임
- ▶ 호수, 바다: 북쪽으로는 보성강과 주암호로 둘러 싸고있어 내륙성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득량만, 순천만의 해양성 기후가 받혀주고 있어 연중 안개 일수가 많아 차 맛이 독특함
- ▶ 차의 최상품의 품질을 유도해 주는 기후, 토양, 지형, 호수, 바다 등이 잘 어울려져 최고급 차의 품질을 만들어주는 천혜의 고장임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가. 지리적표시 지역의 대상범위는 행정구역상 보성군으로 한다.

※ 보성군 관내 차 재배 및 생산 현황

년도	제다업체의수	재배농가	재배면적	년간 생산량	비 고
1996	8	80 호	291 ha	436.5 톤	
1997	8	85	311	466.5	
1998	11	125	358	537.0	
1999	13	137	392	588.0	
2000	16	158	425	637.5	

나. 대상지역의 표시

※ 별첨 보성군 지도 1/50,000 지도에 신청인의 차밭을 표시함



6. 자체 품질기준

1. 적용범위

- ▶ 이 규격은 차나무(*Camellia sinensis* var *sinensis*)의 어린잎과 순을 원료로 하여 열처리, 방냉, 비비기,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하고 포장된 제품으로써 침출후 음용되는 녹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뜻

- 2.1 방습포장 : 다관을 이용하여 침출시켜 음용하는 녹차에 있어서, 고유의 형태를 유지한 녹차를 방습성이 우수한 포장재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 2.2 비비기 : 원료의 열처리 이후에 행하여지는 공정으로서, 명석을 이용한 수작업 또는 유념기 등을 이용한 비비기에 의하여 개개의 어린 차잎 및 순은 활모양, 말굽모양 등으로 말린 일정한 형태를 가지게 되며, 과숙한 차잎은 성형되지 못하고 부서지게 된다.
- 2.3 덩음차 : 가마솥 또는 회전솥 등에서 덩는 것에 의하여 원료 차잎의 효소작용을 억제한 후 비벼서 제조한 녹차를 말한다.
- 2.4 찢차 : 뜨거운 증기에 노출시켜서 원료 차잎의 효소작용을 억제한 후 비벼서 제조한 녹차를 말한다.
- 2.5 줄기 및 헝잡물 : 차잎 채취시 혼입된 성숙한 줄기, 씨앗, 성숙해서 비벼지지 않은 차잎 및 차나무 유래가 아닌 다른 물질 등 녹차의 원료로 이용될 수 없는 성분을 말한다.
- 2.6 분말 : 차잎 및 순이 미세하게 파쇄된 것으로, 침출시 침출액중에 현탁되어 차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입자를 말한다.
- 2.8 황엽 : 노화엽 및 병들어 황색으로 변색된 차잎을 말한다.



3. 종류

3.1 방습포장 녹차

3.1.1 덩음차 : 특급(우전, 곡우, 세작)

3.1.2 찢차 : 특급(우전, 곡우, 세작)

4. 품질

4.1 품질기준

4.1.1 다음 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품질 기준표

항 목	기 준		
	특 급	고 급	중 급
관능품위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분말(%)	2.5이하	2.5이하	2.5이하
줄기 및 협잡물(%)	3.0이하		
수분(%)	6.0이하		
회분(건물%)	5.5이상	4.5이상	4.5미만

비고 : 1. 회분은 최고 6.0%를 초과할 수 없다.

2.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차 생산을 위하여 총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않으나, 맛이 느끼하지 않도록 총질소함량이 높지 않아야 한다.

4.1.2 표1이외의 위생 요구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4.2 등급기준

4.1.1 차의 유통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품명으로 등급을 부여하되, 우전, 곡우, 세작급에 대해서만 지리적 표시를 한다.

〈표 2〉 관능품위 기준

대 상	항 목	채 점 기 준
건 조 차 잎 (제 품)	형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잎이 말아진 상태가 매우 균일하고 고유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부서진 차잎과 황엽이 거의 없는 것은 5점으로 한다 ▷ 차잎의 말아진 상태가 대체로 균일하고 고유의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있으며, 부서진 차잎과 황엽이 약간 있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차잎의 말아진 상태가 불균일하고 고유의 형태가 유지되지않았으며 부서진 차잎과 황엽이 많은 것은 2점으로 한다 ▷ 차잎이 말아진 상태가 극히 불균일하고 고유의 형태가 전혀 유지되지 않았으며 부서진 차잎과 황엽이 매우 많고 이물이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색 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잎 고유의 녹색이나 진녹색이 선명하며, 색택이 균일하고 윤기를 가진 것은 5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녹색이나 진녹색이 비교적 선명하며 색택이 대체로 균일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색이 퇴색되어있고, 갈색, 적색, 흑색, 청흑색 등으로 변색된 차잎이 포함된 것은 2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색이 매우 퇴색되어있고 갈색, 적색, 흑색, 청흑색 등으로 변색된 차잎이 많이 포함된 것은 1점으로 한다.
열 수 추 출 물	수 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색이 선명한 담록색 또는 황록색을 띄며 잔사가 거의 없어서 매우 맑은 것은 5점으로 한다 ▷ 수색이 비교적 선명한 담록색 또는 황록색을 띄며 잔사가 약간있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수색이 적색, 흑색, 청색, 적흑색을 띄며 잔사가 많아서 탁한 것은 2점으로 한다 ▷ 수색이 적색, 흑색, 청색, 적흑색을 띄며 잔사가 매우 많아서 몹시 탁한 것은 1점으로 한다
	향 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양호하고 향기가 매우 신선하며 이미 · 이취가 없는 것은 5점으로 한다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비교적 양호하고 향기가 신선하며 이미 · 이취가 없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부족하며 짙은 맛이 강하고 이미, 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 짙은 맛과 이미 · 이취가 강한 것은 1점으로 한다.

5. 시험방법

- ▶ 품질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은 농산물가공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시험방법 규정에 따른다.

6. 제조·가공기준

6.1 공장입지

- 6.1.1 주변환경이 제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없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 6.1.2 공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6.2 작업장

- 6.2.1 제품생산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작업에 지장이 없는 넓이 및 밝기를 갖추어야 한다.
- 6.2.2 작업장의 내벽은 내수성 자재이어야 하며 원료처리장 및 내포장실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내수성자재로 설비하거나 방균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 6.2.3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성자재를 이용하여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며, 또한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6.2.4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창문을 갖추거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창문, 출입구 기타의 개방된 장소에는 쥐 또는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 6.2.5 원재료, 기구 및 용기류를 세척하기 위한 세척설비 및 청결한 물을 충분히 급수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3 보관시설 : 보관시설은 원·부자재 및 제품을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고, 내구력이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6.3.1 원·부자재의 보관시설 : 원·부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이 가능한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보관중 변질되지 않고 먼지 등의 이물이 부착 또는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6.3.2 제품보관시설 : 제품 보관중 품질의 변화를 막기 위하여 고온다습하지 않아야 한다.

6.4 제조설비 : 제조과정중 설비의 불결이나 고장 등에 의한 제품의 품질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세척 및 점검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주요 기계,기구 및 설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제조설비 사항

(1) 열처리 설비	(2) 비빔설비	(3) 방냉설비	(4) 건조설비
(5) 포장설비			

비고 : 기능의 특수성에 의하여 제조설비를 증감 할 수 있다.

6.5 자재기준

6.5.1 원자재

- (1) 원료 생엽은 전남 보성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사용할 원료 차 잎의 채취시기 및 크기는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우전 :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이전에 채취한 차 잎으로 우전차 고유의 잎 크기(1.5~2.0cm)인 1심2엽을 사용한다.
 - (나) 곡우 :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 잎으로 곡우차 고유의 잎 크기(2.0~2.5cm) 이내의 1심2엽을 사용한다.
 - (다) 세작 :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 잎으로 세작 고유의 잎 크기(2.5~3.0cm) 이내의 1심3엽을 사용한다.
- (3) 원료 차 잎의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환경친화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원료 차 잎을 생산하기 위하여 잘 부숙된 유기질 퇴비를 연간 ha당 20톤 이상을 사용하여 토양관리를 하되, 토양염류 집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 방제는 환경친화적인 방법 성페르몬, 유아동, 끈끈이트랩 등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우수한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차 밭 ha당 우전, 곡우, 세작의 최대채취량은 보성지역 평년작 평균 단수를 적용하여 연간 300kg을 초과할 수 없다.

6.5.2 용수 :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 시험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 적합 시험을 받아야 한다.

6.6 주요 공정기준

6.6.1 이 규격에서 규정하는 녹차의 원료는 차나무의 어린잎과 순으로 한정하며, 신선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6.2 채취한 원료는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신속히 열처리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6.6.3 원료의 열처리는 고유의 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6.6.4 비비기에 사용되는 설비는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6.5 가공공정을 통하여 이물 및 과숙한 차잎을 제거하여야 하며, 가공 전과정에서 이물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6.6 녹차의 포장재는 적절한 차광성 및 방습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6.6.7 기타 주요 공정은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의 수를 증감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공정에 대한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 포장

7.1 포장재 :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소포장 은박비닐로 밀봉하여 습기와 외부의 공기 침입을 막고, 지관 또는 나무상자에 100g씩 넣어서 상품화한다.

7.2 단위포장내용량 : 속포장은 100g, 50g 단위로 포장한다.

8. 표시

8.1 일괄표시사항 : 다음 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목명	(2) 규격번호	(3) 등급	(4) 원재료명
(5) 차잎 채취지역	(6) 차잎 채취시기	(7) 내용량	(8) 유통기한
(9) 보존방법	(10) 제조자		

비고 : 1.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 및 테의 색은 배경의 색과 대조적이어야 한다.

2.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KSA 0201(활자의 기준치수)에 규정하는 8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활자로서 글씨는 고딕체로 한다.

8.2 지리적특산품의 표시 : 보성 녹차(우전, 곡우, 세작)

8.3 표시방법

8.3.1 일괄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품목명 : 제조방법에 따라 “녹차(뒤음차)” 또는 “녹차(찜차)” 라고 기재한다.
- (2) 규격번호 : 규격번호는 T000으로 표시하거나, 생략 가능함
- (3) 등급 : “특급” 으로 표시
- (4) 원재료명 : “차잎” 또는 “녹차엽” 으로 기재한다.
- (5) 차잎 채취지역 : “전라남도 보성군” 으로 표시
- (6) 차잎 채취시기 : 해당제품의 차잎 채취시기를 “년 월 (상, 중, 하)순” 으로 기재하되, 채취시기가 서로 다른 차잎이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나중에 채취된 차잎의 채취시기만을 기재한다. 단, 인쇄공정상 항목명 바로 뒤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표시란 밖에 해당항목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보기 : “2002년 5월 상순” 또는 “차잎 채취시기 : 2002년 5월 상순”

- (7) 내용량 : 내용량을 g 또는 kg 단위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 (8) 유통기한 : 제품의 품질수준이 본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 될 수 있다고 생산자가 인정하는 기한을 기재한다. 단 인쇄 공정상 유통기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표시란 밖에 표시하여도 좋다.

(9) 보존방법 : 개봉 전 또는 개봉 후의 보관상 유의점을 기재한다.

(10) 제조자 : 제조자 명 및 소재지를 기재한다.

8.3.1 지리적특산품의 표시 :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따르되, 등록명칭은 “보성 녹차(우전, 곡우, 세작)” 이라 표시하고, 영문등록명칭은 “Boseong Green Tea” 이라 표시한다.

8.4 표시금지사항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표시금지사항 규정에 따른다.

9. 검사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검사방법 규정에 따른다.



7. 품질관리계획서

(1) 목적

- ▷ 이 품질관리 계획서는 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품인 보성녹차(지리적표시등록 제1호)의 명성·품질·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녹차지리적표시등록품의 관리를 통한 보성녹차의 명성 및 품질을 보호함과 아울러 판매를 촉진하여 보성녹차지리적표시등록자의 소득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질조사계획의 수립

- ▷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 이전에 보성녹차지리적표시등록품(이하 “등록품”이라 한다)에 대한 품질조사 대상제품에 대한 수확시기·횟수·성분 등을 조사(이하 “품질조사”라 한다)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에서 해당조사를 실시할 경우 품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임무

(가) 회장

- 1) 등록품에 대한 품질조사계획 수립 및 이사회 상정
- 2) 관련기관, 회원에게 확정된 품질조사계획 통보
- 3) 등록품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심의결과 해당자에 통보
- 4) 부정 등록품의 조사

(나) 이사회

- 1) 등록품에 대한 품질조사계획의 확정
- 2) 등록품의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법 심의

- 3) 이의신청 심의 및 표시금지자의 재표시 허용여부 심의
- 4) 조사원의 결정(조사자, 활동기간 등)

(다) 조사원

- 1) 조사시료의 수거 및 분석기관에 분석 의뢰
- 2) 조치결과(표시정지, 표시금지 등) 이행여부 확인

(라) 회원

- 1) 등록품의 품질기준, 유해물질기준, 등급기준, 표시사항 준수
- 2) 등록상품의 명성 가치와 명예의 유지·향상
- 3) 일자별 채다량, 수매량, 제품생산량 및 등록품 출하·판매량 기록
- 4) 시료수거·관련장부의 열람 협조
- 5) 부정 등록품의 감시 및 신고

(4) 분석기관 및 조사대상

(가) 분석기관

분석기관은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 또는 공공검사 기관을 말한다.

(나)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등록품의 원료나 제품에 한하며, 등록품이 아닌 제품(허위표시품, 유사표시품 등) 등은 분석기관에 시료수거 및 분석을 요청한다.

(5) 조사 기준

(가) 품질기준 “ 전통식품표준규격제정·개정 (농림부 고시 제1999-02호)의 녹차(규격번호 T024-1995) 기준에 의하되, 본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나) 유해물질기준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관련기준



(다) 등급기준 : 보성에서 생산된 차의 제품중에서 특급에 한하여 정한다. 표시품은 우전, 곡우, 세작으로 하고 그 양은 해당 생산자의 채다(차잎채취)총량과 제품총량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 1) 우전 : 당해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이전에 채취한 차엽으로 생산한 녹차제품
- 2) 곡우 : 당해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엽으로 생산한 녹차제품
- 3) 세작 : 당해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엽으로 생산한 녹차제품

(6) 조사 대상

(가) 품질기준 : 관능품위(차의 형태, 색, 수색, 향, 맛 등), 분말도, 줄기 및 험잡물포함 정도, 수분함량, 회분 등

(나) 유해물질 기준 : 중금속, 잔류농약, 타르색소 등

(다) 등급기준 : 특급

(7) 품질조사 방법

(가) 생산원료조사

- 1) 생산전 원료에 대한 사전 조사는 수확전이나 수확 후 또는 제품완성전의 원료를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
- 2) 관능품위 조사, 산지 판정, 유해물질 조사 등 필요시 무작위 조사

(나) 저장단계조사

- 1) 저장단계조사는 제품 생산 후 판매하기 전에 생산·제조·가공업자가 진열·보관·저장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

2) 매년 5월 31일 이전에 제조회사 또는 단체별로 1회 이상 조사

(다) 유통단계조사

- 1) 유통단계조사는 도매·소매시장, 기타 유통장소에서 판매(통신판매 등 포함)중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
- 2) 제조회사 또는 단체별로 년 1회 이상 조사

(8) 시료의 수거

(가) 관계자입회 : 품질조사, 유해물질조사 및 이의신청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시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제조·가공업자나 판매자 등 이해관계자를 입회토록 한다.

(나) 상호 날인 : 시료는 각 2점을 수거하여 수거자와 입회자가 포장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로 상호 날인한다.

(다) 시료수거용기 : 시료의 수거 수송·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건조 흡습 오염 변질 등이 되지 않도록 시료의 종류 형상 분석목적 등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료수거방법 :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수거하여야 한다.

(마) 시료수거량

종류별	계(최소 수거량)	분석의뢰용	연합회보관용
원료	100g이상	50g이상	50g이상
제품	100g이상(2 포장단위 이상)	50g이상	50g이상

※ 제품은 포장단위별로 수거하되, 1개체(Box)의 중량이 50g에 미달할 때에는 100g이 될 때까지 포장단위 개체수를 증가한다.

(바) 시료수거 서류작성 : 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성 녹차 지리적표시품 분석의뢰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연합회에 보관하고 1부는 분석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한다.

(사) 시료의 분석의뢰 : 수거한 시료에는 수거일시·장소, 수거자 및 입회자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한 후 수거당시의 성상 등이 변화가 적도록 조치하여 수거시점부터 3일 이내에 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과정 중에 2차 오염이나 변질, 변패, 파손 등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 시료의 보관 : 회장은 시료를 보관할 때에는 분석의뢰서 사본을 보관용 시료에 첨부한 후 내용물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생산·제조·가공업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보관한다. 다만 분석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료는 그 보관기간을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한다.

(9) 품질조사 비용

(가) 품질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 비용과 분석비용은 연합회 예산으로 부담한다.

(나) 이의신청용, 참고용, 선전용 기타 개별적인 용도로 분석할 경우 그 분석비용은 분석의뢰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0) 조사결과 조치

(가) 표시정지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개월~3개월의 표시정지를 명한다

1) 유해물질이 관련규정의 허용기준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내용에 따라 협의하여 조치한다.

2) 표시품의 명예를 경미하게 손상시켰을 경우

3) 표시품의 표시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나) 표시 금지 :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가공한 자에게 2년동안 표시를 금지시킨다. 표시금지자가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보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녹차를 등록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보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녹차를 등록품에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 3) 등록품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4) 등록품의 등급기준에 미달한 경우
- 5) 해당생산자의 채다총량과 제품총량의 10%이상을 등록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 6) 등록품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다) 제품회수, 표시삭제

- 1) 표시정지나 금지된 제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
- 2) 회수가 어려울 때는 이사회에 승인하에 표시사항을 지우거나 보이지 않도록 조치
한 후 판매

(라) 조사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 1) 조사내용이나 표시정지 및 금지된 사항 등은 즉시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가공업자와 농관원에 통보한다.
- 2)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가공업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의신청을 제기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통보를 완결하여야 한다.

(11) 기타

- (가) 본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품의 품질관리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의 정관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 (나)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원 결정, 시료수거, 분석의뢰, 이사회 심의, 이의신청 심사 등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처리되어야 하며, 등록품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3. 지리적표시등록 심의회 자료(요약)

심 의 번 호 2001-1호
심 의 년월일 2001. 9.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자료

제 안 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 선 오
제안년월일	2001. 9.



차 례

I. 제안 사유	1
II. 부의안건	1
III. 심의안 주요골자	1
IV. 지리적표시등록제도 현황	2
V. 심 의(안)	11
〈참고자료〉	24
1. 관련법령	24
2.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위원	32
3.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 요약자료	33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자료

I. 제안사유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요청한 보성녹차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심의코자 함

II. 부의안건

-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신청한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 명칭 사용의 적합성 여부
- ▶ 동 신청건의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 ▶ 동 신청건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 동 신청건의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 ▶ 동 신청건의 자체품질관리기준

III. 심의안 주요골자

1.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 명칭 사용

- ▶ 보성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특급(우전, 곡우, 세작)녹차에 “보성녹차”라 표시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 ▶ 보성녹차의 성분함량, 품질특성(품종, 경작과정, 가공과정, 포장과정), 지리적 기상 특성, 토양특성 등의 인과관계의 적합성



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녹차에 대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적정성

4.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 표준규격보다 엄격한 기준설정

5. 자체품질관리기준

- ▶ 자체 품질관리기준의 설정 및 이행의 적정성

IV. 지리적표시등록제도 현황

1.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 ▶ 최근 국제적인 지리적표시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등록제 도입
- WTO/TRIPs 협정에서 지리적표시를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여 회원국의 지리적표시를 보호토록 규정
- EU는 92년부터 EU규정을 제정하여 지리적표시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고,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
- 최근 한·칠레 FTA협정에서는 칠레산 주류에 대한 지리적표시보호강화 요구
- ▶ 지리적표시등록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정보제공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가 그 목적
-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도모

- 국내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 지리적 표시의 정의

▷ 지리적표시 개념의 생성배경

지리적표시에 대한 보호는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이후, 1891년 '허위·기만적 출처표시금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1958년의 '원산지명칭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으로 보호수준이 강화되고, '92년의 '농산물 및 식료품의 원산지명칭 및 지리적표시보호에 관한 EU규정'과 '94년의 'WTO/TRIPs협정'으로 정착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의 정의

지리적 표시라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 명성, 품질 등을 지리적표시의 본질적 요소로 규정함으로써 EU규정에서와 같이 우리의 지리적표시제는 품질관리정책임
- TRIPs협정에서는 모든 재화(good)를 대상품목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는 EU규정과 같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한정
- EU규정에서는 지리적표시를 원산지명칭과 지리적표시로 이원화하고 있으나 우리는 TRIPs협정과 같이 지리적표시로 단일화

※ EU규정상 지리적표시 및 원산지명칭 정의 : 원산지명칭보호(PDO)는 특정품목의 품질이나 특성이 본질적 또는 배타적으로 자연적·인적요소를 포함한 특수한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고, 생산·가공·준비과정이 모두 특정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특정지역, 장소 또는 국가의 명칭을 의미하고, 지리적표시보호(PGI)는 특정품목의 특수한 품질, 명성 기타 특징을 지니고 있고, 생산, 가공, 준비과정이 동시에 또는 각각 특정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의 특정지역, 장소 또는 국가의 명칭을 의미

※ WTO/TRIPs 협정상 지리적표시 정의 :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의미

〈유사개념과의 구분〉

◇ 상표와의 구분

▶ 상표의 개념

- 상표는 특정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의 표장을 의미(상표법)

▶ 공통점

- 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식별표지

▶ 차이점

- 상표는 특정기업과 관련되며 특정기업은 해당 상표에 대해 배타적·독점적 재산을 향유하는 반면, 지리적표시는 특정지역과 관련되며 특정지역 또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에 대한 일종의 단체 사용권임

- 상표는 특정상품의 품질, 명성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특성에 기인함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지리적표시는 이를 본질적 요건으로 함

◇ 원산지표시와의 구분

▶ 원산지표시의 개념

-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를 의미하고, 원산지표시란 상품에 생산, 제조, 가공국명을 표시토록 하는 것을 말함(대외무역법)

- 예외적으로 국산농산물의 경우 시·군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수입농산물 가공품의 경우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함(농산물품질관리법)

▶ 공통점

- 특정물품의 생산 또는 가공지역을 나타내는 표시

- 예외적인 경우 시·군명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점에서 지리적표시와 유사

▶ 차이점

- 원산지표시는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을 표시하나, 지리적표시는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에 관계없이 지리적요인에 의해 지역을 구획

- 원산지표시는 품질, 명성 및 지리적 요인과의 관련성과 관계가 없으나 지리적표시는 품질의 우수성, 품질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중요시

◇ 품질인증과의 구분

▶ 품질인증의 개념

- 품질인증은 특정품목이 산지의 유명도, 품질의 우수성, 생산조건 등 일정한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는 것

▶ 공통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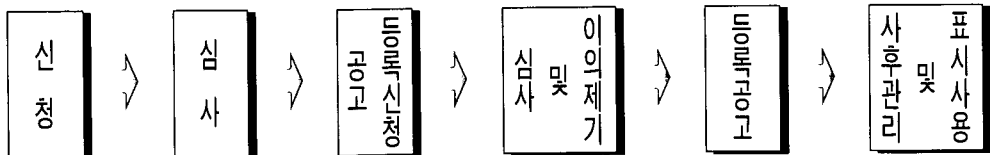
- 품질의 우수성, 산지의 유명도를 등록요건으로 하는 품질관리정책임

▶ 차이점

- 품질인증은 상품의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나, 지리적표시는 이를 핵심요소로 함
- 품질인증은 일정기간동안(1년) 인증하고 갱신해야 하나, 지리적표시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항구적으로 유효
- 품질인증은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지리적표시는 원칙적으로 특정품목에 대한 특정지역의 단체에 한함

2. 지리적표시 등록제도의 절차와 내용

□ 등록절차



□ 주요내용

▶ 등록대상품목

- 농산물 및 가공품 중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
- 녹차,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에 한하고, 예외적으로 지역 내에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만 존재하는 때에는 개인도 가능

▶ 등록신청 및 심사

-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에 제출하고 표시관리기관은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심사요청
- 등록심사기준은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일 것, 품질등급이 표준규격의 최상등급일 것,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 이의신청 및 심사

- 등록신청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제기 가능하며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서 이의제기사항 심사

▶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및 보호내용

- 지리적특산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등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
-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행위 금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지리적표시등록제도 세부내용

□ 신청자격(시행령 제17조)

- ▶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함.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신청대상품목(시행령 제16조)

- ▶ 농산물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

등록신청 및 등록심사(시행규칙 제17조)

- ▶ 신청인은 등록신청서와 7가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심사 요청

▶ 심사기준

- 지리적 표시의 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자체품질기준의 적절성,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 등록기준(시행령 제15조)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 품질등급이 표준규격의 최상등급 또는 관행적 최상등급 일 것, 당해 품목의 명칭,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 지역 안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일 것,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심사결과의 처리(시행령 제18조)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심의결과를 참작 아래사항 처리

▶ 부적합 통지

-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보완 통지: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신청공고: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때

※ 등록신청공고내용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이의신청 및 심사(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8조)

누구든지 등록신청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



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에게 이의신청 가능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사항 처리

- 지리적표시 등록은 이의신청기간동안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 부적합 통지는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 표시 등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등록공고(시행령제18조, 시행규칙 제19조)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증 발급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공고
를 해야 함

※ 등록공고 사항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지리적표시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 지리적특산품의 표시(시행규칙 제20조)

지리적표시등록을 받은 자는 지리적특산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별표4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

□ 등록취소 및 취소공고(법제11조, 시행규칙 제19조)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취소사유가 있어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취소공고를
하여야 함

▷ 등록취소사유

-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3차에 걸쳐 한 때,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을 2차에 걸쳐 위반한 때,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를 한 때, 지
리적 표시등록을 받은 자가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특산품의 생산이 곤란 한 때

▷ 등록취소공고 사항

- 취소일자 및 등록번호,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취소사유



□ 지리적특산품의 보호 및 사후관리

▶ 허위표시 등의 금지(법 제9조)

-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금지
- 지리적특산품에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금지

▶ 사후관리(법 제10조)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음

- ① 지리적특산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조사
- ② 지리적특산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 ③ 지리적특산품의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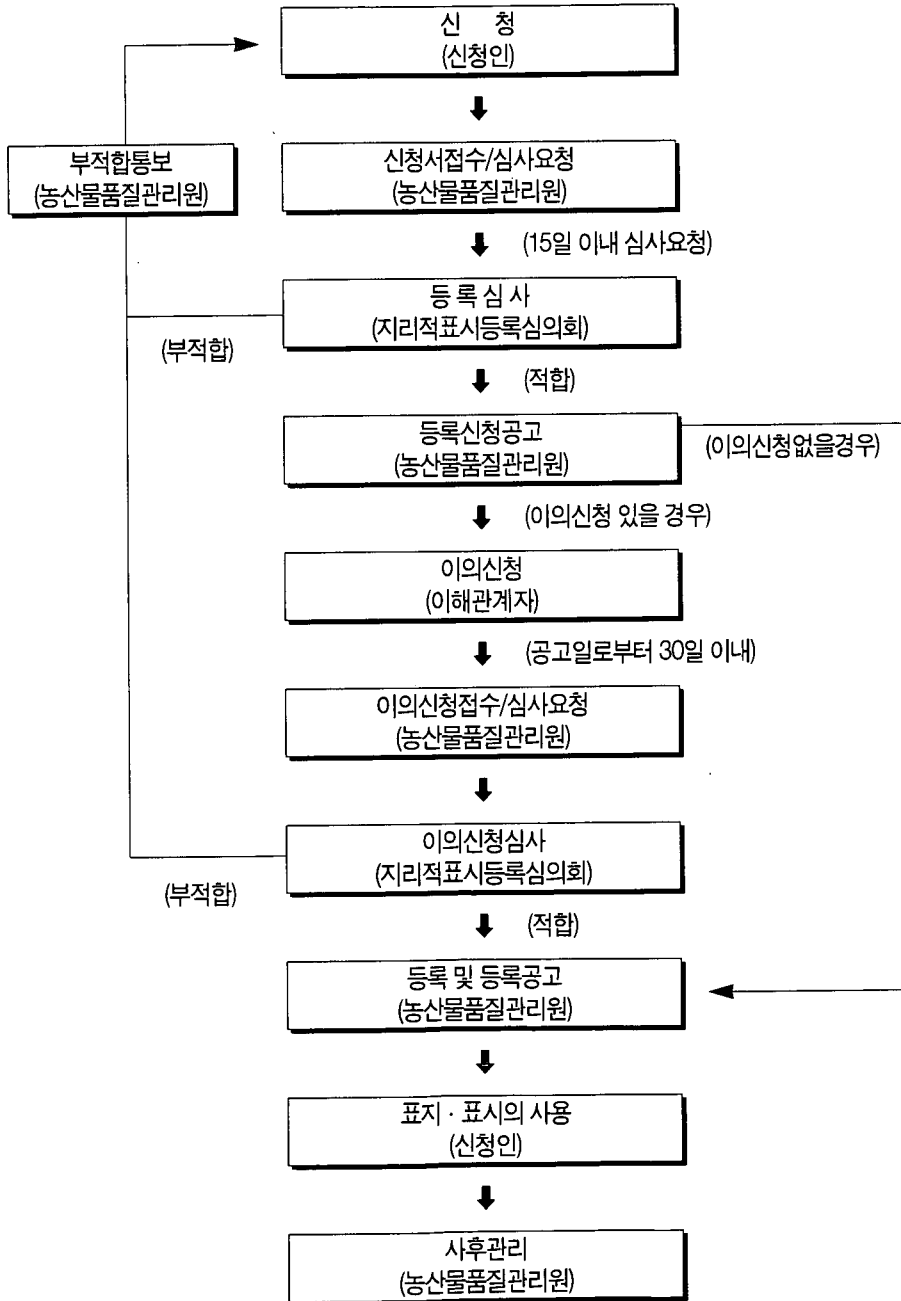
▶ 취소 등의 행정처분(법 제11조)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조사 등 사후관리 결과 지리적특산품의 시정명령, 표시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 등록취소의 경우 청문 실시(법 제33조)

▶ 벌칙(법 제35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리적특산품의 허위·유사표시, 지리적특산품의 혼합 판매 또는 진열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취소 등 행정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사후관리를 위한 수거·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지리적표시 등록절차



□ 주체별 지리적표시 등록절차상의 내용

신청인	① 신청서류 구비하여 신청서 제출
지리적표시 관리기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② 신청서 접수 및 심의요청(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요청) ④ 등록신청 공고 및 부적합 통지 ⑥ 이의신청접수 및 심의회 회부 ⑧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 또는 부적합 통지 ⑨ 등록, 등록증 발급 및 등록 공고 ⑩ 사후관리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	③ 등록기준 적합성 심사 ⑦ 이의신청 심사
이해관계자	⑤ 이의신청(등록신청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V. 심 의(안)

1.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 명칭 사용

▷ 보성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특급(우전, 곡우, 세작)녹차에 “보성녹차”라 표시코자 함

〈관련자료〉

가.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에서 신청한 신청서 상 지리적표시등록의 주요내용에 「보성녹차(우전, 곡우, 세작)」라 표시코자함

예시) 보성녹차(우전), 보성녹차(곡우), 보성녹차(세작)

나. 보성녹차연합회는 전남 보성지역 관내 14개 녹차생산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다. 생산·가공지역의 범위는 전남 보성군으로 하고 있음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 보성녹차의 성분함량, 품질특성(품종, 경작과정, 가공과정, 포장과정), 지리적 기상 특성, 토양특성 등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함

〈관련자료〉

가. 보성녹차의 성분함량

구분	총질소 (%)	아미노산 (mg/100g)	탄닌 (%)	카페인 (%)	엽록소 (%)
보성녹차	4.6	1,347	14.1	3.3	4.6

※ 자료 : 차시험장(2001), 보성 지방 녹차 제품 상품의 평균치임

▷ 보성녹차는 총질소와 총아미노산 함량이 낮아 맛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며, 음용 후 감칠맛이 나고 탄닌함량이 적당하여, 떫고 쓴맛 등 5미가 분명하다. 또한, 향과



맛이 독특하며 수색이 맑아 음다의 욕구를 촉진시켜주며 다음에 다시 찾게되는 특징이 있음

나. 보성 녹차의 품질특성

▶ 득량만과 보성강에서 일어나는 안개를 먹고 자란 부드럽고 살찐 햇차의 어린잎(雀舌크기)을 손으로 채취한후 빠른 시간내에 덫음 또는 증열처리를 하여 발효를 정지시킨 후 유념하는 등 보성녹차 특유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거치므로서 독특한 맛과 향이 뛰어나며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있는 제품으로서 보성녹차는 안심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고품질 녹차로 평가받고 있음

다. 품질특성에 관한 설명

(1) 품종(종자) 특성

▶ 보성지방에 자라고 있는 차는 일본차나 중국차에 비해 기(氣)가 풍부하며, 이 지역의 기후풍토에 수 백년 동안 적응하여온 재래종으로서 특이한 향과 맛을 갖고 있으며 여러 잡종 집단이 되어 차의 맛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특유한 맛을 내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음

(2) 경작과정상의 특징

- ▶ 보성강과 득량만 주변, 제암산 및 존재산 아래에 남향으로 다원이 형성되어있어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아 고품질 차를 생산 할 수 있음
- ▶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고급차 생산시기인 4월중 온도가 타 지역보다 0.7~2.4℃ 높아 차의 생장이 빠르며 차의 생장에 최적 조건임
- ▶ 토양은 미량요소가 풍부하며 수확 후 영양소의 공급을 위해 매년 봄, 가을에 유기물인 퇴비위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후와 토양 여건이 차의 주산지 구비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최상의 품질을 자연이 제공해 주고 있음

라. 가공과정

(1) 우전(雨前茶), 곡우(穀雨茶), 세작(細雀)



- ▷ 이른봄 첫 싹이 처음 나오는 4월에 어린잎이 1심 2엽이 되면 손으로 새순을 채취한다 (곡우이전(우전)과 곡우무렵(곡우)). 새순채취 기간은 채취 시작일부터 5~7일에 한정
- ▷ 세작은 약간 뒤인 4월하순~5월 초순까지 새순이 1심 2엽인 새잎을 손으로 채취하며 새순채취기간은 10일이내
- ▷ 수확후 빠른 시간 내에 덩름 또는 증열 처리로 발효를 중지시키고 유념작업을 7~8회 반복하여 수분이 5%정도 되도록 건조하여 보관하였다가 출고직전 가향(加香)처리 과정을 거쳐서 녹차 특유의 5미(쓰고, 떫고, 시고, 달고, 짠맛)를 갖는 상품을 생산

(2) 중작(中雀)

- ▷ 상품의 채취가 끝나면 온도가 높아져 차잎이 자연히 크고 넓어지므로 1심 2~3엽의 새순을 손으로 채취하여 우전, 곡우, 세작의 제조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다(製茶)한다. 이때는 특히 온도가 높으므로 수확후 오랜시간 방치하지 않고 제다하는 것이 특징임

(3) 대작(大雀)

- ▷ 중작의 채취가 끝나면 온도가 높아져 차잎이 자연히 크고 넓어지므로 1심 2~3엽의 새순을 손으로 채취하여 중작의 제조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다(製茶)한다. 이때는 특히 온도가 높으므로 수확후 오랜시간 방치하지 않고 제다하는 것이 특징임

마. 포장과정

- ▷ 녹차의 포장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소포장 은박비닐에 100g 또는 50g씩 밀봉하여 습기와 외부의 공기 침입을 막고, 지관 또는 나무 상자에 100g씩 넣어서 완전 상품화한다.

바. 대상지역의 행정구역 특성

- ▷ 동경 127.10도 북위 34.5도를 중심으로 면적은 662.29km²의 보성군 일원으로 한다. 남쪽은 해안선인 득량만과 순천만 일부를 경계로 한 회천면 일대와 제암산 주변, 보성읍을 중심으로 보성강이 흘러 주암호에 이르는 주변지역, 존재산 아래 징광계곡을 대상지역으로 함

사. 지리적 기상특성

▶ 이 지역은 년 평균기온은 13.4℃이고 강우량도 1,459mm로서 차나무재배에 알맞은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이다. 특히, 3월부터 10월 생육기 중에 1,310mm의 많은 비가 내려 차의 생육을 좋게 해줌

〈표 1〉 차 재배 지역별 온도 분포

지역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평균 기온
광주		-0.6	1.1	5.7	11.4	16.8	21.4	25.6	26.1	20.9	14.0	8.2	2.4	12.8
보성		0.4	1.5	5.2	13.6	17.8	21.2	24.8	25.8	21.4	15.1	8.1	2.3	13.4
강진		0.5	1.8	5.6	12.4	17.1	21.4	23.8	26.4	21.2	14.6	8.4	2.4	12.9
광양		0.5	1.8	6.6	12.9	18.1	21.6	24.7	26.3	21.2	15.5	4.3	2.0	13.0
구례		-0.1	1.7	6.5	12.9	17.6	22.0	25.3	25.8	20.8	14.5	7.5	2.1	13.0
하동		-0.4	1.0	4.8	11.2	17.2	21.8	24.9	25.6	20.8	15.8	10.0	3.2	15.9
서귀포		6.0	6.6	9.7	14.0	17.9	20.9	25.1	26.7	23.2	18.5	13.4	8.4	15.9

〈표 2〉 차 재배 지역별 강우량 분포

지역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광주		31.5	34.4	69.1	82.1	92.0	168.8	222.6	201.2	189.5	51.9	42.9	56.8	1,222
전남	보성	13.5	58.2	70.0	184.0	138.3	273.1	218.7	254.9	125.9	45.4	42.7	35.0	1,459
	강진	34.0	32.8	71.2	164.2	101.2	254.2	204.8	232.1	135.4	47.0	45.4	36.2	1,227
	구례	30.5	37.7	62.2	97.5	96.7	205.2	320.4	264.0	134.8	50.7	48.3	25.8	1,374
서귀포		57.8	77.2	108.0	188.7	205.9	282.3	282.6	216.5	160.9	71.3	78.4	41.8	1,776
경남 하동		49.2	55.6	73.1	158.4	108.1	188.0	201.8	226.4	120.0	87.5	48.6	42.0	1,358



아. 토양특성

- ▷ 사양토로 많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잘되며 바다와 강이 인접해있어 온도가 따뜻하고 안개 일수가 많아 차나무 성장기에 많은 수분을 공급하는 한편 그늘을 마련하여 주어 차의 맛을 좋게하는 천혜의 특징을 갖고 있음

자. 지리적요인과 품질특성과의 인과관계

- ▷ 토양 : 사양토로서 맥반석 지대의 토양으로 토심이 깊음
- ▷ 기후 : 바다와 호수가 인접해있어 차나무 성장에 가장 적합한 기온, 강우량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 지형 : 차가 자생되는 곳은 대부분 남향이며 야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특히 계곡이 많으며 주변지역보다 표고가 높은 분지 형태를 이루고있어 사계절의 한계가 뚜렷하며 일중 온도 교차가 많은 것이 특징임
- ▷ 호수, 바다 : 북쪽으로는 보성강과 주암호로 둘러 싸고있어 내륙성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득량만, 순천만의 해양성 기후가 받혀주고 있어 연중 안개 일수가 많아 차 맛이 독특함
- ▷ 차의 최상품의 품질을 유도해 주는 기후, 토양, 지형, 호수, 바다 등이 잘 어울려져 최고급 차의 품질을 만들어주는 천혜의 고장임

3.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 품질의 특성 및 성가유지 등을 위해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녹차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음

〈관련자료〉

가. 보성군 관내 1/50,000 지도에 신청자의 차밭을 표시하여 신청하였음

4.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 표준규격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관련자료〉

가. 품질 기준표

항 목	기 준		
	특 급	고 급	중 급
관능품위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분말(%)	2.5이하	2.5이하	2.5이하
줄기 및 협잡물(%)	3.0이하		
수분(%)	6.0이하		
회분(건물%)	5.5이상	4.5이상	4.5미만

비고 : 1. 회분은 최고 6.0%를 초과할 수 없다.

2.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차 생산을 위하여 총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않으나, 맛이 느끼하지 않도록 총질소함량이 높지 않아야 한다.



나. 등급기준

- ▷ 차의 유통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품명으로 등급을 부여하되, 우전, 곡우, 세작급에 대해서만 지리적 표시를 한다.

(표 2) 관능품위 기준

대상	항목	채 점 기준
건조차잎(제품)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잎이 말아진 상태가 매우 균일하고 고유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거의 없는 것은 5점으로 한다 ▷ 차잎의 말아진 상태가 대체로 균일하고 고유의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있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약간 있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차잎의 말아진 상태가 불균일하고 고유의 형태가 유지되지 않았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많은 것은 2점으로 한다 ▷ 차잎이 말아진 상태가 극히 불균일하고 고유의 형태가 전혀 유지되지 않았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매우 많고 이물어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색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잎 고유의 녹색이나 진녹색이 선명하며, 색택이 균일하고 윤기를 가진 것은 5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녹색이나 진녹색이 비교적 선명하며 색택이 대체로 균일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색이 퇴색되어있고, 갈색, 적색, 흑색, 청흑색 등으로 변색된 차잎이 포함된 것은 2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색이 매우 퇴색되어있고 갈색, 적색, 흑색, 청흑색 등으로 변색된 차잎이 많이 포함된 것은 1점으로 한다.
열수추출물	수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색이 선명한 담록색 또는 황록색을 띄며 잔사가 거의 없어서 매우 맑은 것은 5점으로 한다 ▷ 수색이 비교적 선명한 담록색 또는 황록색을 띄며 잔사가 약간있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수색이 적색, 흑색, 청색, 적흑색을 띄며 잔사가 많아서 탁한 것은 2점으로 한다 ▷ 수색이 적색, 흑색, 청색, 적흑색을 띄며 잔사가 매우 많아서 몹시 탁한 것은 1점으로 한다
	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양호하고 향기가 매우 신선하며 이미·이취가 없는 것은 5점으로 한다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비교적 양호하고 향기가 신선하며 이미·이취가 없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부족하며 짙은 맛이 강하고 이미, 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 짙은 맛과 이미·이취가 강한 것은 1점으로 한다.



다. 시험방법

- ▶ 품질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시험방법 규정에 따른다.

라. 제조·가공기준

(1) 공장입지, 작업장, 보관시설, 제조설비

- ▶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규정에 따름

(2) 자재기준

(가) 원자재

- 1) 원료 생엽은 전남 보성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사용할 원료 차 잎의 채취시기 및 크기는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우전 :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이전에 채취한 차 잎으로 우전차 고유의 잎 크기(1.5~2.0cm)인 1심2엽을 사용한다.
 - 나) 곡우 :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 잎으로 곡우차 고유의 잎 크기(2.0~2.5cm) 이내의 1심2엽을 사용한다.
 - 다) 세작 :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 잎으로 세작 고유의 잎 크기(2.5~3.0cm) 이내의 1심3엽을 사용한다.
- 3) 원료 차 잎의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환경친화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원료 차 잎을 생산하기 위하여 잘 부숙된 유기질 퇴비를 연간 ha당 20톤 이상을 사용하여 토양관리를 하되, 토양염류 집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병충해 방제는 환경친화적인 방법 성페르몬, 유아등, 끈끈이트랩 등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 우수한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차 밭 ha당 우전, 곡우, 세작의 최대채취량은 보성지역 평년작 평균 단수를 적용하여 연간 300kg을 초과할 수 없다.
- (나) 용수 :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도물이 아닌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 시험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 적합 시험을 받아야 한다.

(3) 주요 공정기준

▷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규정에 따름

마. 포장

- (1) 포장재 :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소포장 은박비닐로 밀봉하여 습기와 외부의 공기 침입을 막고, 지관 또는 나무상자에 100g씩 넣어서 상품화한다.
- (2) 단위포장내용량 : 속포장은 100g, 50g 단위로 포장한다.

바. 표시

- (1) 일괄표시사항 :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따름
- (2) 지리적특산품의 표시 : 보성 녹차(우전, 곡우, 세작)
- (3) 표시방법
- (가) 일괄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품목명 : 제조방법에 따라 “녹차(덤음차)” 또는 “녹차(찢차)” 라고 기재한다.
 - 2) 규격번호 : 규격번호는 T000으로 표시하거나, 생략 가능함
 - 3) 등급 : “특급”으로 표시
 - 4) 원재료명 : “차잎” 또는 “녹차엽”으로 기재한다.
 - 5) 차잎 채취지역 :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표시
 - 6) 차잎 채취시기 : 해당제품의 차잎 채취시기를 “년 월 (상, 중, 하)순”으로 기재하되, 채취시기가 서로 다른 차잎이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나중에 채취된 차잎의 채취시기만을 기재한다. 단, 인쇄공정상 항목명 바로 뒤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표시란 밖에 해당항목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보기 : “2002년 5월 상순” 또는 “차잎 채취시기 : 2002년 5월 상순”



- 7) 내용량 : 내용량을 g 또는 kg 단위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 8) 유통기한 : 제품의 품질수준이 본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 될 수 있다고 생산자가 인정하는 기한을 기재한다. 단, 인쇄 공정상 유통기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표시란 밖에 표시하여도 좋다.
- 9) 보존방법 : 개봉 전 또는 개봉 후의 보관상 유의점을 기재한다.
- 10) 제조자 : 제조자 명 및 소재지를 기재한다.
- (나) 지리적특산품의 표시 :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따르되, 등록명칭은 “보성 녹차(우전, 곡우, 세작)” 이라 표시하고, 영문등록명칭은 “Boseong Green Tea” 이라 표시한다.
- (4) 표시금지사항 :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표시금지사항 규정에 따름

5. 자체품질관리기준

▶ 자체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원칙으로 함

〈관련자료〉 : 자체품질관리계획서

(1) 목적

▷ 보성녹차의 명성·품질·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품의 관리를 통한 보성녹차의 명성 및 품질을 보호함과 아울러 판매를 촉진하여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자의 소득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질조사계획의 수립

▷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 회장(이하 “회장” 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 이전에 보성녹차지리적표시등록품(이하 “등록품” 이라 한다)에 대한 품질조사 대상제품에 대한 수확시기·횟수·성분 등을 조사(이하 “품질조사”라 한다)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이사회 (이하 “이사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에서 해당조사를 실시할 경우 품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임 무

(가) 회장

- 1) 등록품에 대한 품질조사계획 수립 및 이사회 상정
- 2) 관련기관, 회원에게 확정된 품질조사계획 통보
- 3) 등록품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심의결과 해당자에 통보
- 4) 부정 등록품의 조사

(나) 이사회

- 1) 등록품에 대한 품질조사계획의 확정
- 2) 등록품의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법 심의
- 3) 이의신청 심의 및 표시금지자의 재표시 허용여부 심의
- 4) 조사원의 결정(조사자, 활동기간 등)

(다) 조사원

- 1) 조사시료의 수거 및 분석기관에 분석 의뢰
- 2) 조치결과(표시정지, 표시금지 등) 이행여부 확인

(라) 회원

- 1) 등록품의 품질기준, 유해물질기준, 등급기준, 표시사항 준수
- 2) 등록상품의 명성 가치와 명예의 유지·향상
- 3) 일자별 채다량, 수매량, 제품생산량 및 등록품 출하·판매량 기록
- 4) 시료수거·관련장부의 열람 협조
- 5) 부정 등록품의 감시 및 신고

(4) 분석기관 및 조사대상

(가) 분석기관 : 분석기관은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 또는 공공검사기관을 말한다.

(나) 조사대상 :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등록품의 원료나 제품에 한하며, 등록품이 아닌 제품(허위표시품, 유사표시품 등) 등은 분석기관에 시료수거 및 분석을 요청한다.

(5) 조사 기준

(가) 품질기준 : 전통식품표준규격제정·개정(농림부 고시 제1999-02호)의 녹차(규격번호 T024-1995) 기준에 의하되, 본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나) 유해물질기준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관련기준

(다) 등급기준 : 보성에서 생산된 차의 제품중에서 특급에 한하여 정한다. 표시품은 우전, 곡우, 세작으로 하고 그 양은 해당 생산자의 채다(차잎채취)총량과 제품총량의 10%미만이어야 한다.

- 1) 우전 : 당해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이전에 채취한 차엽으로 생산한 녹차제품
- 2) 곡우 : 당해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엽으로 생산한 녹차제품
- 3) 세작 : 당해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엽으로 생산한 녹차제품

(6) 조사 대상

(가) 품질기준 : 관능품위(차의 형태, 색, 수색, 향, 맛등), 분말도, 줄기 및 협잡물포함정도, 수분함량, 회분 등

(나) 유해물질 기준 : 중금속, 잔류농약, 타르색소 등

(다) 등급기준 : 특급

(7) 품질조사 방법

(가) 생산원료조사

- 1) 생산원료에 대한 사전 조사는 수확 전이나 수확 후 또는 제품완성전의 원료를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
- 2) 관능품위 조사, 산지 판정, 유해물질 조사 등 필요시 무작위 조사

(나) 저장단계조사

- 1) 저장단계조사는 제품 생산 후 판매하기 전에 생산·제조·가공업자가 진열·보관·저장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
- 2) 매년 5월 31일 이전에 제조회사 또는 단체별로 1회 이상 조사

(다) 유통단계조사

- 1) 유통단계조사는 도매·소매시장, 기타 유통장소에서 판매(통신판매 등 포함)중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
- 2) 제조회사 또는 단체별로 년 1회 이상 조사

(8) 시료의 수거

(가) 관계자입회 : 품질조사, 유해물질조사 및 이의신청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시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제조·가공업자나 판매자 등 이해관계자를 입회토록 한다.

(나) 상호 날인 : 시료는 각 2점을 수거하여 수거자와 입회자가 포장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로 상호 날인한다.

(다) 시료수거용기 : 시료의 수거 수송·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건조 흡습 오염 변질 등이 되지 않도록 시료의 종류 형상 분석목적 등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료수거방법 :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수거하여야 한다.



(마) 시료수거량

종류별	계(최소 수거량)	분석의뢰용	연합회보관용
원료	100g이상	50g이상	50g이상
제품	100g이상(2 포장단위 이상)	50g이상	50g이상

※ 제품은 포장단위별로 수거하되, 1개체(Box)의 중량이 50g에 미달할 때에는 100g이 될 때까지 포장단위 개체수를 증가한다.

(바) 시료수거 서류작성 : 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성 녹차 지리적표시품 분석의뢰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연합회에 보관하고 1부는 분석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한다.

(사) 시료의 분석의뢰 : 수거한 시료에는 수거일시·장소, 수거자 및 입회자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한 후 수거당시의 성상 등이 변화가 적도록 조치하여 수거시점부터 3일 이내에 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과정 중에 2차 오염이나 변질, 변패, 파손 등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 시료의 보관 : 회장은 시료를 보관할 때에는 분석의뢰서 사본을 보관용 시료에 첨부한 후 내용물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생산·제조·가공업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보관한다. 다만 분석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료는 그 보관기간을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한다.

(9) 품질조사 비용

(가) 품질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 비용과 분석비용은 연합회 예산으로 부담한다.

(나) 이의신청용, 참고용, 선전용 기타 개별적인 용도로 분석할 경우 그 분석비용은 분석의뢰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10) 조사결과 조치

(가) 표시정지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개월~3개월의 표시정지를 명한다

- 1) 유해물질이 관련규정의 허용기준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내용에 따라 협의하여 조치한다.



2) 표시품의 명예를 경미하게 손상시켰을 경우

3) 표시품의 표시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나) 표시 금지 :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가공한 자에게 2년동안 표시를 금지시킨다. 표시금지자가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보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녹차를 등록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보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녹차를 등록품에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3) 등록품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4) 등록품의 등급기준에 미달한 경우

5) 해당생산자의 채다총량과 제품총량의 10%이상을 등록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6) 등록품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다) 제품회수, 표시삭제

1) 표시정지나 금지된 제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

2) 회수가 어려울 때는 이사회 승인가에 표시사항을 지우거나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 후 판매

(라) 조사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1) 조사내용이나 표시정지 및 금지된 사항 등은 즉시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가공업자와 농관원에 통보한다.

2)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가공업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의신청을 제기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통보를 완결하여야 한다.

(11) 기타

(가) 본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품의 품질관리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의 정관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원 결정, 시료수거, 분석의뢰, 이사회 심의, 이의신청 심사



등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처리되어야 하며, 등록품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참고자료〉

1. 관련법령(생략)

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관련 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나. 지리적표시 등록관련 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다.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운영 규정

2.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명단(생략)

3.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신청서 요약자료(생략)



4.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1차) 개최결과(보고서)

지리적표시등록 심의회 개최 결과

서기	간사	위원장	결재

일 시 : 2001. 9. 11(화) 14:00~16:30

장 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회의실

안 건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참석위원 : 18명

참석자 명단 별첨

심의회 의결사항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여부를 조사한 후 재심의

조사위원회 구성결과

- 엄기철(농업과학기술원 환경생태과장)
- 성명환(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명호(한국식품개발연구원 규격연구팀장)
- 황종환(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 김상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

덧붙임 : 1. 심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참석위원 명단 1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회의록

심의일시 : 2001. 9. 11. 14:00~16:30

장 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회의실

안 건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선출
-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참석위원 : 18명(참석위원명단 불임)

회의록

- ▶ 먼저 의사진행 절차 설명(간사)
- ▶ 위원회 성원보고(간사)
- ▶ 참석자 소개(간사)
- ▶ 심의회 경과보고(간사)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는 '99. 7. 1 시행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9.21 농림부훈령 제1042호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운용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동 요령에 따라 2001.8.25 각계의 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음.

▶ 위원장 선출(임시위원장 : 농관원 품질관리과장 김상범)

- 고려대학교 법학과 박노형 교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킴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심의>

- ▶ 지리적표시 업무 추진현황 보고(간사)
-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신청건에 대한 심의 제안사유, 부의안건 설명(간사)
- ▶ 부의안건 요약



-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 명칭 사용

보성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특급(우전, 곡우, 세작)녹차에 “보성녹차”라 표시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보성녹차의 성분함량, 품질특성(품종, 경작과정, 가공과정, 포장과정), 지리적 기상특성, 토양특성 등의 인과관계의 적합성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녹차에 대한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적정성

-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 표준규격보다 엄격한 기준설정

- 자체품질관리기준

자체 품질관리기준의 설정 및 이행의 적정성

▷ 참석자 발언요지

- 신청서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농림부)

- 상표법, 국제법 등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감안, 신청서류의 사실관계 등을 규명하고 유연하게 접근 필요(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제출된 자료의 검증 논의, 보성녹차와 지리산, 한라산 태평양 녹차 등과의 차이(고유특성, 맛, 향 등) 설명이 필요하고, 제도의 정책적 특성 설명과 심의회 가이드라인 설정 필요(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지역적 특성이 있는 품목을 계속 늘려나갈 예정이며, 단체를 구성하여 시설, 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보성녹차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농림부)

- 지리적표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생산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임. 유럽에서는 객관적인 것만 등록해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는 너무 늘리

지 말고 이미 유명하거나 유명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야 함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자료를 미리 받아 그동안 검토를 하였을 것임. 자료내용 심의만 하면 될 것임. 필요하면 아이템 별로 각 기관에 요청하여 확인 필요 고려인삼이나 보성녹차 모두 타지역과의 형평성문제 고려, 제출된 자료로 검토 필요(농업과학기술원)
- 99년부터 우리기관에서 녹차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여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 등록에 적극적이었음. 그러나 보성녹차가 타지역과의 성분이나 향, 맛 등의 차이점이 나타나야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를 보완 백업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농촌생활연구소)
- 품질특성과 지리적특성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확인하는데는 많은 인력과 시간, 예산이 필요한데 무엇보다 정책적 의지가 중요함(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조사위원회 예산지원은 가능한가(위원장)
- 농림부에서 지원해줘야 함(간사)
- 출장비는 농관원에서 지원(농림부)
- 명칭의 배타적 권리 여부. 하동, 지리산, 한라산 등에서 신청시 등록 갯수는 제한하지 않는지(한국소비자보호원)
- 제한은 없음(농림부)
- 기준을 정해놓고 심의하는 것은 곤란하고, 기준설정이 자체적으로 구속할 우려가 있으며, 신청한 자료는 심의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하며, 보성녹차가 처음으로 신청을 하여 심의하게 되었는데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함(위원장)
- 심의위원회 역할 등 위원회 운영 규정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출된 자료는 타지역과 비교되는 자료가 없는데 서로 비교되는 자료가 필요함(전국주부교실중앙회)
- 동일한 제품에서 품질이 같은 것은 함께 존재하는 것은 불가함(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지리적명칭사용 홍보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적 명칭이 붙은 것이 좋다고 하면 난립할 우려가 있음(한국소비자보호원)

- 국내에서 유명성이 드러난 것 중에서 행정구역상 명칭, 범위, 가이드라인 설정, 타지 역과의 대비표 첨부(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전국적인 차 생산량은 많지 않으며, 일정기준에 적합하면 등록해주어 녹차산업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함(한국차문화협회)
- 등록해주되, 특징적인 것으로, 대비표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농촌생활연구소)
- 품질규격뿐 아니라 명칭이 떠오르는 것이어야 한다. 굴비-영광 녹차-보성? 소비자보호 측면도 필요함(한국소비자보호원)
- 지리적표시는 원산지표시제와 같이 소비자보호와는 다름. 태평양녹차는 상표로 보호됨(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본 제도는 국가가 기준을 설정하여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규정을 지키는 것임(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지리적표시제의 용어는 전문적인 것으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가치인증을 위해서는 같은 시각을 가지고 보아야 할 것임(한국보건산업진흥원)
- 등록 결정을 할 것인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조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것임(농업과학기술원)
- 신중한 접근이 필요. 신청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우선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 제의(위원장)
- 특정기관에 조사를 의뢰해도 되지 않겠는가(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녹차, 인삼 분과위원회 구성 필요하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특급표시문제는 완화되어야 함(한국식품개발연구원)
-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볼 때 대체적인 의견이 현재 제출된 자료로는 결론을 내리기 곤란하고,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많으므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위원장)
- 참석위원 전원 : 이의 없음
- 눈높이가 서로 다름. 자료제출이 미흡한데 대비표가 없는 것 등도 앞으로는 잘 될

것임. 부족한 부분을 제시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농촌진흥청)

-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자원하시는분 있습니까?(위원장)

· 자원 : 농업과학기술원 엄기철,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황종환

- 더 이상 자원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

· 추천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명환,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김명호, 농관원 김상범

- 조사위원들은 조사후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 심의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심의회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5.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서)

가. 조사위원회 1차회의 개최결과

지리적표시등록 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서 기	간 사	위원장	결 재

일 시 : 2001. 9. 19(수) 11:00~15:30

장 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회의실

안 건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신청한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상 관련자료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회의

참석위원 : 5명

참석자 명단 별첨

조사위원회 의결사항

각 위원별로 위원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취합한 후 위원장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키로 함

덧붙임 : 1. 조사내용 1부.

2. 회의록 1부.

3. 참석위원 명단 1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회의록

심의일시 : 2001. 9. 19. 11:00~ 15:30

장 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회의실

안 건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신청한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상 관련자료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회의

참석위원 : 5명(참석위원명단 불임)

회의록

〈조사위원회 위원장 선출〉

▷ 위원장 : 황종환(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참석자 발언요지〉

▷ 심의안자료에 대한 문제제기(성명환)

- 심의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 명칭 사용

보성지역 관내 14개 업체의 참여문제, 생산·가공지역의 범위를 전남 보성군으로 하는 문제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보성녹차의 성분함량, 품질특성(품종, 경작과정, 가공과정, 포장과정), 행정구역특성, 지리적 기상특성, 토양특성 등의 인과관계문제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개별 신청자의 필지를 표시해야 할 것임

-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총질소함량 문제, 관능품위기준에서의 점수구분(4점 또는 3점), 토양관리기준, 병충해방제, 차잎 생산량 제한, 표시방법에서의 차잎 채취시기, 유통기한 표시 등

- 자체품질관리기준

임무에 있어서 이사회 및 회원의 역할, 유해물질 기준, 등급기준에서 생산량 문제, 시료수거시 관계자 입회 및 날인, 조사결과 조치 문제 등

▷ 품질기준에 대한 답변(김명호)

- 관능품위기준에서의 점수구분(4점 또는 3점)은 전통식품의 경우 3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므로 문제가 없으나 세분화 필요(5, 4, 3, 2점으로 구분), 차잎 채취시기 표시는 년산이 다른 것을 섞는 것은 의미가 없음(다만, 자율적인 규제 필요), 유통기한 표시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자율적인 사항임

▷ 자체품질관리기준 답변(농림부 김경두)

- 자체적으로 성과 제고를 위한 자율적인 품질관리 기준이며, 정부의 품질관리와는 별개의 개념임

▷ 지리적 특징과 품질차이 문제 규정이 우선임(엄기철)

- 지리적표시등록의 기본은 유명성과 품질의 특성이 있어야 하며, 품질특성과 지리적 인과관계 문제에 있음

- 대부분의 농산물은 지리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합리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황종환)

- 기후적인 것, 인적인것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 여부

지역성과 역사성의 특이성이 있어야 함

- 보성녹차가 1호로 등록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음

- 조사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 문제점 보완요청, 비교표 제시

- 지리적표시는 단체여야 하며 원산지외 상표와는 다름

법령에 충실해야 함(엄기철)

- 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유명성, 품질특성, 지리적요인과의 관계규명이 필요하나, 보

성녹차는 지리적요인과의 관계는 미흡한 것 같음

유명성과 생산자의 의지가 중요함(김상범)

-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면 될 것임

보완 요구사항을 결정하여 보완요구하자(황중환)

녹차가 1번으로 등록되는 것은 문제가 있음(황중환)

녹차가 1번으로 등록되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김경두)

지리적표시등록은 국제적인 것을 제외하더라도 국내에서의 차이점이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 인데 녹차는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음(황중환)

- 보성녹차는 상표법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단체표장 등록으로 가능할 것임

검토의견을 위원장 앞으로 보내달라(황중환)

-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요약정리해서 보내주면 취합한 후 보완요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키로 하겠음

나. 조사위원회 2차회의 개최결과

지리적표시등록 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서기	간사	위원장	결재

일시 : 2001. 11. 14(수) 13:00~17:00

장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회의실(서울)

안건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검토 및 종합보고서 작성

참석자 : 4명

▷ 위원 : 김상범, 성명환, 황종환

▷ 서기 : 서수철

조사위원회 의결사항

▷ 토의 결과 제시된 의견을 정리하여 종합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참석한 조사위원 공람 및 의견을 첨삭하여 최종보고안을 작성

▷ 작성된 최종보고(안)를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이 되면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키로 함

덧붙임 : 회의록 1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회의록

- 심의일시 : 2001. 11. 14. 13:00~17:00
- 장 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회의실(서울)
- 안 건
 -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검토 및 종합보고서 작성
- 참석자 : 4명
 - ▶ 위원 : 김상범, 성명환, 황종환
 - ▶ 서기 : 서수철
- 회의록
 - 〈정관의 조합원 자격문제〉
 - ▶ 요구한 자료중 정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추가로 제출토록 요청하여 FAX로 보내왔는데 조합원 가입조건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음(황종환)
 - 조합원자격기준이 주어져 있고, 자격이 있더라도 총조합원 2/3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으로 조합원가입을 승인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음
 - ▶ 일반적으로 조합원 제명과 임원 해임도 총조합원 2/3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조합원가입 승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음(성명환)
 - ▶ 정관 전체를 검토해보면 조합원 자격 및 가입승인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김상범)
 - ▶ 전체적으로 조합원 가입승인문제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총조합원 2/3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으로 조합원가입을 승인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소수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함(황종환)



▷ 조합원 가입승인 제한이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소수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합의함

〈보성차의 역사성 문제〉

▷ 우리나라 차를 세계적으로 내세울만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성녹차가 정통성이 있는 것 같음. 녹차를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으로 하고 있고 또 녹차를 등록한다면 보성녹차가 알맞은 것 같음(김상범)

▷ 보성녹차가 역사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음. 다만 물량이 문제가 될 것 같음(성명환)
〈지역성 문제〉

▷ 보성차가 역사성이 있다하나 야생차가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고, 다만 재배차는 일제때부터 기록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이 산업화의 적지로 평가됨(황중환)

- 일제때 보성에 차를 재배하였다는 기록은 야생차에서 재배(산업)차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이며, 70년대에 하동 등 다른 지역으로 분양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보성이 차재배의 적지가 아닌가 생각됨

- 또한, 일본인의 차재배시작이 중요한 것 같으며, 지역적, 생태적으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임

〈차 생산량 문제〉

▷ 전국의 차 생산량 대비 보성차의 생산량 자료가 필요한 것 같음(황중환)

- 면적이 30%정도 차지하고 있다는데, 전국적으로 정확한 차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있어야 함

〈경제성 문제〉

▷ 녹차관련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것 같음(황중환)

- 지자체의 열의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고려될 수 있음

- 따라서, 녹차관련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임

▷ 지자체의 열의는 대단한 것으로 평가됨. 다만, 녹차관련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계수로 파악하기는 곤란할 것임(김상범)

- ▶ 녹차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략 몇%정도인지는 파악할 필요가 있음
(황종환)

〈가공방법 문제〉

- ▶ 보성녹차는 제조·가공방법의 특징이 없는 것 같음(황종환)
- ▶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등록대상이 세작으로서 차다·제품총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세작은 수작업으로 하는 수제차이기 때문에 제조·가공방법의 특징으로 볼 수 있음(김상범)
- 원료를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1차가공은 업체 모두가 비슷하나, 마지막 출고직전 실시하는 가향처리 과정이 차이가 남
- 가향처리 과정은 각자의 노하우로 운영되고 있는 것임
- ▶ 소재를 차다총량의 10% 이내로 제한하여 수작업으로 채취한 다음, 제품총량의 10% 이내로 지리적표시등록대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가공방법의 차이점이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지리적 특징〉

- ▷ 안개일수, 강우량, 토질 등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음(김상범)

〈보고서 작성문제〉

- ▷ 심의항목별로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오늘 논의된 의견을 종합 의견으로 제시기로 함
- ▷ 보고서 작성은 서기가 하고, 보고서 초안이 완성되면 초안을 참석한 위원에게 보내어 공람·참사하도록 하여 참석된 보고서를 서기에게 보내면 정리하여 최종 확정기로 함
- ▷ 확정된 보고서를 가지고 조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조사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조율기로 함
- ▶ 조사위원 5명 모두의 의견조율이 끝나면 종합보고서를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



다. 조사위원회 3차회의 개최결과

지리적표시등록 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 결과

서기	간사	위원장	결재

일 시 : 2001. 12. 4(수) 13:00~17:00

장 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회의실(서울)

안 건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심의 자료조사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참석자 : 5명

▷ 위원 : 김명호, 김상범, 성명환, 황종환

▷ 서기 : 서수철

조사위원회 의결사항

▷ 작성된 최종보고(안)에 대한 토의 결과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자료를 수정키로 함

- 인삼관련 및 지리적표시등록 대상품목 관련부분 삭제

▷ 소수의견으로 품질관리 관련부분 삽입

덧붙임 : 회의록 1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회의록

심의일시 : 2001. 12. 4. 13:00~17:00

장 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회의실(서울)

안 건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심의 자료조사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참석자 : 5명

▷ 위원 : 김명호, 김상범, 성명환, 황중환

▷ 서기 : 서수철

회의록

〈보고서 체계문제〉

▷ 최종보고서(안)을 검토한 결과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음(김명호)


〈소수의견 문제〉

▷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중 인삼관련 부분과 품목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성명환)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심의를 위한 자료조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인삼관련 내용이나 대상품목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은 그러한 의견도 있었다는 것이므로 문제는 없을 것 같으나 녹차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인삼문제나 품목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므로 최종보고서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황중환)

▷ 인삼문제나 대상품목 문제는 최종보고서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함



〈품질관리문제〉

- ▷ 지리적표시제에서 품질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율관리로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품질관리 부분이 너무 강조된 느낌이 들고 정부규제로 비치는 것 같으므로 다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김명호)
 - 품질기준을 자율적인 것으로 하여 최소한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보성녹차 특품(첫물차)에 대한 것만 지리적표시등록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며, 그 외 생산품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인 것 같음
- ▷ 현재 품질기준이나 관리부문을 기본적으로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법에 특품으로 한 것은 품질인증 등 다른 제도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나아가 특품에 대한 지리적표시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품질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것이므로 문제는 없을 것임(김상범)
- ▷ 지리적표시제와 품질인증,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원산지표시제 등 표시제가 여러 가지 있는데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으므로 관계설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김명호)
- ▷ 표시제는 법령이 크게 3가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가 농산물가공업육성법에 의한 특산물품질인증제(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실시)와 전통식품품질인증제가 있고, 둘째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농산물품질인증제와 지리적표시등록제, 원산지표시제,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제, 표준규격출하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가 있음(서수철)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를 위한 자료조사를 하는 것이므로 주어진 내용에 대한 조사를 충실히 하여야 하며, 그외 제도에 관한 사항은 언급할 사항이 아님(김상범)
- ▷ 조사위원회에서 언급할 사항은 아니나, 지리적표시제도가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므로 추후 제도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임(김명호)

● 

〈최종보고서 작성〉

- ▶ 소수의견으로 제시된 내용중 인삼관련 부분과 품목문제를 삭제하고 최종결론에서도 관련내용을 삭제기로 합의
- ▶ 품질관리의 자율성부여에 대한 것을 소수의견으로 제시기로 합의
- ▶ 최종보고서에 조사위원 서명후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기로 합의하고 서명함



6.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자료조사 결과 보고서(요약)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심의 자료조사 결과 보고서

2001. 12.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조사위원장 : 황중환

조사위원 : 김명호, 김상범, 성명환, 엄기철



차 례

I. 조사위원회 활동 경과	1
II. 지리적표 자료조사결과 요약	3
III.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자료조사 결과	4
1.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 명칭사용	4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5
3. 유명특산품의 증명	13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6
5.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17
6. 자체품질관리계획	22
7. 조사결과 종합의견	28
8. 조사자 소수의견	30
9. 최종결론	30
〈참고자료〉	34
1.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정관	35
2. 녹차 품질관련 화학성분 관능검사에 따른 품질평가 자료	49
3. 보성차의 역사에 관한 자료	50
4. 우리나라 차에 관한 기록 자료	53
5. 보성차 재배환경 및 다항제 관련 참고자료	54
6. 보성 해수녹차 목욕탕 관광객 및 입욕료 수입에 관한 자료	58
7. 2001년 전국 차 재배현황	59
8. 보성녹차의 보성군 기여도 분석결과	60
9. 보성녹차의 지자체 활동사항에 관한 자료	61



I. 조사위원회 활동 경과

일 자	추진 사항	비고
2001. 9. 12 ~ 9. 13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협의 - 조사위원 5명과 조사방법 등에 대한 내용협의 : 조사위원회를 개최기로 함	전화
2001. 9. 14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 심의회 위원장 → 심의회 위원, 농관원장 - 일시 및 장소 : 2001. 9. 19. 11:00, 농관원 소회의실 - 회의안건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신청한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상 관련자료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회의 - 협조요청사항 : 신청서원본 열람, 조사위원 활동비 지원	
2001. 9. 19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 - 결과 : 조사위원장(황종환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선출 및 각 위원별로 위원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취합한 후 위원장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기로 함	
2001. 9. 22 ~ 10. 20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의견서 송부 - 조사위원 → 황종환 조사위원장	
2001. 10. 25	▷ 지리적표시등록업무협의 - 협의장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서울) - 참석자 : 조사위원장, 간사, 서기 - 협의내용 : 조사보고서 작성방법, 설문조사 방법과 주체, 조사위원회 현지조사자 및 일정협의, 대상품목문제 등 논의	
2001. 10. 26 ~ 10. 27	▷ 현지출장일정 및 출장자 협의 - 출장자 및 일정 : 4명(위원 3, 서기), 2001.11.4(일)~11.6(화)	전화
2001. 10. 29	▷ 지리적표시등록심의 자료조사를 위한 현지출장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 심의회 위원장 → 조사위원, 농관원장 - 출장기간 : 2001.11.4(일) ~ 11.6(화)	
2001. 11. 4 ~ 11. 6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심의 자료조사를 위한 현지출장 - 출장지 및 출장자 : 전남 보성, 4명 - 조사내용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회원사 공장여건 및 품질관리 실태, 차발조성실태, 보성녹차의 특성 및 명성, 품질관리 의지 등	

일 자	추진사항	비고
2001.11.9 ~ 11.10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협의 - 조사위원 5명과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조사위원회개최일정 협의(2명 참석불가) - 조사위원회 개최일정 : 2001.11.14. 13:00~17:00 - 장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회의실(서울)	전화
2001.11.12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 심의회 위원장 → 심의회 위원(3명), 농관원장 - 일시 : 2001. 11. 14, 13:00~17:00 - 장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회의실(서울) - 회의내용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검토 및 종합보고서 작성	
2001.11.14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 - 일시 : 2001.11.14. 13:00~17:00 - 회의결과 · 토의 결과 제시된 의견을 서기가 정리하여 종합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참석한 조사위원 공람 및 의견을 첨삭하여 최종보고안을 작성 · 작성된 최종보고안을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되면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기로 함	
2001.11.15 ~ 11.27	▷ 조사보고서(안) 작성, 조사위원 의견수렴 및 검토 - 서기 → 조사위원 → 서기	
2001.11.29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 심의회 위원장 → 심의회 위원(5명), 농관원장 - 일시 : 2001. 12. 4, 13:00~17:00 - 장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회의실(서울) - 회의내용 : 지리적표시등록심의 최종보고서 작성	
2001.12.4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 - 일시 : 2001. 12. 4, 13:00~17:00 - 작성된 보고서 내용 중 조사자 소수의견 및 최종결론 부분 수정기로 함 - 보고서를 수정한 후 조사위원모두 서명하여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	



II.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자료조사 결과 요약

심의항목	주요내용	조사의견
1. 지리적표시 명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글: 보성녹차(우전, 곡우, 세작) ▷ 영문: Boseong Green Tea 	▷타당성 있음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종: 재래종 - 경작: 퇴비위주 경작, 친환경적 병충해 방제 - 가공: 우전(雨前茶), 곡우(穀雨茶), 세작(細雀)을 손으로 채취 빠른 시간 내에 덫음 또는 증열 처리로 발효를 중지시키고 유념작업을 7~8회 반복 ▷ 기상: 년 평균 13.4℃, 강우량 1,459mm로 차나무재배에 알맞은 조건을 두루 갖춘. 특히 3월부터 10월 생육기 중에 1,310mm의 많은 비가 내려 차의 생육을 좋게 해줌 ▷ 토양: 사양토로 배수가 잘됨 ▷ 인과관계: 토양, 기후, 지형, 호수, 바다 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 보성차 특유의 품질을 유지해 주고 있음 	▷타당성 있음
3. 유명 특산품의 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상의 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국여지승람 보성군편(1478년)에 토산품으로 기록 - 산양지(보성군 옛지명)에 토산품으로 차생산 기록 ▷ 국내외 인지도: '85년부터 "보성다향제" 개최 ▷ 수상경력: '00.6월 한·중·일 공동주최 중국주관 제2회 국제 차박람회 출품 "차 영예상" 수상 ▷ 언론보도: 신문·TV등 수십차례 보도 ▷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3개 	▷타당성 있음
4. 대상지역 범위	▷ 행정구역상 전남 보성군 관내	▷타당성 있음
5. 자체품질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 표준규격보다 엄격한 기준설정 ▷ 품질기준: 회분 6%이내, 채점기준 4점이상 ▷ 등급기준: 특급(우전, 곡우, 세작) ▷ 원료기준: 토양관리 및 병충해방제 방법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비: 연간 ha당 20톤 이상을 사용하되, 토양염류 집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 - 병충해방제: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방제 ▷ ha당 특급차 최대채취량은 연간 300kg이내 	▷타당성 있음
6. 자체품질 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품질기준에 기초한 자율적 품질관리 ▷ 매년 1월 말 이전에 자체품질관리를 위한 조사계획 수립 이행, 기준위반자 자율적 조치 	▷타당성 있음



Ⅲ.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자료조사 결과

1.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 명칭 사용

▷ 보성지역에서 생산·가공되는 특급(우전, 곡우, 세작)녹차에 “보성녹차”라 표시하고자 함

〈관련자료〉

가.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에서 신청한 신청서 상 지리적표시등록의 주요내용에 「보성녹차(우전, 곡우, 세작)」라 표시코자함

예시) 보성녹차(우전), 보성녹차(곡우), 보성녹차(세작)

나. 보성녹차연합회는 전남 보성지역 관내 14개 녹차생산업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다. 생산·가공지역의 범위는 전남 보성군으로 하고 있음

〈조사결과〉

▷ 전남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차나무 잎을 채취하여 보성군 내에서 녹차로 가공·판매

▷ 차 재배지역별 차 잎 채취현황

- 남쪽 해안지역 및 제주도 : 1년 4기 채취

· 1기에 2주정도 채취하여 년 60일정도 채취 가능

- 내륙지역 : 1년 3기 채취

· 1기에 2주정도 채취하여 년 45일정도 채취 가능

▷ 보성 지역의 차 잎 채취시기

-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의 연간 기후차이가 40일정도 됨

· 해안지역이 봄은 20일정도 빨리 시작되고, 겨울은 20일정도 늦게 시작됨

- 생장기간의 차이에 따라 수확시기 및 횟수가 달라짐

· 일반적으로 우전차(곡우 이전채취)가 품질이 가장 좋다고 하나, 내륙지역은 곡우



이전에 첫 채취가 어려우며, 첫물차인 세작은 곡우 이전이나 이후에 채취하는 것에 관계없이 최고품의 녹차를 만들 수 있음

▷ 차 잎의 가공 및 보관방법

- 차 잎 채취즉시 가공하므로 시기별로 구분하여 제다 및 보관이 가능하고, 세작, 중작, 대작 등의 품질등급 구분이 가능함

▷ 보성지역의 차 재배 및 유통과 생산업체 현황

- 생산농가 : 200여 농가

- 생산업체 : 15개업체가 영업중임

· 현재 14개 업체만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1개업체는 참여를 희망하지 않음

- 차 원료 유통

· 보성지역 생산 원료 : 가공업체와 농가간 계약 또는 자율생산 판매

· 보성지역 외의 원료 : 농가의 자율생산 및 가공업체에서 수집

▷ 차 생산량은 전국생산량의 38.6%차지

- 전국 1,526ha 1,761톤 생산, 보성 446ha 680톤 생산

▷ 녹차 관련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11%이상임

- 보성지역 총 농업소득 2,352억원, 녹차관련 소득 261억원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 보성녹차의 성분함량, 품질특성(품종, 경작과정, 가공과정, 포장과정), 지리적 기상 특성, 토양특성 등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함

〈관련자료〉

가. 보성녹차의 성분함량

구분	총질소 (%)	아미노산 (mg/100g)	탄닌 (%)	카페인 (%)	엽록소 (%)
보성녹차	4.6	1,347	14.1	3.3	4.6

※ 자료 : 차 시험장(2001), 보성 지방 녹차 제품 상품의 평균치임



▷ 보성 녹차는 총질소와 총아미노산 함량이 낮아 맛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며 음용 후 감칠맛이 나고 탄닌함량이 적당하여 떫고 쓴맛 등 5미가 분명하다. 또한 향과 맛이 독특하며 수색이 맑아 음다의 욕구를 촉진시켜주며 다음에 다시 찾게되는 특징이 있음

〈 조사결과〉

▷ 보성지역의 대표품종이라 할 수 있는 보성재래와 태평양에서 재배하고 있는 일본 품종인 Yabukita의 녹차 품질관련 화학성분 분석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수치상 뚜렷한 차이는 없음

▷ 그러나, 차 맛은 수치상의 차이보다는 관능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바, 많은 소비자들이 보성차를 즐기고 있으며, 보성차와 관련된 관광객의 숫자만큼이나 보성차의 특징이 있음

▷ 녹차 품질관련 화학성분 분석결과 참고자료

다기	성분 품종	총질소 (%)	총아미노산 (mg/100g)	테아닌 (mg/100g)	탄닌 (%)	카페인 (%)	비타민C (mg/100g)
5월초	보성재래	5.2±0.2	2500±200	1300±100	13.0±1.0	2.8±0.2	350±15
	Yabukita(태평양)	5.1±0.1	2400±100	1150±150	14.2±1.0	2.6±0.2	360±30
7월초	보성재래	4.5±0.2	2000±150	950±150	16.0±1.0	3.0±0.1	285±10
	Yabukita(태평양)	4.3±0.1	1750±200	800±100	19.0±1.5	3.3±0.1	295±15

- 녹차에 함유된 각종 맛 성분 함량으로 감칠맛, 단맛, 떫은맛, 쓴맛이 있으며, 감칠맛과 단맛의 70%이상을 아미노산, 총질소가 점유하고, 떫은맛과 쓴맛의 75%는 탄닌에 의해, 쓴맛의 75%를 카페인에 점유

- 차의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감칠맛 성분인 아미노산(특히 아데닌)과 떫은맛 성분인 탄닌의 조화가 중요함

- 좋은 차일수록 감칠맛이 강하고, 떫은맛이 적은 것이 바람직함

- 5월초 보성 재래종의 총질소, 총아미노산, 테아닌, 카페인에 비해 Yabukita에 비해 함량이 약간 많고, 탄닌함량은 약간 적고, 비타민C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7월초 채엽하여 만든차는 5월차에 비해 성분함량이 적고, 보성재래가 Yabukita에 비해 감칠맛 성분이 많고, 떫고 쓴 성분의 함량은 적은 경향으로 나타나 보성재래가 Yabukita에 비해 품질이 약간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 관능검사에 따른 품질평가 참고자료

다기	품종	성분	외관(40)		내질(60)			총점(100)
			형상	색택	향	수색	맛	
5월초	보성재래 Yabukita(태평양)		15.8	16.3	16.0	16.4	16.3	80.8
			15.0	15.8	14.2	15.5	13.8	74.3
7월초	보성재래 Yabukita(태평양)		12.6	12.2	13.5	11.7	13.6	63.6
			11.2	11.5	10.0	11.8	10.8	55.3

- 일반적으로 일본의 재배면적(5만ha)의 85%이상을 점유하는 Yabukita는 증제차(전차) 전용으로 육성된 품종으로 한국으로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는데 반해 보성재래 종은 장기간 동안 재배되면서 덩음차를 선호하는 한국인의 음다 습관에 맞게 덩음차 제조용으로 재배되고 있음
- 5월차의 경우 보성재래가 Yabukita에 비해 제품의 균일도가 충실해서 가루가 적고, 제다표면색도 양호
- 녹차 특유의 풋풋한 향과 덩음시 발생하는 pyrazine이나 pyrrole계통의 구수한 향의 조화로 향이 우수하고, 구수한 맛과 감칠맛의 조화로 맛도 양호
- Yabukita는 차의 외형이 크고, 외적형상이 균일하지 않고, 향과 맛에서도 풋내가 진하고, 차의 침출 시간이 길어 맛이 싱거운 경향
- 7월차는 5월차에 비해 외관의 형상, 색택 및 내질의 향, 수색, 맛이 열악하고, 보성재래가 Yabukita에 비해 관능검사에 의한 품질평가가 상당히 우수

나. 보성녹차의 품질특성

▷ 득량만과 보성강에서 일어나는 안개를 먹고 자란 부드럽고 살찐 햇차의 어린잎(雀舌크기)을 손으로 채취한후 빠른 시간내에 덩음 또는 증열처리를 하여 발효를 정



지시킨 후 유념하는 등 보성 녹차 특유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거치므로서 독특한 맛과 향이 뛰어나며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있는 제품으로서 보성녹차는 안심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고품질 녹차로 평가받고 있음

〈조사결과〉

- ▶ 보성차는 대부분 단일품종으로 재배되지 않고 잡종화되어 여러 품종이 혼재되어 있어 동일한 차밭 내에서도 차의 새순이 돋는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리적표시대상으로 하고자하는 첫물차는 손으로 채취하는 것이 특징적이었으며, 차 잎 채취후 곧바로 가공과정을 거치므로 보성녹차 특유의 제품을 만들 수 있음

다. 품질특성에 관한 설명

(1) 품종(종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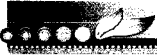
- ▶ 보성지방에 자라고 있는 차는 일본차나 중국차에 비해 기(氣)가 풍부하며, 이 지역의 기후풍토에 수 백년 동안 적응하여온 재래종으로서 특이한 향과 맛을 갖고 있으며, 여러 잡종 집단이 되어 차의 맛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특유한 맛을 내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음

(2) 경작과정상의 특징

- ▶ 보성강과 득량만 주변, 제암산 및 존재산 아래에 남향으로 다원이 형성되어있어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아 고품질 차를 생산 할 수 있음
- ▷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고급차 생산시기인 4월중 온도가 타 지역 보다 0.7~2.4℃ 높아 차의 생장이 빠르며 차의 생장에 최적 조건을 이루고 있음
- ▷ 토양은 미량요소가 풍부하며 수확 후 영양소의 공급을 위해 매년 봄, 가을에 유기물인 퇴비위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후와 토양 여건이 차의 주산지 구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최상의 품질을 자연이 제공해 주고있음

〈조사결과〉

- ▶ 보성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는 차는 재래종으로 지역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하여왔



기 때문에 보성차 특유의 향과 맛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재배되고 있어 차의 맛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특유한 맛을 내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 것임

- ▷ 차 재배지는 주로 득량만과 보성강 주변, 제암산 및 존재산 아래에 남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특성상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지리적 여건이 차재배의 적지로서 고품질 차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됨
- ▷ 주로 산비탈에 차밭이 조성되어 있으므로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양호하고 고급차 생산시기인 4월중 온도가 제주를 제외한 다른 차 재배지역보다 0.7~2.4℃ 높아 차의 생장이 빠르며 차의 생장에 최적 조건을 이루고 있는 것임
- ▷ 보성에는 이미 유기차 인증을 받은 업체도 2개소나 있고 질 좋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친환경적인 차 재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토양유기물과 미량요소가 풍부하여 품질좋은 차 생산이 가능한 것임

라. 가공과정

(1) 우전(雨前茶), 곡우(穀雨茶), 세작(細雀)

- ▷ 이른봄 첫 싹이 처음 나오는 4월에 어린잎이 1심 2엽이 되면 손으로 새순을 채취한다(곡우이전(우전)과 곡우무렵(곡우)). 새순채취 기간은 채취 시작일부터 5~7일에 한정
- ▷ 세작은 약간 뒤인 4월하순~5월 초순까지 새순이 1심 2엽인 새잎을 손으로 채취하며 새순채취기간은 10일이내
- ▷ 수확후 빠른 시간 내에 덩음 또는 증열 처리로 발효를 중지시키고 유념작업을 7~8회 반복하여 수분이 5%정도 되도록 건조하여 보관하였다가 출고직전 가향(加香) 처리 과정을 거쳐서 녹차 특유의 5미(쓰고, 떫고, 시고, 달고, 짠맛)를 갖는 상품을 생산

(2) 중작(中雀)

- ▷ 상품의 채취가 끝나면 온도가 높아져 차잎이 자연히 크고 넓어지므로 1심 2~3엽

의 새순을 손으로 채취하여 우전, 곡우, 세작의 제조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다(製茶)한다. 이때는 특히 온도가 높으므로 수확후 오랜시간 방치하지 않고 제다하는 것이 특징임

(3) 대작(大雀)

- ▶ 중작의 채취가 끝나면 온도가 높아져 차잎이 자연히 크고 넓어지므로 1심 2~3엽의 새순을 손으로 채취하여 중작의 제조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다(製茶)한다. 이때는 특히 온도가 높으므로 수확후 오랜시간 방치하지 않고 제다하는 것이 특징임

〈조사결과〉

- ▶ 보성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차의 특성상 어린 싹이 자라는 시기가 다르므로 차잎을 손으로 채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며, 차 생잎의 특성상 변질을 막기 위해 채취와 동시에 가공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가공방법은 업체별로 비슷하지만, 마지막 공정인 출고직전 가향(加香)처리 과정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어 업체별 특징이 있음
- ▶ 차의 새순이 자라는 시기의 기온차이에 의해 고급차인 우전(雨前茶), 곡우(穀雨茶), 세작(細雀)과 중급인 중작(中雀), 하급인 대작(大雀) 차가 생산되고 있음

마. 포장과정

녹차의 포장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소포장 은박비닐에 100g 또는 50g씩 밀봉하여 습기와 외부의 공기 침입을 막고, 지관 또는 나무 상자에 100g씩 넣어서 완전 상품화한다

〈조사결과〉

- ▶ 티백용이나 엽차용을 제외한 우전(雨前茶), 곡우(穀雨茶), 세작(細雀), 중작(中雀), 대작(大雀)은 모두 소포장 은박비닐에 100g 또는 50g씩 밀봉하여 습기와 외부의 공기 침입을 막고, 지관 또는 나무 상자에 100g씩 넣어서 상품화하고 있음
- ▶ 엽차용이나 티백용은 일반 비닐에 담아 출하하고 있음



바. 대상지역의 행정구역 특성

▷ 동경 127.10도 북위 34.5도를 중심으로 면적은 662.29km²의 보성군 일원으로 한다.
남쪽은 해안선인 득량만과 순천만 일부를 경계로 한 회천면 일대와 제암산 주변,
보성읍을 중심으로 보성강이 흘러 주암호에 이르는 주변지역, 존재산 아래 징광계
곡을 대상지역으로 함

〈조사결과〉

▷ 현재 차밭이 조성되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이 차재배의
적지로서 추가로 차밭이 조성된다면 이들 지역에 조성될 것이므로 재배지역의 특
성은 계속 유지될 것임

사. 지리적 기상특성

▷ 이 지역은 년 평균기온은 13.4℃이고 강우량도 1,459mm로서 차나무재배에 알맞은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이다. 특히 3월부터 10월 생육기 중에 1,310mm의 많은 비가
내려 차의 생육을 좋게 해줌

〈표 1〉 차 재배 지역별 온도 분포

지역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평균 기온
광주	-0.6	1.1	5.7	11.4	16.8	21.4	25.6	26.1	20.9	14.0	8.2	2.4	12.8
보성	0.4	1.5	5.2	13.6	17.8	21.2	24.8	25.8	21.4	15.1	8.1	2.3	13.4
강진	0.5	1.8	5.6	12.4	17.1	21.4	23.8	26.4	21.2	14.6	8.4	2.4	12.9
광양	0.5	1.8	6.6	12.9	18.1	21.6	24.7	26.3	21.2	15.5	4.3	2.0	13.0
구례	-0.1	1.7	6.5	12.9	17.6	22.0	25.3	25.8	20.8	14.5	7.5	2.1	13.0
하동	-0.4	1.0	4.8	11.2	17.2	21.8	24.9	25.6	20.8	15.8	10.0	3.2	15.9
제주 (서귀포)	6.0	6.6	9.7	14.0	17.9	20.9	25.1	26.7	23.2	18.5	13.4	8.4	15.9



〈표 2〉 차 재배 지역별 강우량 분포

지역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광 주		31.5	34.4	69.1	82.1	92.0	168.8	222.6	201.2	189.5	51.9	42.9	56.8
전남	보성	13.5	58.2	70.0	184.0	138.3	273.1	218.7	254.9	125.9	45.4	42.7	35.0	1,459
	강진	34.0	32.8	71.2	164.2	101.2	254.2	204.8	232.1	135.4	47.0	45.4	36.2	1,227
	구례	30.5	37.7	62.2	97.5	96.7	205.2	320.4	264.0	134.8	50.7	48.3	25.8	1,374
제주(서귀포)		57.8	77.2	108.0	188.7	205.9	282.3	282.6	216.5	160.9	71.3	78.4	41.8	1,776
경남 하동		49.2	55.6	73.1	158.4	108.1	188.0	201.8	226.4	120.0	87.5	48.6	42.0	1,358

〈조사결과〉

▷ 보성지역이 제주나 하동을 제외하고는 년 평균기온이 높고, 강우량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월부터 10월 생육기 중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아 차의 생육과 관계되는 지리적 기상특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아. 토양특성

▷ 사양토로 많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잘되며 바다와 강이 인접해있어 온도가 따뜻하고 안개 일수가 많아 차나무 성장기에 많은 수분을 공급하는 한편 그늘을 마련하여 주어 차의 맛을 좋게하는 천혜의 특징을 갖고 있음

〈조사결과〉

▷ 차밭은 대부분 산비탈에 조성되어 있으며, 사양토로 배수가 잘되고, 바다와 강이 인접해 있어 따뜻하고 안개일수가 많으며, 차밭주위에는 숲을 조성하여 바람을 막고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음



자. 지리적요인과 품질특성과의 인과관계

- ▶ 토양 : 사양토로서 맥반석 지대의 토양으로 토심이 깊음
- ▶ 기후 : 바다와 호수가 인접해있어 차나무 성장에 가장 적합한 기온, 강수량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 지형 : 차가 자생되는 곳은 대부분 남향이며 야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특히 계곡이 많으며 주변지역보다 표고가 높은 분지 형태를 이루고있어 사계절의 한계가 뚜렷하며 일중 온도 교차가 많은 것이 특징임
- ▶ 호수, 바다 : 북쪽으로는 보성강과 주암호로 둘러 싸고있어 내륙성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득량만, 순천만의 해양성 기후가 받혀주고 있어 연중 안개 일수가 많아 차 맛이 독특함
- ▶ 차의 최상품의 품질을 유도해 주는 기후, 토양, 지형, 호수, 바다 등이 잘 어울려져 최고급 차의 품질을 만들어주는 천혜의 고장임

〈조사결과〉

- ▶ 보성차의 성분함량은 보성지역의 대표품종이라 할 수 있는 보성재래와 태평양에서 재배하고 있는 일본품종인 Yabukita의 녹차 품질관련 화학성분 분석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수치상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 같음
- ▶ 그러나, 차 맛은 수치상의 차이보다는 관능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바, 많은 소비자들이 보성차를 즐기고 있으며, 보성차와 관련된 관광객의 숫자만큼이나 보성차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 보성차는 대부분 단일품종으로 재배되지 않고 잡종화되어 여러 품종이 혼재되어 있어 동일한 차밭 내에서도 차의 새순이 돋는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리적표시대상으로 하고자하는 첫물차는 손으로 채취하는 것이 특징적이었으며, 차 잎 채취후 곧바로 가공과정을 거치므로 보성녹차 특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사료됨
- ▶ 또한, 보성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는 차는 재래종으로 지역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하여왔기 때문에 보성차 특유의 향과 맛을 갖는 것이며,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재배

되고 있어 차의 맛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특유한 맛을 내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 것임

- ▶ 보성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차의 특성상 어린 싹이 자라는 시기가 다르므로 차잎을 손으로 채취할 수밖에 없고, 차 생잎의 특성상 변질을 막기 위해 채취와 동시에 가공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가공방법은 업체별로 비슷하지만, 마지막 공정인 출고직전 가향(加香)처리 과정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어 업체별 특징이 있음
- ▶ 토양특성은 차밭은 대부분 산비탈에 조성되어 있으며, 사양토로 배수가 잘되고, 바다와 강이 인접해 있어 따뜻하고 안개일수가 많으며, 차밭주위에는 숲을 조성하여 바람을 막고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음
- ▶ 지리적 기상특성은 보성 지역이 제주나 하동을 제외하고는 년 평균기온이 높고, 강우량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월부터 10월 생육기 중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아 차의 생육과 관계되는 지리적 기상특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 지형적인 특성은 차 재배지가 주로 득량만과 보성강 주변, 제암산 및 존재산 아래에 남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형 특성상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지리적 여건이 차재배의 적지로 평가되며, 지형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 호수와 바다의 특성은 북쪽으로는 보성강과 주암호로 둘러 싸고있어 내륙성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득량만, 순천만의 해양성 기후가 받혀주고 있어 연중 안개 일수가 많다는 것은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음
- ▶ 이와 같이 토양, 기후, 지형의 특성과 호수, 바다 등이 잘 어울려져 최고급 차의 품질을 만들어주는 천혜의 고장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유명특산품의 증명

▷ 보성녹차의 명성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 국내외 인지도, 언론보도 및 수상경력, 전 통식품 품질인증 등에 의한 유명특산품의 증명

〈관련자료〉

(1) 역사적 입증자료

가. 우리나라에 차가 자라고있는 곳은 총 261개소이며 그중 전라도 지방에는 235개소가 자생되고있으며 북홀군(伏忽郡)이 마한에서 백제로 통합(근초고왕(369년경) 되면서 처음으로 차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

※ 별첨(1)-가1 ~ 가6(생략)

나. 동국여지승람(1478년)보성군편(卷47,705面)土產品으로 茶生産.

※ 별첨(1)-나1 ~ 나6(생략)

다. 山陽誌(송정기원후재신유:1741년2月刊行)에 茶가 土產品으로 記錄, 1478년이전 부터 茶가 생산되고 있음.

※ 별첨(1)-다1 ~ 다3(생략)

라. “다향 보성”의 탐(탐의사진 첨부)

목포-부산간 국도 2호선 변 소공원에 세워진 탐, 비문에 수백년 전부터 차를 생산 하여 왕실에 진상하기도 하였거니와 세금으로 차를 현물로 납세 하였다고 기록.

※ 별첨(1)-라1 ~ 라5(생략)

마. 보성군사(1995년 발행)

“차문화의 중흥과 보성(제5장)” 수백년 전부터 차를 재배하여 오다 수요의 증가에 따라 1960년부터 확대 재배로 매년 재배면적의 증가와 생산량이 증가추세에 있다.

※ 별첨(1)-마1 ~ 마15(생략)

(2) 국내외 인지도 (유명성)

▶ 1985년부터 매년 5월중에 실시 하는 보성의 차를 알리는 “보성다향제”는 전국규모의 차 문화 행사로서 전국 각지의 차 애호가들이 참관하고 최고의 품질의 차를 만드는 행사에 참여하여, 한국차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으며 다향 보성으로서 명실 상부한 한국 최고의 차의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 별첨 (2) - 1(생략)

(3) 수상경력 주요 언론보도

가. 수상경력

2000년 6월 한·중·일 공동 주최하고 중국에서 주관하는 제2회국제명차 평심위원회에서 주최한 국제 차박람회교역회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관내 보성제다에서 출품하여 차 영예상을 받은 바 있으며, 1991년부터 매년 11월에 열리는 전국 농수특산물 경진대회에서 매년 출품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 별첨 (3) - 가1~가2(생략)

나. 언론보도

1) 신문분야

국내 중요 일간신문, 조선, 동아, 대한, 중앙, 경향, 한겨레, 스포츠 관련신문 등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물론 주간, 월간 신문잡지 등 수 많은 보도가 되었으며

※ 별첨 (3) 신문분야 1 - 35(생략)

2) TV분야

KBS 뉴스와 6시내고향, 생방송 오늘, 맛자랑 멋자랑, MBC 뉴스 생방송 모닝스페셜, 고향은지금, SBS 뉴스, 생방송 모닝와이드 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보성녹차의 우수성이 보도되어 많은 소비자 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 입증자료 별첨(생략)

(4) 품질 인증등에 의한 인증여부

보성 지방의 제다업체에서는 그 동안 품질개선에 많은 노력을 하여온 결과 다음과 같이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바 있음.

주 소	업체명	상품명	인증구분	인 증 년월일	인증번호	인증품목 및 규격
보성 미력면 도개리 762-4	보성제다	보성녹차 곡우	전통식품 품질인증	'99.09.13	농림전통 140호	녹차(방습포장녹차 뒤음차/고급TO24)
보성 보성읍 봉산리 1214	동양다원 영농조합	유비차	"	'00.03.14	농림전통 148호	녹차(방습포장녹차 뒤음차/고급TO24)
보성 회천면 영천리 1-7	붓재다원	보성 수제차	"	'00.12.14	농림전통 156호	녹차(방습포장녹차 뒤음차/고급 TO24)

〈조사결과〉

- ▷ 보성녹차의 역사적인 입증자료는 명확함
 - 복흥군(伏忽郡)이 마한에서 백제로 통합(근초고왕(369년경)되면서 처음으로 차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기록 확인
 - 동국여지승람(1478年)보성군편(卷47,705面)土産品으로 茶生産 기록 확인
 - 山陽誌(송정기원후재신유:1741년2月刊行)에 茶가 土産品으로 記錄, 1478年이전부
터 茶가 생산되고 있다는 내용 확인
 - “다향 보성”의 탐 현지 확인
 - 보성군사(1995년 발행) 기록 확인
- ▷ 국내외 인지도는 현지 관광객을 통하여 알 수 있었으며, 녹차를 즐기는 도시소비자
들도 대부분 “보성 = 녹차”라는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임
- ▷ 수상경력은 2000년 6월 한·중·일 공동 주최, 중국 주관 제2회국제명차 평심위원에
서 주최한 국제 차박람회역회에 보성제다에서 출품하여 차 영예상을 받은 바 있음
- ▷ 언론보도는 국내 중요 일간신문, 조선, 동아, 대한, 중앙, 경향, 한겨레, 스포츠 관련신

- 문 등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물론 주간, 월간 신문잡지 등 수 많은 보도자료 확인
- ▶ TV분야는 KBS 뉴스와 6시내고향, 생방송 오늘, 맛자랑 멋자랑, MBC 뉴스 생방송 모닝스페셜, 고향은지금, SBS 뉴스, 생방송 모닝와이드 등 많은 프로그램에서 보성 녹차의 우수성이 보도되어 많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음
 - ▶ 보성 지역의 제다업체중 3개업체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바 있으며, 2개업체는 유기농산물가공품으로 특산물 품질인증을 받았음
 - ▶ 보성차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사찰을 중심으로 한 자생차 중심이었으나, 일제시대 때 비로소 재배차의 역사가 시작되었음
 - ▶ 일제때 보성에 차를 재배하였다는 기록은 야생차에서 재배(산업)차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이며, 70년대에 하동 등 다른 지역으로 분양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보성이 차재배의 적지로 평가되며, 지역적이나 생태적으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 이와 같이 보성녹차의 명성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 관광객 등을 통한 명성, 대외 수 상경력, 신문 및 TV 등 언론보도내용, 품질인증 획득 등에 대한 확인으로 보성녹차의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음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 품질의 특성 및 성가유지 등을 위해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녹차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음

〈관련자료〉

가. 보성군 관내 1/50,000 지도에 신청자의 차밭을 표시하여 신청하였음

〈조사결과〉

- ▶ 보성녹차의 품질의 특성 및 성가유지 등을 위해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녹차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 특히, 외국차와 품질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행정구역상 보성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5.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에 의한 전통식품 표준규격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관련자료〉

가. 품질 기준표

항 목	기 준		
	특 급	고 급	중 급
관능품위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분말(%)	2.5이하	2.5이하	2.5이하
줄기 및 협잡물(%)	3.0이하		
수분(%)	6.0이하		
회분(건물%)	5.5이상	4.5이상	4.5미만

비고: 1. 회분은 최고 6.0%를 초과할 수 없다.

2.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차 생산을 위하여 총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않으나, 맛이 느끼하지 않도록 총질소 함량이 높지 않아야 한다.

나. 등급기준

차의 유통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품명으로 등급을 부여하되, 우전, 곡우, 세작급에 대해서만 지리적 표시를 한다.



〈표 2〉 관능품위 기준

대상	항목	채 점 기 준
건조차잎(제품)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잎이 말아진 상태가 매우 균일하고 고유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거의 없는 것은 5점으로 한다 ▷ 차잎의 말아진 상태가 대체로 균일하고 고유의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있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약간 있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차잎의 말아진 상태가 불균일하고 고유의 형태가 유지되지않았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많은 것은 2점으로 한다 ▷ 차잎이 말아진 상태가 극히 불균일하고 고유의 형태가 전혀 유지되지 않았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매우 많고 이물이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색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잎 고유의 녹색이나 진녹색이 선명하며, 색택이 균일하고 윤기를 가진 것은 5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녹색이나 진녹색이 비교적 선명하며 색택이 대체로 균일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색이 퇴색되어있고, 갈색, 적색, 흑색, 청흑색 등으로 변색된 차잎이 포함된 것은 2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색이 매우 퇴색되어있고 갈색, 적색, 흑색, 청흑색 등으로 변색된 차잎이 많이 포함된 것은 1점으로 한다.
말수추출액	수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색이 선명한 담록색 또는 황록색을 띄며 잔사가 거의 없어서 매우 맑은 것은 5점으로 한다 ▷ 수색이 비교적 선명한 담록색 또는 황록색을 띄며 잔사가 약간있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수색이 적색, 흑색, 청색, 적흑색을 띄며 잔사가 많아서 탁한 것은 2점으로 한다 ▷ 수색이 적색, 흑색, 청색, 적흑색을 띄며 잔사가 매우 많아서 몹시 탁한 것은 1점으로 한다
	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양호하고 향기가 매우 신선하며 이미·이취가 없는 것은 5점으로 한다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비교적 양호하고 향기가 신선하며 이미·이취가 없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부족하며 떫은 맛이 강하고 이미, 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 떫은 맛과 이미·이취가 강한 것은 1점으로 한다.



다. 시험방법

- ▶ 품질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시험방법 규정에 따른다.

라. 제조·가공기준

(1) 공장입지, 작업장, 보관시설, 제조설비

- ▶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규정에 따름

(2) 자재기준

(가) 원자재

- 1) 원료 생엽은 전남 보성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사용할 원료 차 잎의 채취시기 및 크기는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우전: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이전에 채취한 차 잎으로 우전차 고유의 잎 크기(1.5~2.0cm)인 1심2엽을 사용한다.
 - 나) 곡우: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 잎으로 곡우차 고유의 잎 크기(2.0~2.5cm) 이내의 1심2엽을 사용한다.
 - 다) 세작: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 잎으로 세작 고유의 잎 크기(2.5~3.0cm) 이내의 1심3엽을 사용한다.
- 3) 원료 차 잎의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환경친화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원료 차 잎을 생산하기 위하여 잘 부숙된 유기질 퇴비를 연간 ha당 20톤 이상을 사용하여 토양관리를 하되, 토양염류 집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병충해 방제는 환경친화적인 방법 성페르몬, 유아등, 끈끈이트랩 등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우수한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차 밭 ha당 우전, 곡우, 세작의 최대채취량은 보성지역 평년작 평균 단수를 적용하여 연간 300kg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용수: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 시험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 적합 시험을 받아야 한다.

(3) 주요 공정기준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규정에 따름

마. 포장

(1) 포장재: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소포장 은박비닐로 밀봉하여 습기와 외부의 공기 침입을 막고, 지관 또는 나무상자에 100g씩 넣어서 상품화한다.

(2) 단위포장내용량: 속포장은 100g, 50g 단위로 포장한다.

바. 표시

(1) 일괄표시사항: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따름

(2) 지리적특산품의 표시: 보성 녹차(우전, 곡우, 세작)

(3) 표시방법

(가) 일괄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목명: 제조방법에 따라 “녹차(뒤음차)” 또는 “녹차(찜차)”라고 기재한다.

2) 규격번호: 규격번호는 T000으로 표시하거나, 생략 가능함

3) 등급: “특급”으로 표시

4) 원재료명: “차잎” 또는 “녹차엽”으로 기재한다.

5) 차잎 채취지역: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표시

6) 차잎 채취시기: 해당제품의 차잎 채취시기를 “년 월 (상, 중, 하)순”으로 기재하되, 채취시기가 서로 다른 차잎이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나중에 채취된



차잎의 채취시기만을 기재한다. 단, 인쇄공정상 항목명 바로 뒤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표시란 밖에 해당항목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보기: "2002년 5월 상순" 또는 "차잎 채취시기: 2002년 5월 상순"

7) 내용량: 내용량을 g 또는 kg 단위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8) 유통기한: 제품의 품질수준이 본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 될 수 있다고 생산자가 인정하는 기한을 기재한다. 단, 인쇄 공정상 유통기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표시란 밖에 표시하여도 좋다.

9) 보존방법: 개봉 전 또는 개봉 후의 보관상 유의점을 기재한다.

10) 제조자: 제조자 명 및 소재지를 기재한다.

(나) 지리적특산품의 표시: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따르되, 등록명칭은 "보성 녹차(우전, 곡우, 세작)" 이라 표시하고, 영문등록명칭은 "Boseong Green Tea" 이라 표시한다.

(4) 표시금지사항: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표시금지사항 규정에 따름

〈조사결과〉

- ▷ 자체품질기준을 정하는 목적은 품질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규정으로, 성가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자체품질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 ▷ 회분은 최고 6.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차 생산을 위하여 총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않으나 맛이 느끼하지 않도록 총질소함량이 높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특징적임
- ▷ 등급은 차의 유통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품명으로 부여하되, 우전, 곡우, 세작급에 대해서만 지리적 표시를 한다는 것은 지리적표시의 성과제고를 위해 타당성이 있음
- ▷ 제조·가공기준에서 원자재 사용은 전남 보성에서 생산된 차의 생엽을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채취시기 및 크기는 종류별로 우전, 곡우, 세작을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 원료 차 잎의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 등의 기준을 정하여 친환경적인 녹차를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징적인 사항임
- ▶ 우수한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차 밭 ha당 우전, 곡우, 세작의 최대채취량은 보성지역 평년작 평균 단수를 적용하여 연간 300kg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차의 혼입을 막기 위한 조치임
- ▶ 용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공정기준은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어느 정도 품질의 균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것임
- ▶ 포장방법은 속포장을 100g, 50g 단위로 하여 은박비닐로 밀봉하여 습기와 외부의 공기 침입을 막고, 지관 또는 나무상자에 100g씩 넣어서 상품화함으로써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 표시는 기본적으로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따르되,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는 보성 녹차(우전, 곡우, 세작)로 하고, 영문등록명칭은 “Boseong Green Tea” 이라 표시하도록 설정한 것은 자율적인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으며, 표시금지사항은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표시금지사항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은 지극히 타당함

6. 자체품질관리계획

- ▶ 자체 품질기준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자율적인 품질관리를 원칙으로 하는 자체품질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음
- (관련자료) : 자체품질관리계획서

(1) 목적

- ▶ 보성녹차의 명성·품질·특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사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품의 관리를 통한 보성녹차의 명성 및 품질을 보호함과 아울러 판매를 촉진하여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자의 소득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품질조사계획의 수립

▶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말 이전에 보성녹차지리적표시등록품(이하 “등록품”이라 한다)에 대한 품질조사 대상제품에 대한 수확시기·햇수·성분 등을 조사(이하 “품질조사”라 한다)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단,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에서 해당조사를 실시할 경우 품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임무

(가) 회장

- 1) 등록품에 대한 품질조사계획 수립 및 이사회 상정
- 2) 관련기관, 회원에게 확정된 품질조사계획 통보
- 3) 등록품의 조사결과에 대한 이사회 상정 및 심의결과 해당자에 통보
- 4) 부정 등록품의 조사

(나) 이사회

- 1) 등록품에 대한 품질조사계획의 확정
- 2) 등록품의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방법 심의
- 3) 이의신청 심의 및 표시금지자의 재표시 허용여부 심의
- 4) 조사원의 결정(조사자, 활동기간 등)

(다) 조사원

- 1) 조사시료의 수거 및 분석기관에 분석 의뢰
- 2) 조치결과(표시정지, 표시금지 등) 이행여부 확인

(라) 회원

- 1) 등록품의 품질기준, 유해물질기준, 등급기준, 표시사항 준수
- 2) 등록상품의 명성 가치와 명예의 유지·향상
- 3) 일자별 채다량, 수매량, 제품생산량 및 등록품 출하·판매량 기록



4) 시료수거 · 관련장부의 열람 협조

5) 부정 등록품의 감시 및 신고

(4) 분석기관 및 조사대상

(가) 분석기관 : 분석기관은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기관인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 또는 공공검사기관을 말한다.

(나) 조사대상 :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등록품의 원료나 제품에 한하며, 등록품이 아닌 제품(허위표시품, 유사표시품 등) 등은 분석기관에 시료수거 및 분석을 요청한다.

(5) 조사 기준

(가) 품질기준 : 전통식품표준규격제정·개정(농림부 고시 제1999-02호)의 녹차(규격번호 T024-1995) 기준에 의하되, 본 기준보다 엄격한 자체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한다.

(나) 유해물질기준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관련기준

(다) 등급기준 : 보성에서 생산된 차의 제품중에서 특급에 한하여 정한다. 표시품은 우전, 곡우, 세작으로 하고 그 양은 해당 생산자의 채다(차잎채취)총량과 제품총량의 10%미만이어야 한다.

1) 우전 : 당해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이전에 채취한 차엽으로 생산한 녹차제품

2) 곡우 : 당해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엽으로 생산한 녹차제품

3) 세작 : 당해연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엽으로 생산한 녹차제품

(6) 조사 대상

(가) 품질기준 : 관능품위(차의 형태, 색, 수색, 향, 맛등), 분말도, 줄기 및 협잡물포함정도, 수분함량, 회분 등



(나) 유해물질 기준 : 중금속, 잔류농약, 타르색소 등

(다) 등급기준 : 특급

(7) 품질조사 방법

(가) 생산원료조사

- 1) 생산전원료에대한 사전 조사는 수확전이나 수확 후 또는 제품완성전의 원료를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
- 2) 관능품위 조사, 산지 판정, 유해물질 조사 등 필요시 무작위 조사

(나) 저장단계조사

- 1) 저장단계조사는 제품 생산 후 판매하기 전에 생산·제조·가공업자가 진열·보관·저장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
- 2) 매년 5월 31일 이전에 제조회사 또는 단체별로 1회 이상 조사

(다) 유통단계조사

- 1) 유통단계조사는 도매·소매시장, 기타 유통장소에서 판매(통신판매 등 포함)중이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조사하는 방법
- 2) 제조회사 또는 단체별로 년 1회 이상 조사

(8) 시료의 수거

(가) 관계자입회 : 품질조사, 유해물질조사 및 이의신청조사를 위한 시료 수거시에는 당해 농산물의 생산·제조·가공업자나 판매자 등 이해관계자를 입회토록 한다.

(나) 상호 날인 : 시료는 각 2점을 수거하여 수거자와 입회자가 포장을 손상하지 않은 상태로 상호 날인한다.

(다) 시료수거용기 : 시료의 수거 수송·운반에 편리하고, 운반 중에 건조 흡습 오염 변질 등이 되지 않도록 시료의 종류 형상 분석목적 등에 따라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라) 시료수거방법 : 시료를 수거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대상 모집단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수거하여야 한다.



(마) 시료수거량

종류별	계(최소 수거량)	분석의뢰용	연합회보관용
원료 제품	100g이상 100g이상(2 포장단위 이상)	50g이상 50g이상	50g이상 50g이상

※ 제품은 포장단위별로 수거하되, 1개체(Box)의 중량이 50g에 미달할 때에는 100g이 될 때까지 포장단위 개체수를 증가한다.

(바) 시료수거 서류작성 : 조사원이 시료를 수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성 녹차 지리적표시품 분석의뢰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연합회에 보관하고 1부는 분석을 의뢰한 기관에 송부한다.

(사) 시료의 분석의뢰 : 수거한 시료에는 수거일시·장소, 수거자 및 입회자 등이 지워지지 않도록 기재한 후 수거당시의 성상 등이 변화가 적도록 조치하여 수거시점부터 3일 이내에 분석기관에 송부하여야 하며, 송부과정 중에 2차 오염이나 변질, 변패, 파손 등이 없도록 유의 하여야 한다.

(아) 시료의 보관 : 회장은 시료를 보관할 때에는 분석의뢰서 사본을 보관용 시료에 첨부한 후 내용물이 변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생산·제조·가공업자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상 보관 한다. 다만 분석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시료는 그 보관기간을 필요한 기간까지 연장한다.

(9) 품질조사 비용

(가) 품질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 비용과 분석비용은 연합회 예산으로 부담

(나) 이의신청용, 참고용, 선전용 기타 개별적인 용도로 분석할 경우 그 분석비용은 분석의뢰자의 자부담 원칙

(10) 조사결과 조치

(가) 표시정지: 다음 각호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개월~3개월의 표시정지를 명한다

- 1) 유해물질이 관련규정의 허용기준 이상 검출되었을 경우 내용에 따라 협의하여 조치한다.



2) 표시품의 명예를 경미하게 손상시켰을 경우

3) 표시품의 표시내용이 부적절할 경우

(나) 표시 금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가공한 자에게 2년동안 표시를 금지시킨다. 표시금지자가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보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녹차를 등록품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2) 보성에서 생산되지 않은 녹차를 등록품에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3) 등록품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4) 등록품의 등급기준에 미달한 경우

5) 해당생산자의 채다총량과 제품총량의 10%이상을 등록품으로 사용 했을 경우

6) 등록품의 명예를 손상한 경우

(다) 제품회수, 표시삭제

1) 표시정지나 금지된 제품은 즉시 회수하도록 조치

2) 회수가 어려울 때는 이사회에 승인하에 표시사항을 지우거나 보이지 않도록 조치한 후 판매

(라) 조사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1) 조사내용이나 표시정지 및 금지된 사항 등은 즉시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가공업자와 농관원에 통보한다.

2) 해당 제품의 생산·제조·가공업자는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의신청을 제기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필요한 조사나 심의 및 통보를 완결하여야 한다.

(11) 기타

(가) 본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품의 품질관리 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의 정관이나,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른다.

(나) 조사계획의 수립, 조사원 결정, 시료수거, 분석의뢰, 이사회 심의, 이의신청 심사

등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처리되어야 하며, 등록품과 관련된 제반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조사결과〉

- ▶ 자체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민간 자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품질향상을 통한 지리적표시등록제의 발전과, 생산자조직의 자발적인 조직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 매년 1월말 이전에 자체적으로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품에 대한 품질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품질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에서 해당조사를 실시할 경우 품질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타당성이 있음
- ▷ 자체품질관리를 하기 위해 회장, 이사회, 조사원, 회원에 대한 임무를 부여함으로써,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 분석기관은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 또는 공공검사 기관으로 설정하고, 조사대상은 원칙적으로 등록품의 원료나 제품에 한하며, 등록품이 아닌 제품(허위표시품, 유사표시품 등) 등은 분석기관에 시료수거 및 분석을 요청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율적인 자체 품질관리기준으로 타당성이 있음
- ▷ 조사기준에서 품질은 자체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적용하고, 유해물질은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관련기준을 적용하고, 등급은 보성에서 생산된 차의 제품중에서 특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전, 곡우, 세작으로 표시하는 물량을 해당 생산자의 체다(차잎채취)총량과 제품총량의 10%미만으로 정한 것은 품질관리를 위한 기본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음
- ▶ 조사대상을 자체적으로 설정한 품질기준과 유해물질기준, 등급기준에 따라 조사하도록 한 것은 타당성이 있음
- ▶ 품질조사 방법을 생산원료조사, 저장단계조사, 유통단계조사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타당성이 있음



- ▷ 시료의 수거시 관계자를 입회시키고, 상호 날인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 품질조사에 필요한 시료수거 비용과 분석비용은 연합회 예산으로 부담토록 하고, 이의신청용, 참고용, 선전용 기타 개별적인 용도로 분석할 경우 그 분석비용은 분석의뢰자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정한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타당성이 있음
- ▷ 조사결과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사안에 따라 표시정지, 표시금지, 제품회수, 표시삭제 등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에 대한 규정을 설정한 것은 자체품질관리 성과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평가됨

7. 조사결과 종합의견

- ▷ 차 맛은 수치상의 차이보다는 관능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바, 많은 소비자들이 보성차를 즐기고 있으며, 보성차와 관련된 관광객의 숫자만큼이나 보성차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 보성차는 대부분 단일품종으로 재배되지 않고 잡종화되어 여러 품종이 혼재되어 있어 동일한 차밭 내에서도 차의 새순이 돋는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리적표시대상으로 하고자하는 첫물차는 손으로 채취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차 잎 채취후 곧바로 가공과정을 거치므로 보성녹차 특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임
- ▷ 보성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는 차는 재래종으로 지역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하여왔기 때문에 보성차 특유의 향과 맛을 갖고 있는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품종이 혼합되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차의 맛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특유한 맛을 내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 것임
- ▷ 토양특성은 차밭이 대부분 산비탈에 조성되어 있으며, 사양토로 배수가 잘되고, 차밭주위에는 숲을 조성하여 바람을 막고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음
- ▷ 지리적 기상특성은 보성 지역이 제주나 하동을 제외하고는 년 평균기온이 높고,

강우량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월부터 10월 생육기 중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아 차의 생육과 관계되는 지리적 기상 특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 지형적인 특성은 차 재배지가 주로 득량만과 보성강 주변, 제암산 및 존재산 아래에 남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형특성상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지리적 여건이 차재배의 적지로 평가되며, 지형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 호수와 바다의 특성은 북쪽으로는 보성강과 주암호로 둘러 싸고있어 내륙성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득량만, 순천만의 해양성 기후가 받혀주고 있어 연중 안개 일수가 많다는 것은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음
- ▶ 이와 같이 토양, 기후, 지형의 특성과 호수, 바다 등이 잘 어울려져 최고급 차의 품질을 만들어주는 천혜의 고장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보성녹차의 명성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 관광객 등을 통한 명성, 대외 수상경력, 신문 및 TV 등 언론보도내용, 품질인증 획득 등에 대한 확인으로 보성녹차의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음
- ▶ 보성차의 역사성은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사찰을 중심으로 한 자생차 중심이었으며, 일제시대 때 비로소 재배차의 역사가 시작되었음
- ▶ 일제때 보성에 차를 재배하였다는 기록은 야생차에서 재배(산업)차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이며, 70년대에 하동 등 다른 지역으로 분양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보성이 차재배의 적지로 평가되며, 지역적이나 생태적으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 가공방법상 특성은 보성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차의 품종특성상 어린 싹이 자라는 시기가 다르므로 차잎을 손으로 채취하고, 차 생잎의 변질을 막기 위해 채취와 동시에 가공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를 하고자 하는 등록대상이 세작으로서 채다·제품총량의 10% 이내로 제한하여 세작은 수작업으로 하는 수제차이기 때문에 제조·가공방법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적인 가공방법은 업체별로 비슷하지만, 마지막 공정인 출고직전 가향(加香)처리 과정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어 업체별

특징이 있음

- ▷ 보성녹차의 품질특성 및 성가유지 등을 위해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녹차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 특히, 외국차와 품질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행정구역상 보성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 자체품질기준을 정하는 목적은 품질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규정으로, 성가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자체품질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 ▷ 자체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민간 자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품질향상을 통한 지리적표시등록제의 발전과, 생산자조직의 자발적인 조직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
- ▷ 보성지역에서 녹차관련산업이 지역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열의는 대단한 것으로 평가됨

8. 조사자 소수의견

-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정관의 조합원 가입승인문제에 있어 총조합원 2/3 이상 출석, 출석조합원 2/3이상 찬성으로 조합원가입을 승인하는 것은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음(황종환)
- ▷ 지리적표시제에서 품질관리는 자율적인 관리가 기본사항이기 때문에 품질관리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다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음(김명호)

9. 최종결론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에서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신청한 보성녹차지리적표시등록신청건과 관련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 자료조사를 위하여 '01.9.14부터 12.4까지 신청서류 조사, 소비자 여론청취,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함

- ▶ 소수의견으로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정관의 조합원 가입승인 조건이 너무 강하다는 의견과 품질관리는 자율적인 사항으로 다소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행 규정상 보성녹차연합회의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신청 및 등록심의회에는 문제가 없으며,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명칭,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유명특산품의 증명,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자체품질관리계획 등을 검토·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으므로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신청한 보성녹차지리적표시등록신청건에 대해서는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결론임
-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정관에서 회원자격은 보성에서 녹차를 재배 생산하여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 대표자로 하고 정관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자로 되어 있는 것은 지리적표시제 발전을 위해서도 타당성이 있음
- ▶ 차 맛은 수치상의 차이보다는 관능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바, 많은 소비자들이 보성차를 즐기고 있으며, 보성차와 관련된 관광객의 숫자만큼이나 보성차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 보성차는 대부분 단일품종으로 재배되지 않고 잡종화되어 여러 품종이 혼재되어 있어 동일한 차밭 내에서도 차의 새순이 돋는 시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리적표시대상으로 하고자하는 찻물차는 손으로 채취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차 잎 채취후 곧바로 가공과정을 거치므로 보성녹차 특유의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것임
- ▶ 보성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는 차는 재래종으로 지역의 기후풍토에 잘 적응하여왔기 때문에 보성차 특유의 향과 맛을 갖고 있는 것이며, 또한, 여러 가지 품종이 혼합되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차의 맛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특유한 맛을 내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 것임
- ▶ 토양특성은 차밭이 대부분 산비탈에 조성되어 있으며, 사양토로 배수가 잘 되고, 차밭주위에는 숲을 조성하여 바람을 막고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음
- ▶ 지리적 기상특성은 보성 지역이 제주나 하동을 제외하고는 년 평균기온이 높고, 강



우량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월부터 10월 생육기 중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 보아 차의 생육과 관계되는 지리적 기상특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 지형적인 특성은 차 재배지가 주로 득량만과 보성강 주변, 제암산 및 존재산 아래에 남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형특성상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은 것으로 보아 이러한 지리적 여건이 차재배의 적지로 평가되며, 지형적인 특성이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 호수와 바다의 특성은 북쪽으로는 보성강과 주암호로 둘러 싸고있어 내륙성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득량만, 순천만의 해양성 기후가 받혀주고 있어 연중 안개 일수가 많다는 것은 기록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있음
- ▷ 이와 같이 토양, 기후, 지형의 특성과 호수, 바다 등이 잘 어울려져 최고급 차의 품질을 만들어주는 천혜의 고장이라는 지리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됨
- ▷ 보성녹차의 명성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 관광객 등을 통한 명성, 대외 수상경력, 신문 및 TV 등 언론보도내용, 품질인증 획득 등에 대한 확인으로 보성녹차의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음
- ▷ 보성차의 역사성은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사찰을 중심으로 한 자생차 중심이었으며, 일제시대 때 비로소 재배차의 역사가 시작되었음
- ▷ 일제때 보성에 차를 재배하였다는 기록은 야생차에서 재배(산업)차로 전환되었다는 의미이며, 70년대에 하동 등 다른 지역으로 분양이 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보성이 차재배의 적지로 평가되며, 지역적이나 생태적으로도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 가공방법상 특성은 보성지역에 재배되고 있는 차의 품종특성상 어린 싹이 자라는 시기가 다르므로 차잎을 손으로 채취하고, 차 생잎의 변질을 막기 위해 채취와 동시에 가공하고 있으며, 지리적표시를 하고자 하는 등록대상이 세작으로서 차다·제품총량의 10% 이내로 제한하여 세작은 수작업으로 하는 수제차이기 때문에 제조·가공방법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적인 가공방법은 업체별로 비슷하지만, 마지막 공정인 출고직전 가향(加香)처리 과정은 업체별로 차이가 있어 업체별



특징이 있음

- ▷ 보성녹차의 품질특성 및 성가유지 등을 위해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보성군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녹차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으로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 ▷ 특히, 외국차와 품질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행정구역상 보성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 자체품질기준을 정하는 목적은 품질향상을 위한 자율적인 규정으로, 성가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자체품질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봄
- ▷ 자체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민간 자율적으로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품질향상을 통한 지리적표시등록제의 발전과, 생산자조직의 자발적인 조직관리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적정하다고 볼 수 있음
- ▷ 보성지역에서 녹차관련산업이 지역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11%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한 열의는 대단한 것으로 평가됨

〈참고자료〉

1.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정관
 2. 녹차 품질관련 화학성분 관능검사에 따른 품질평가 자료
 3. 보성차의 역사에 관한 자료
 4. 우리나라 차에 관한 기록 자료
 5. 보성차 재배환경 및 다향제 관련 참고자료
 6. 보성 해수녹차 목욕탕 관광객 및 입욕료 수입에 관한 자료
 7. 2001년 전국 차 재배현황
 8. 보성녹차의 보성군 기여도 분석결과
 9. 보성녹차의 지자체 활동사항에 관한 자료
- ※ 참고자료 첨부 생략

7. 지리적표시등록 심의결과 및 통보 문서

가. 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서

지리적표시등록 심의회 개최 결과

서기	간사	위원장	결재

일 시 : 2001. 12. 11(화) 14:00~16:30

장 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소회의실

안 건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참석위원 : 15명

▶ 참석자 명단 별첨

심의회 의결사항

▶ 농관원장의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요청에 대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심의 의결함

덧붙임 : 1. 심의자료 1부.

2. 회의록 1부.

3. 참석위원 명단 1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회의록

심의일시 : 2001. 12. 11. 14:00 ~ 16:30

장 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소회의실

안 건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참석위원 : 15명(참석위원명단 붙임)

회의록

▶ 먼저 의사진행 절차 설명(간사)

▶ 위원회 성원보고(간사)

▶ 참석자 소개(간사)

▶ 심의회 경과보고(간사)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는 '99. 7. 1 시행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0.9.21 농림부훈령 제1042호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운용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동 요령에 따라 2001.8.25 각계의 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2001.9.11 제1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을 선출하고,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심의를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심의회를 열어 심의키로 한 바 있음. 그리하여 조사위원회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조사위원회 개최 및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오늘 심의회를 개최하여 최종심의를 하게 되었음.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에 관한 심의〉

▶ 지리적표시 업무 추진현황 보고(간사)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신청건에 대한 심의 제안사유, 부의안건 설명(간사)

▶ 부의 안건 요약

-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 명칭 사용,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유명특산품의 증명, 대상지역의 범위,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자체품질관리기준 등에 대한 심의

▷ 위원장 인사 및 의사진행

- 조사위원장의 조사결과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응답, 토론, 심의순으로 진행

▷ 조사위원장 조사결과보고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등록심의를 위한 사실여부관계조사와 제도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였음
- 보성녹차의 명칭사용 문제는 보성에서 생산되는 우전, 곡우, 세작에만 표시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음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관계
 - 성분상 큰 차이는 없으나 품질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는 보성지역의 차밭은 재래종으로 차 잎 생장시기가 달라 단일화 될 수 없어 어린차 잎을 손으로 채취하여 즉시 가공
 - 가공방법의 차이는 크게 나지 않으나 마지막 가향처리 과정이 차이가 남
 - 기상조건은 제주, 하동 등과 같이 특징이 있는 것 같음. 바다와 경사면 등의 재배조건은 제주나 일본의 유명한 차 생산지 등과 연관관계가 있는 것 같음
 - 현행 제도는 지리적명칭과 품질특성에 너무 관계를 두고 있어 오히려 문제인 것 같음
 - 토양, 기상, 지형, 호수, 바다 등 주변여건과 조합되어 품질특성과 지리적요인과의 인과관계가 있음
- 유명특산품의 증명
 - 역사적인 기록으로 증명됨
 - 일제시대 보성에 차가공공장이 설립되고, 일본인이 처음으로 보성지역을 차 생산적지로 선정했다는 것이 증명이 됨
 - 1965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보성지역을 차 생산지로 지정·육성하고 산지를 개



간하여 전국 차 생산의 40%를 점유하게 된 것 등은 보성지역을 차 생산의 최적지로 볼 수 있음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보성군 관내로 하는 것은 타당함

- 자체품질기준

- 최상품에 대한 표시, 원료제한, 친환경재배 등 다소 엄격하게 규정
- 지리적표시제에서 품질기준을 너무 엄격하게 할 필요는 없겠으나 자율관리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음. 특히, 자율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임
- 품질이 곧 명성은 아니나 너무 엄격하게 된 것 같다고 생각됨

- 자체품질관리계획

- 매년 1월 계획을 수립, 엄격한 품질관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자율적인 사항으로 자발적인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 등록은 타당성이 있음

- 기타사항

- 지리적표시는 명성, 특성이 있으면 품질과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 엄격한 규정은 생산자의 진입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음
- 품질관리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음. 완화 필요
- 지리적표시 명칭, 품질특성, 유명특산물, 대상지역, 품질기준, 품질관리만 조사항목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단체의 의지, 지자체의 후원이나 역할,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도 조사되어야 할 것임. 보성지역의 경우 200여호 농가에서 전국의 30 ~ 40%를 생산하고, 해수녹차탕의 관광자원화, 보성녹돈 등 지역의 문화정체성 확보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봄
- 인삼이 대표적인데, 녹차를 처음으로 조사한 것은 아쉬웠음
- 품질관리법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음 : 품질관리심의회에서 품목심의를 하여 고시하기 때문에 품목이 제한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질의응답

- 우전, 곡우, 세작에 제한한다고 하면서 세작위주로 설명한 것은 무슨 의미인지? 수작업으로 채취한다는 것은 기계작업은 어떻게 하는지? 채취와 동시가공이라는 용어 삭제 필요. 특급, 고급, 중급의 수치상 차이가 별로 없는 것은 품질변별력이 없다고 생각됨. 관능검사가 중요하고 객관화 할 필요가 있음(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조사위원장 답변

- 우전, 곡우, 세작이 다 해당되나 수량상으로 세작이 주가 될 것이며, 재래종의 특성상 차 잎 생산시기가 달라 어린 차 잎은 수작업으로 채취하고 있는 것임
- 맛이 중요하며 제조방법은 비슷함. 다만 마지막 가향처리가 특징이며, 풀어주어야 하나 노하우이기 때문에 어려움
- 품질위주의 지리적표시제가 문제임. 객관화가 어려움
- 관능검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원료 300kg의 제한은 어떻게 할 것인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조사위원장 답변

- 원료제한은 자율적임
- 맛은 가변적이며, 너무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됨. 전통식품보다 더 엄격한 것을 완화하여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 프랑스 포도주는 특급, 일반 모두 표시하고 있으며, 등급을 표시하고 있음. 보성녹차는 특급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제3자의 참여를 위해 자체기준과 관리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됨(진홍청)

⇒ 조사위원장 답변

- 특급만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나 앞으로 지역을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 대상지역을 행정구역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됨. 행정구역이 변경될 소지가 있으므로 지도상에 지역을 표시해야 함. 바다, 산, 강 용어조화 부적정 문제 등 조사위원회를 조사조정위원회로 확대 개편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조사위원장 답변

- 보성지역이 아침에 안개가 많았으며, 지리적으로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 간접적 규제가 문제다. 특급외는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농수산물유통공사)

⇒ 간사 답변

- 지리적명칭 표시의 배타적인 권한은 없으며, 등록된 것에 지리적 특산품의 표시를 하는 것임
- 등급규격 회분 6%이하와 질소성분 규정, 특급, 고급, 중급 모두 4점 이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수치상 오류인지?(연세대학교)

⇒ 한식연 설명

- 회분과 질소성분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회분이 높으면 짙은맛이 강하므로 맛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며, 관능검사의 채점문제는 세작, 중작, 대작의 관계로 세작만 표시대상이며 특급에 해당되는 것임
- 차는 맛, 향, 종자가 중요하며,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시 종자와 관련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 같음(한살림)

⇒ 차심협장 답변

- 일본, 중국 등은 30여개 시험장이 있으며, 우리는 1개 시험장이 있는데 이제 10년 되었음. 세계적으로 200여개 품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제 육성중에 있음
- 중급속이나 잔류농약 검사는?(차문화협회)

⇒ 자체적으로 잔류농약검사 실시(조사위원장)

- 안전사용기준과 허용이 있음(농진청)
- 정부에서 인증한 품질수준으로 하면 될 것임(농유공)

▶ 심의 의결

- 위원장
- 지금까지 조사결과보고를 들었으며, 질의응답을 충분히 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의 의결을 하겠습니다. 찬반에 대한 의견은 거수로써 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집계(참석위원 15명모두 찬성)
- 위원장 : 거수결과 발표
- 위원장 : 심의결과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에 대해 참석위원 1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의결주문』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신청건에 대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심의 의결합니다.

2001. 12. 11.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박노형

〈기타 사항〉

▷ 위원장

-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을 품질관리심의회에서 심의후 고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대상품목에 제한을 두지 말고 신청서에 따라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서 지리적표시등록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 지리적표시등록제와 상표법과의 상충문제, 지리적명칭 상표등록을 제한해야 함

⇒ 특허청 답변

- 지리적명칭의 상표등록을 제한하고 있음. 지리적표시가 단체포장이 될 수 있으며 상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됨
- 상표법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며, 지리표시는 품질보증차원이므로 두제도의 보완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진흥청

- 유럽은 지리적표시가 우선이었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속하고 있으며, 농림부의 지리적표시를 우선시하고 있었음



나. 지리적표시등록 심의결과 통보 문서

관인생략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우 430-016 / 경기 안양 만안 안양 6동 433-2 / 전화 (031)446-0127 / 전송446-0903
위원장 박노형 간사 이광하 서기 서수철(E-mail : sch1@naqs.go.kr)

문서번호 심의회 51150-11
시행일자 2001. 12. 13. (3년)

받 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참 조 품질관리과장

제 목 지리적표시등록 심의결과 통보

선결			지	
접	일자		시	
수	시간		결	
	번호		재	
처리과			공	
담당자			람	
심사자			심	사
			일	

1. 관련 : 품질51150-639(2001.9.4)호.
2. 관련호에 의거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신청한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신청건에 대해 심의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심의 의결 통보합니다.

『의결주문』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신청건에 대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심의 의결합니다.

2001. 12. 11.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박노형

붙임 : 지리적표시등록 심의회 개최 결과(사본) 1부. 끝.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8.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공고문(요약)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우 430-016 / 경기 안양 만안 안양 6동 433-2 / 전화 (031)446-0127/ 전송446-0903
 품질관리과 과장 김상범 사무관 이광하 담당 서수철(E-mail : sch1@naqs.go.kr)

문서번호 품질 51150-907
 시행일자 2001. 12. 14. (3년)

받 음 행정자치부장관
 참 조 법무담당관

보존기간	3년	원 장		
공개여부		/		
과 장				
		품질관리주무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 관보게재의뢰(농관원공고 제2001-2호)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
 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문(안) 1부. 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01-2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12월 18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주요내용

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

- ▶ 성명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대표 : 최연호)
- ▶ 주소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762-4번지
- ▶ 전화번호 : (061) 853-4116

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 등록대상품목 : 녹차
- ▷ 등록명칭
 - 한글 : 보성녹차(우전, 곡우, 세작)
 - 영문 : Boseong Green Tea

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 지리적표시 지역의 대상범위는 행정구역상 보성군으로 한다.

라.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표 1]과 같다.

마. 신청자의 자체 품질기준

- ▷ 신청자의 자체 품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이의신청

지리적표시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별표 1, 2는 생략

9. 지리적표시 등록증 교부 및 등록사항 공고

가. 지리적표시 등록증 교부문서

“국민을 생각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우 430-016 / 경기 안양 만안 안양 6동 433-2 / 전화 (031)446-0127 / 전송446-0903
 품질관리과 과장 김상범 사무관 이광하 담당 서수철(E-mail : sch1@naqs.go.kr)

문서번호 품질 51150-
 시행일자 2002. 1. 25. (3년)
(제 1 안)
 받 음 영농조합법인보성녹차연합회장
 참 조

보존기간	3년	원 장		
공개여부		/		
과장				
		품질관리주무		
★기안자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지리적표시등록증 교부

- 귀 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 연합회의 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신청건에 대하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에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니, 동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참조하여 지리적특산품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지리적표시 특산품 성가제고를 위하여 귀 연합회 소속 회원업체에서 생산하는 녹차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1. 지리적표시등록증 1부.
 2.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 1부. 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 2 안)

받 음 : 행정자치부장관

참 조 : 법무담당관

제 목 : 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 관보게재의뢰(농관원공고 제2002-1호)

1. 귀 부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의 등록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관보게재를 의뢰하오니 관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리적표시의 등록공고문(안) 1부. 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 3 안)

받 음 : 농림부장관

참 조 : 식품산업과장

제 목 : 지리적표시등록 결과보고

1. 관련 : 품질51150-639(2001.9.4)호.
2.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에서 2001.8.23자로 신청한 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신청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붙임 : 지리적표시등록증(사본) 1부. 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 4 안)

받 음 : 받는곳 참조

제 목 : 지리적표시등록결과 통보

1.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에서 2001.8.23자로 신청한 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신청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지리적표시등록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지원장은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남지원장은 보성녹차의 성가제고를 위하여 지리적표시 특산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리적표시등록증(사본) 1부. 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받는곳 : 농관 갑, 을

(제 5 안)

받 음 : 보성군수

참 조 : 산업과장

제 목 : 지리적표시등록 결과 통보

1. 귀 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에서 2001.8.23자로 신청한 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신청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지리적표시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홍보하여 지리적표시등록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리적표시등록증(사본) 1부. 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K P G I

지리적표시등록증

1. 등록번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등록 제1호
2. 등록품목 : 녹차
3. 등록명칭
 - 한글 : 보성녹차(우전, 곡우, 세작)
 - 영문 : Boseong Green Tea
4. 대상지역 : 행정구역상 보성군으로 함
5. 등록자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대표 : 최연호)
6. 주소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762-4번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02년 1월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시행규칙 제20조 관련)

1. 표지 및 표시사항

	<p>지리적특산품 : 보성녹차(우전, 곡우, 세작) K P G I : Boseong Green Tea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등록 제1호 생산자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대표 : 최연호) 주 소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762-4번지(전화 (061)853-4116)</p>
<p>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입니다.</p>	

2. 표시방법

- 가. 크 기 : 15kg들이(510×360×240mm)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되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시의 크기를 가감한다.
- 나. 위 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다. 문 자 : 도형의 글자 첫부분과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 양쪽의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배열한다.
- 라. 색 상 : 도형 좌상단의 문양은 적색, 우하단의 문양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는 흑색으로 한다.
- 마. 도안의 크기 : 가로 8cm×세로 8cm(15kg들이 기준) 내외로 한다
- 바. 글자의 크기(포장재 15kg들이 기준)
 - (1) 등록명칭(한글, 영문) : 가로 2.0cm(57point)×세로 2.5cm(71point)
 - (2)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 : 가로 1.0cm(28point)×세로 1.5cm(43point)
 - (3) 기타 문자 : 가로 0.8cm(23point)×세로 1.0cm(28point)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입니다.



나.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고 제2002-1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제5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월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지리적표시의 등록 공고

1. 지리적표시 등록일자 : 2002. 1. 25
2. 지리적표시 등록 번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등록 제1호
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 주소 및 전화번호
 - ▷ 성명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대표 : 최연호)
 - ▷ 주소 : 전남 보성군 미력면 도개리 762-4번지
 - ▷ 전화번호 : (061) 853-4116
4.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 등록대상품목 : 녹차
 - ▷ 등록명칭
 - 한글 : 보성녹차(우전, 곡우, 세작)
 - 영문 : Boseong Green Tea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 지리적표시 지역의 대상범위는 행정구역상 보성군으로 한다.
6.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는 [별표 1]과 같다.
7. 신청자의 자체 품질기준
 - ▷ 신청자의 자체 품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1]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1. 보성녹차의 품질특성

가. 보성녹차의 성분함량

구 분	총질소 (%)	아미노산 (mg/100g)	탄닌 (%)	카페인 (%)	엽록소 (%)
보성녹차	4.6	1,347	14.1	3.3	4.6

※ 자료: 차시험장(2001), 보성 지방 녹차 제품 상품의 평균치임

▶ 보성녹차는 총질소와 총아미노산 함량이 낮아 맛이 느끼하지 않고 담백하며 음용 후 감칠맛이 나고 탄닌 함량이 적당하여 떫고 쓴맛 등 5미가 분명하다. 또한 향과 맛이 독특하며 수색이 맑아 음다의 욕구를 촉진시켜주며 다음에 다시 찾게되는 것이 특징임

나. 보성 녹차의 품질특성

▶ 득량만과 보성강에서 일어나는 안개를 먹고 자란 부드럽고 살찐 햇차의 어린잎(雀舌크기)을 손으로 채취한후 빠른 시간내에 덫음 또는 증열처리를 하여 발효를 정지시킨 후 유념하는 등 보성 녹차 특유의 제품을 만드는 공정을 거치므로서 독특한 맛, 향등이 뛰어나며 다양한 기능을 갖고있는 제품으로서 보성녹차는 안심하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고품질 녹차로 평가받고 있음

다. 품질특성에 관한 설명

(1) 품종(종자) 특성

▶ 보성지방에 자라고 있는 차는 일본차나 중국차에 비해 기(氣)가 풍부하며, 이 지역

의 기후풍토에 수 백년 동안 적응하여온 재래종으로서 특이한 향과 맛을 갖고 있으며, 여러 잡종 집단이 되어 차의 맛이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특유한 맛을 내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음

(2) 경작과정상의 특징

- ▶ 보성강과 득량만 주변, 제암산 및 존재산 아래에 남향으로 다원이 형성되어있어 습도가 높고 안개가 많아 고품질 차를 생산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음
- ▶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양호하며 고급차 생산시기인 4월중 온도가 타 지역보다 0.7~2.4℃ 높아 차의 생장이 빠르며 차의 생장에 최적 조건을 이루고 있음
- ▶ 토양은 미량요소가 풍부하며 수확 후 영양소의 공급을 위해 매년 봄, 가을에 유기물인 퇴비위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후와 토양 여건이 차의 주산지의 구비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최상의 품질을 자연이 제공해 주고 있음

라. 가공과정

(1) 우전(雨前茶), 곡우(穀雨茶), 세작(細雀)

- ▶ 이른봄 첫 싹이 처음 나오는 4월에 어린잎이 1심 2엽이 되면 손으로 새순을 채취한다(곡우이전(우전)과 곡우무렵(곡우)). 새순채취 기간은 채취 시작일 부터 5 ~ 7일에 한정
- ▶ 세작은 약간 뒤인 4월하순~5월 초순까지 새순이 1심 2엽인 새잎을 손으로 채취하며 새순채취기간은 10일이내
- ▶ 수확후 빠른 시간 내에 덩음 또는 증열 처리로 발효를 중지시키고 유념작업을 7 ~ 8회 반복하여 수분이 5% 정도 되도록 건조하여 보관하였다가 출고직전 가향(加香)처리 과정을 거쳐서 녹차 특유의 5미(쓰고, 떫고, 시고, 달고, 짠맛)를 갖는 상품을 생산

(2) 중작

- ▶ 상품의 채취가 끝나면 온도가 높아져 차잎이 자연히 크고 넓어지므로 1심 2~3엽의 새순을 손으로 채취하여 우전, 곡우, 세작의 제조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다한다. 이때는 특히 온도가 높으므로 수확후 오랜시간 방치하지 않고 제다하는 것이



특징임

(3) 대작

- ▷ 중작의 채취가 끝나면 온도가 높아져 차잎이 자연히 크고 넓어지므로 1심 2~3엽의 새순을 손으로 채취하여 중작의 제조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다한다. 이때는 특히 온도가 높으므로 수확후 오랜시간 방치하지 않고 제다하는 것이 특징임

마. 포장과정

- ▷ 녹차의 포장은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소포장 은박비닐에 100g 또는 50g씩 밀봉하여 습기와 외부의 공기 침입을 막고, 지관 또는 나무 상자에 100g씩 넣어서 완전 상품화한다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가. 대상지역의 행정구역

- ▷ 동경 127.10도 북위 34.5도를 중심으로 면적은 662.29km의 보성군 일원으로 한다. 남쪽은 해안선인 득량만과 순천만 일부를 경계로 한 회천면 일대와 제암산 주변, 보성읍을 중심으로 보성강이 흘러 주암호에 이르는 주변지역, 존재산 아래 징광계곡을 대상지역으로 함

나. 지리적 기상특성

- ▷ 이 지역은 년 평균기온은 13.4℃이고 강우량도 1,459mm로서 차나무재배에 알맞은 조건을 두루 갖춘 지역이다. 특히 3월부터 10월 생육기 중에 1,310mm의 많은 비가 내려 차의 생육을 좋게 해줌



〈표 1〉 차 재배 지역별 온도 분포

지역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평균 기온
광주	-0.6	1.1	5.7	11.4	16.8	21.4	25.6	26.1	20.9	14.0	8.2	2.4	12.8
보성	0.4	1.5	5.2	13.6	17.8	21.2	24.8	25.8	21.4	15.1	8.1	2.3	13.4
강진	0.5	1.8	5.6	12.4	17.1	21.4	23.8	26.4	21.2	14.6	8.4	2.4	12.9
광양	0.5	1.8	6.6	12.9	18.1	21.6	24.7	26.3	21.2	15.5	4.3	2.0	13.0
구례	-0.1	1.7	6.5	12.9	17.6	22.0	25.3	25.8	20.8	14.5	7.5	2.1	13.0
하동	-0.4	1.0	4.8	11.2	17.2	21.8	24.9	25.6	20.8	15.8	10.0	3.2	15.9
제주 (서귀포)	6.0	6.6	9.7	14.0	17.9	20.9	25.1	26.7	23.2	18.5	13.4	8.4	15.9

〈표 2〉 차 재배 지역별 강우량 분포

지역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광주	31.5	34.4	69.1	82.1	92.0	168.8	222.6	201.2	189.5	51.9	42.9	56.8	1,222	
전남	보성	13.5	58.2	70.0	184.0	138.3	273.1	218.7	254.9	125.9	45.4	42.7	35.0	1,459
	강진	34.0	32.8	71.2	164.2	101.2	254.2	204.8	232.1	135.4	47.0	45.4	36.2	1,227
	구례	30.5	37.7	62.2	97.5	96.7	205.2	320.4	264.0	134.8	50.7	48.3	25.8	1,374
제주(서귀포)	57.8	77.2	108.0	188.7	205.9	282.3	282.6	216.5	160.9	71.3	78.4	41.8	1,776	
경남 하동	49.2	55.6	73.1	158.4	108.1	188.0	201.8	226.4	120.0	87.5	48.6	42.0	1,358	



다. 토양특성

- ▷ 토양은 사양토로 많은 강우에도 불구하고 배수가 잘되며 바다와 강이 인접해있어 온도가 따뜻하고 안개 일수가 많아 차나무 성장기에 많은 수분을 공급하는 한편 그늘을 마련하여 주어 차의 맛을 좋게하는 천혜의 특징을 갖고 있음

라. 지리적요인과 품질특성과의 인과관계

- ▷ 토양 : 사양토로서 맥반석 지대의 토양으로 토심이 깊음
- ▷ 기후 : 바다와 호수가 인접해있어 차나무 성장에 가장 적합한 기온, 강우량 등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
- ▷ 지형 : 차가 자생되는 곳은 대부분 남향이며 야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특히 계곡이 많으며 주변지역보다 표고가 높은 분지 형태를 이루고있어 사계절의 한계가 뚜렷하며 일중 온도 교차가 많은 것이 특징임
- ▷ 호수, 바다 : 북쪽으로는 보성강과 주암호로 둘러 싸고있어 내륙성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득량만, 순천만의 해양성 기후가 받혀주고 있어 연중 안개 일수가 많아 차 맛이 독특함
- ▷ 차의 최상품의 품질을 유도해 주는 기후, 토양, 지형, 호수, 바다 등이 잘 어울려져 최고급 차의 품질을 만들어주는 천혜의 고장임

[별표 2]

자체 품질기준

1. 적용범위

- ▷ 이 규격은 차나무(*Camellia sinensis* var *sinensis*)의 어린잎과 순을 원료로 하여 열처리, 방냉, 비비기,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하고 포장된 제품으로써 침출후 음용되는 녹차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용어의 뜻

- 2.1 방습포장 : 다관을 이용하여 침출시켜 음용하는 녹차에 있어서, 고유의 형태를 유지한 녹차를 방습성이 우수한 포장재로 포장한 것을 말한다.
- 2.2 비비기 : 원료의 열처리 이후에 행하여지는 공정으로서, 멩석을 이용한 수작업 또는 유념기 등을 이용한 비비기에 의하여 개개의 어린 차잎 및 순은 활모양, 말굽모양 등으로 말린 일정한 형태를 가지게 되며, 과숙한 차잎은 성형되지 못하고 부서지게 된다.
- 2.3 덩음차 : 가마솥 또는 회전솥 등에서 덩는 것에 의하여 원료 차잎의 효소작용을 억제한 후 비벼서 제조한 녹차를 말한다.
- 2.4 찢차 : 뜨거운 증기에 노출시켜서 원료 차잎의 효소작용을 억제한 후 비벼서 제조한 녹차를 말한다.
- 2.5 줄기 및 협잡물 : 차잎 채취시 혼입된 성숙한 줄기, 씨앗, 성숙해서 비벼지지 않은 차잎 및 차나무 유래가 아닌 다른 물질 등 녹차의 원료로 이용될 수 없는 성분을 말한다.
- 2.6 분말 : 차잎 및 순이 미세하게 파쇄된 것으로, 침출시 침출액중에 현탁되어 차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입자를 말한다.
- 2.8 황엽 : 노화엽 및 병들어 황색으로 변색된 차잎을 말한다.

3. 종류

3.1 방습포장 녹차

3.1.1 덩음차 : 특급(우전, 곡우, 세작)

3.1.2 찢차 : 특급(우전, 곡우, 세작)

4. 품질

4.1 품질기준

4.1.1 다음 표 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1〉 품질 기준표

항 목	기 준		
	특 급	고 급	중 급
관능품위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차 제품은 고유의 형태와 색택을 가지고 이물이 없어야 하고, 그 열수 추출물은 고유의 수색과 향미를 가지고 이미·이취가 없어야 한다. 표 2의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 결과 대상 항목 각각 4점 이상이어야 한다.
분말(%)	2.5이하	2.5이하	2.5이하
줄기 및 협잡물(%)	3.0이하		
수 분(%)	6.0이하		
회분(건물%)	5.5이상	4.5이상	4.5미만

비고 : 1. 회분은 최고 6.0%를 초과할 수 없다.

2.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차 생산을 위하여 총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않으나, 맛이 느끼하지 않도록 총질소 함량이 높지 않아야 한다.

4.1.2 표1이외의 위생 요구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다.

4.2 등급기준

4.1.1 차의 유통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품명으로 등급을 부여하되, 우전, 곡우, 세작급에 대해서만 지리적 표시를 한다.



〈표 2〉 관능품위기준

대상	항목	채 점 기 준
건조차잎(제품)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잎이 말아진 상태가 매우 균일하고 고유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거의 없는 것은 5점으로 한다 ▷ 차잎의 말아진 상태가 대체로 균일하고 고유의 형태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있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약간 있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차잎의 말아진 상태가 불균일하고 고유의 형태가 유지되지않았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많은 것은 2점으로 한다 ▷ 차잎이 말아진 상태가 극히 불균일하고 고유의 형태가 전혀 유지되지 않았으며 부스러진 차잎과 황엽이 매우 많고 이물어있는 것은 1점으로 한다.
	색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잎 고유의 녹색이나 진녹색이 선명하며, 색택이 균일하고 윤기를 가진 것은 5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녹색이나 진녹색이 비교적 선명하며 색택이 대체로 균일한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색이 퇴색되어있고, 갈색, 적색, 흑색, 청흑색 등으로 변색된 차잎이 포함된 것은 2점으로 한다. ▷ 차잎 고유의 색이 매우 퇴색되어있고 갈색, 적색, 흑색, 청흑색 등으로 변색된 차잎이 많이 포함된 것은 1점으로 한다.
건조수추출물	수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색이 선명한 담록색 또는 황록색을 띄며 잔사가 거의 없어서 매우 맑은 것은 5점으로 한다 ▷ 수색이 비교적 선명한 담록색 또는 황록색을 띄며 잔사가 약간있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수색이 적색, 흑색, 청색, 적흑색을 띄며 잔사가 많아서 탁한 것은 2점으로 한다 ▷ 수색이 적색, 흑색, 청색, 적흑색을 띄며 잔사가 매우 많아서 몹시 탁한 것은 1점으로 한다
	향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양호하고 향기가 매우 신선하며 이미·이취가 없는 것은 5점으로 한다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비교적 양호하고 향기가 신선하며 이미·이취가 없는 것은 그 정도에 따라 4점 또는 3점으로 한다. ▷ 감칠맛과 고소한 맛이 부족하며 짙은 맛이 강하고 이미, 이취가 있는 것은 2점으로 한다. ▷ 짙은 맛과 이미·이취가 강한 것은 1점으로 한다.



5. 시험방법

▷ 품질평가를 위한 시험방법은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시험방법 규정에 따른다.

6. 제조·가공기준

6.1 공장입지

6.1.1 주변환경이 제품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없고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6.1.2 공장은 독립 건물이거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식품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6.2 작업장

6.2.1 제품생산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갖추고 작업에 지장이 없는 넓이 및 밝기를 갖추어야 한다.

6.2.2 작업장의 내벽은 내수성 자재이어야 하며 원료처리장 및 내포장실의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내수성자재로 설비하거나 방균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6.2.3 작업장의 바닥은 내수성자재를 이용하여 습기가 차지 아니하도록 하며, 또한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6.2.4 작업장내에서 발생하는 악취, 유해가스, 및 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창문을 갖추거나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창문, 출입구 기타의 개방된 장소에는 쥐 또는 해충,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

6.2.5 원재료, 기구 및 용기류를 세척하기 위한 세척설비 및 청결한 물을 충분히 급수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3 보관시설 : 보관시설은 원·부자재 및 제품을 적절하게 보관할 수 있고, 내구력이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6.3.1 원·부자재의 보관시설 : 원·부자재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이 가능한 면적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보관중 변질되지 않고 먼지 등의 이물이 부착 또는 혼입되지 않아야 한다.



6.3.2 제품보관시설 : 제품 보관중 품질의 변화를 막기 위하여 고온다습하지 않아야 한다.

6.4 제조설비 : 제조과정중 설비의 불결이나 고장 등에 의한 제품의 품질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상 세척 및 점검관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작업장에 설치하여야 할 주요 기계, 기구 및 설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제조설비 사항

(1) 열처리 설비	(2) 비빔설비	(3) 방냉설비	(4) 건조설비
(5) 포장설비			

비고: 기능의 특수성에 의하여 제조설비를 증감 할 수 있다.

6.5 자재기준

6.5.1 원자재

- (1) 원료 생엽은 전남 보성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사용할 원료 차 잎의 채취시기 및 크기는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우전 :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이전에 채취한 차 잎으로 우전차 고유의 잎 크기(1.5~2.0cm)인 1심2엽을 사용한다.
 - (나) 곡우 :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또는 곡우 후 7일 이내에 채취한 차 잎으로 곡우차 고유의 잎 크기(2.0~2.5cm) 이내의 1심2엽을 사용한다.
 - (다) 세작 : 당해 년도 기상조건에 따라 전반적이며 평년에 해당하는 곡우 후 8일에서 10일 사이에 채취한 차 잎으로 세작 고유의 잎 크기(2.5~3.0cm) 이내의 1심3엽을 사용한다.
- (3) 원료 차 잎의 생산을 위한 토양관리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가) 환경친화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원료 차 잎을 생산하기 위하여 잘 부숙된 유기질 퇴비를 연간 ha당 20톤 이상을 사용하여 토양관리를 하되, 토양염류 집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 방제는 환경친화적인 방법 성페르몬, 유아등, 끈끈이트랩 등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우수한 품질의 차를 생산하기 위하여 차 밭 ha당 우전, 곡우, 세작의 최대채취량은 보성지역 평년작 평균 단수를 적용하여 연간 300kg을 초과할 수 없다.

6.5.2 용수 :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돗물이 아닌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공 시험기관에서 1년마다 음용 적합 시험을 받아야 한다.

6.6 주요 공정기준

6.6.1 이 규격에서 규정하는 녹차의 원료는 차나무의 어린잎과 순으로 한정하며, 신선한 것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6.6.2 채취한 원료는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한 신속히 열처리 등의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6.6.3 원료의 열처리는 고유의 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유지하여야 한다.

6.6.4 비비기에 사용되는 설비는 청결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6.5 가공공정을 통하여 이물 및 과숙한 차잎을 제거하여야 하며, 가공 전과정에서 이물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6.6.6 녹차의 포장재는 적절한 차광성 및 방습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6.6.7 기타 주요 공정은 공정의 특수성 및 제조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공정의 수를 증감하거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나, 각 공정에 대한 사용설비, 작업방법, 작업상의 유의사항 등을 규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 포장

7.1 포장재 : 내용물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소포장은 은박비닐로 밀봉하여 습기와 외부의 공기 침입을 막고, 지관 또는 나무상자에 100g씩 넣어서 상품화한다.

7.2 단위포장내용량 : 속포장은 100g, 50g 단위로 포장한다.



8. 표시

8.1 일괄표시사항 : 다음 사항을 아래 양식에 따라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일괄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목명	(2) 규격번호	(3) 등급	(4) 원재료명
(5) 차잎 채취지역	(6) 차잎 채취시기	(7) 내용량	(8) 유통기한
(9) 보존방법	(10) 제조자		

비고 : 1.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 및 테의 색은 배경의 색과 대조적이어야 한다.

2. 표시에 사용하는 문자는 KSA 0201(활자의 기준치수에 규정하는 8포인트 활자크기 이상의 통일된 활자로서 글씨는 고딕체로 한다.

8.2 지리적특산품의 표시 : 보성 녹차(우전, 곡우, 세작)

8.3 표시방법

8.3.1 일괄표시사항의 기재는 다음에 정한 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1) 품목명 : 제조방법에 따라 “녹차(덤음차)” 또는 “녹차(찢차)” 라고 기재한다.
- (2) 규격번호 : 규격번호는 T000으로 표시하거나, 생략 가능함
- (3) 등급 : “특급”으로 표시
- (4) 원재료명 : “차잎” 또는 “녹차엽”으로 기재한다.
- (5) 차잎 채취지역 : “전라남도 보성군”으로 표시
- (6) 차잎 채취시기 : 해당제품의 차잎 채취시기를 “년 월 (상, 중, 하)순”으로 기재하되, 채취시기가 서로 다른 차잎이 혼합된 제품의 경우에는 나중에 채취된 차잎의 채취시기만을 기재한다. 단, 인쇄공정상 항목명 바로 뒤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괄표시란 밖에 해당항목명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보기 : “2002년 5월 상순” 또는 “차잎 채취시기 : 2002년 5월 상순”

- (7) 내용량 : 내용량을 g 또는 kg 단위로 명확하게 표시한다.
- (8) 유통기한 : 제품의 품질수준이 본 규격수준 이상으로 유지 될 수 있다고 생산자가 인정하는 기한을 기재한다. 단, 인쇄 공정상 유통기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일괄표시란 밖에 표시하여도 좋다.

(9) 보존방법 : 개봉 전 또는 개봉 후의 보관상 유의점을 기재한다.

(10) 제조자 : 제조자 명 및 소재지를 기재한다.

8.3.1 지리적특산품의 표시 :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따르되, 등록명칭은 “보성 녹차(우전, 곡우, 세작)” 이라 표시하고, 영문등록명칭은 “Boseong Green Tea” 이라 표시한다.

8.4 표시금지사항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표시금지사항 규정에 따른다.

9. 검사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서 정하는 전통식품표준규격중 녹차의 검사방법 규정에 따른다.

10.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추진 일지(요약)

일 자	추진 사항	비고
2001. 2. 27	<p>▷ 지리적 표시제 시책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전남 농업기술원 차 시험장(보성) - 강사: 농림부 배호열 사무관 농관원 김철 사무관 - 교재: 농식품 지리적표시 보호제도 시책 교육 - 참석인원: 녹차생산농가 19명 보성군, 차 시험장, 농관원 관계자 9명 참석 -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 녹차의 지리적 표시제 추진을 결의하고 추진 주체로서 현행 “보성녹차 생산자 협의회” 에서 주관하기로 결정 <p>협의회장: 최연호 (보성녹차) 061-853-4116 011-9614-4117</p>	
2001. 3. 19	<p>▷ 보성군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 전남 농업기술원 보성 차 시험장 - 참석: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차 시험장, 농관원, 녹차 생산업체 등 21명 -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 구성 및 지리적 표시제 등록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사항 검토 · 농관원에서는 지리적표시 관련 서류심의, 등록, 사후관리 협조기로 함 · 지리적 표시는 고품질의 녹차 생산이 목표인 만큼 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우선 요구됨을 인식 	



일 자	추진 사항	비고
2001. 3. 27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장소: 전남농업기술원 보성 차 시험장 - 참석: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차 시험장, 농관원, 녹차생산업체 19명 -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표시등록에 따른 업체관계자 회의 및 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 설명 · “보성녹차 생산자 협의회” 내에 지리적표시 업무주관 부서를 신설키로 하고 그 책임자로 조상래(보성신옥로제다) 선임 	
2001. 4. 13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협의회 개최 - 장소: 전남농업기술원 보성 차 시험장 - 참석: 보성군, 농업기술센터, 차 시험장, 농관원, 녹차생산업체 12명 - 협의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단체 회칙 제정 · 녹차 생산계획서 작성: 8개업체(소극적인 4개업체는 제외) · 녹차 품질의 특성 설명: 차 시험장 · 자체 품질기준 협의 · 제 27회 보성 다향제 추진 협의 	
2001. 5. 12 ~ 13	▷ 제 27회 다향제 - 행사내용: 다신제, 차학술 발표회, 차 만들기 경연, 차 아가씨 선발, 차인의 밤 등	
2001. 5. 20 이후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 준비 - “보성녹차 생산자 협의회” 주관으로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서 표시등록 서류 준비 - 2001. 7월 중순경 보성녹차 지리적 표시제 등록 서류 제출을 목표로 추진	



일 자	추진사항	비고
2001. 7. 9 ~ 7.10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 등록추진 여건조사 현지출장 - 장소 : 전남농업기술원 보성 차 시험장, 녹차가공공장, 보성녹차 생산자협의회 - 조사내용 ▷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한 추진상황 ▷ 녹차생산 현황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의 문제점 ▷ 기타 생산시설 견학 등	
2001. 8. 23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제출 - 영농조합법인 → 전남지원 보성출장소	
2001. 8. 23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결과 진달(전자문서 : 첨부물 발송) - 전남지원 보성출장소장 → 전남지원장 → 원장	
2001. 8. 25	▷ 첨부물 도착	
2001. 8. 25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결과 통보 - 농림부 → 농관원 - 위원수 : 27명(당연직 10, 위촉직 17)	
2001. 8. 27 ~ 8. 30	▷ 신청서류 검토	
2001. 8. 31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류 보완요청 - 농관원장 → 보성녹차연합회장 -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2. 보성녹차의 품질특성, 5. 지리적표시지역의 표시, 6. 차제품 품질기준, 7. 품질관리계획서	
2001. 9. 3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류 보완제출 - 보성녹차연합회장 → 농관원장	
2001. 9. 4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심사요청 - 농관원장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2001. 9. 4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간사 및 서기 지정 - 간사 : 농관원 지리적표시업무 담당 주무 - 서기 : 농관원 지리적표시업무 담당자	



일 자	추진 사항	비고
2001.9.4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개최계획 통보 - 농관원장 → 심의회 위원 - 일시: 2001.9.11. 14:00 - 장소: 농관원 소회의실 - 심의안건: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신청한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등록기준 충족여부 심의 ※ 심의회 위원장 미선출로 농관원장이 업무 대행	
2001.9.4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개최계획 보고 - 농관원장 → 농림부장관	
2001.9.11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개최 수당 청구 - 품질관리과장 → 서무과장	
2001.9.11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개최 - 참석: 18명 - 심의내용: 위원장선출 및 등록심의 - 결과 · 위원장: 박노형 고려대학교수 ·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재심의 조사위원 구성: 5명(당연직 3, 위촉직 2)	농림부 한경수 김경두 참석
2001.9.12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내부보고	
2001.9.12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개최결과 보고내용을 농림부 담당자에게 메일송부	
2001.9.12	▷ 지리적표시등록 추진경과 원장님께 보고 - 심의회 결과, 향후추진일정 및 방향 등	
2001.9.12 ~ 9.13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협의 - 조사위원 5명과 조사방법 등에 대한 내용협의: 조사위원회를 개최기로 함 - 조사위원회 개최일정: 2001.9.19. 11:00 - 장소: 농관원 회의실	전화



일 자	추진 사항	비고
2001. 9. 14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 심의회 위원장 → 심의회 위원, 농관원장 - 일시 : 2001. 9. 19. 11:00 - 장소 : 농관원 소회의실 - 회의안건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신청한 보성녹차의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상 관련자료 사실여부 조사를 위한 회의 - 협조요청사항 : 신청서원본 열람, 조사위원 활동비 지원	
2001. 9. 18.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활동시 수당 및 여비지급계획보고(내부결재)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 · 운용규정(농림부훈령 제1042호, 2000.9.21) 및 지리심의회51150-2(2001.9.14)호와 관련됨 - 지출과목 · 수당 : 1762-211-001-201-06(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운영수당) · 여비 : 1762-211-001-202(지리적표시등록신청자에 대한 현지조사여비) - 지급기준 · 회의참석 :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지급(소관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외) · 현지출장 :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수당은 1일당 5만원, 여비는 5급공무원 기준으로 지급	
2001. 9. 19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활동 수당지급 요청 - 품질관리과장 → 서무과장	
2001. 9. 19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참석 5명) - 조사위원장 : 황중환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 각 위원별로 위원장에게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취합한 후 위원장이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키로 함	농림부 김경두 참석
2001. 9. 20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1차)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장 내부보고	



일 자	추진 사항	비고
2001. 9. 20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내용을 농림부 담당자에게 메일송부	
2001. 9. 22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의견서 송부 - 품질관리과장 → 황중환 조사위원장	
2001. 9. 24 ~ 9. 28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과 업무협의 - 조사위원회 의견서 작성관련 의견교환(김명호, 성명환)	전화
2001. 10. 8 ~ 10. 19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과 업무협의 - 조사위원회 의견서 작성관련 의견교환(엄기철, 황중환)	전화
2001. 10. 22	▷ 지리적표시등록심의의 자료조사보고서 작성관련 협의(황중환) - 2001. 10. 25 조사위원장 사무실을 방문키로 함	전화
2001. 10. 25	▷ 지리적표시등록 업무협의 - 협의장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서울) - 참석자 : 조사위원장, 간사, 서기 - 협의내용 · 조사보고서 작성방법, 설문조사 방법과 주체, 조사위원회 현지조사자 및 일정협의, 대상품목문제 등 논의 · 조사일정(안) : 2001. 11. 4(일) ~ 11. 6(화)	
2001. 10. 25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과 관련 업무추진경과 및 추후일정에 대하여 농림부와 협의 - 대상품목 고시는 품질인증 대상품목 고시와 병행 추진키로 함	전화
2001. 10. 26 ~ 10. 27	▷ 현지출장일정 및 출장자 협의 - 출장자 : 4명(위원 3, 서기 1) - 일정 : 2001. 11. 4(일) ~ 11. 6(화)	
2001. 10. 29	▷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자료조사를 위한 현지출장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 심의회 위원장 → 조사위원, 농관원장 - 출장기간 및 출장지 : 2001. 11. 4(일) ~ 11. 6(화), 전남 보성 - 조사내용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회원사 공장여건 및 품질관리 실태, 차발조성실태, 보성녹차의 특성 및 명성, 품질관리 의지 등 - 협조요청사항 : 신청자 및 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에 대한 협조요청, 조사위원 활동비 지원	

일 자	추진 사항	비고
2001.10.31	▷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자료조사를 위한 현지출장 여비 및 수당지급 요청 - 품질관리과장 → 서무과장	
2001.10.31	▷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자료조사를 위한 협조요청 - 농관원장 → 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장,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장	
2001.10.31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심의관련 추진상황 통보 - 원장 → 전남지원장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현지출장조사계획통보	
2001.11.1	▷ 지리적표시등록대상품목 고시관련 협의(농림부) - 품질인증 대상품목 고시와 병행추진(2001.11말)	방문
2001.11.4 ~ 11.6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심의자료조사를 위한 현지출장 - 출장자 : 4명(조사위원 3명, 서기) - 조사내용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 회원사 공장여건 및 품질관리 실태, 차발조성실태, 보성녹차의 특성 및 명성, 품질관리 의지 등	
2001.11.9 ~ 11.10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에 대한 협의 - 조사위원 5명과 조사보고서 작성 등을 위한 조사위원회개최일정 협의(2명 참석불가) - 조사위원회 개최일정 : 2001.11.14. 13:00~17:00 - 장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회의실(서울)	전화
2001.11.12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 심의회 위원장 → 심의회 위원(3명), 농관원장 - 일시 : 2001. 11. 14. 13:00~17:00 - 장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회의실(서울) - 회의내용 : 영농조합법인 보성녹차연합회가 조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검토 및 종합보고서 작성 - 협조요청사항 : 조사위원 활동비 지원	
2001.11.13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활동 수당지급 요청 - 품질관리과장 → 서무과장	



일 자	추진사항	비고
2001.11.14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 - 일시 : 2001.11.14. 13:00~17:00 - 장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회의실(서울) - 참석 : 조사위원 3명, 서기 - 토의 결과 제시된 의견을 서기가 정리하여 종합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다음 참석한 조사위원 공람 및 의견을 첨삭하여 최종보고안을 작성 - 작성된 최종보고안을 가지고 조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확정이 되면 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키로 함	
2001.11.15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2차)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장 내부보고	
2001.11.15 ~ 11.17	▷ 조사보고서 작성	서기
2001.11.19 ~ 11.22	▷ 조사위원 공람 및 의견수렴 - 서기 → 조사위원 → 서기	
2001.11.23 ~ 11.27	▷ 의견수렴결과 검토 및 보고서 수정	
2001.11.29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 심의회 위원장 → 심의회 위원(5명), 농관원장 - 일시 : 2001. 12. 4. 13:00~17:00 - 장소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회의실(서울) - 회의내용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심의 자료조사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협조요청사항 : 조사위원 활동비 지원	
2001.12.03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활동 수당지급 요청 - 품질관리과장 → 서무과장	
2001.12.04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 - 일시 : 2001.12.04. 13:00~17:00 - 작성된 보고서 내용 중 조사자 소수의견 및 최종결론 부분 수정키로 함 - 보고서를 수정한 후 조사위원모두 서명하여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	

일 자	추진 사항	비고
2001.12.05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개최결과 보고(3차)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장 내부보고	
2001.12.05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심의 자료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조사위원회 → 심의위원장	
2001.12.06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개최계획 통보 및 협조요청 - 심의회 위원장 → 심의회 위원, 농관원장 - 일시 : 2001. 12. 11. 14:00 ~ - 장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회의실 - 회의내용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심의 - 협조요청 : 보고서(인쇄) 및 회의실 준비, 심의위원 수당지원	
2001.12.07 ~ 12.08	▷ 심의위원 배부용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심의 자료조사결과 보고서 인쇄(50부)	
2001.12.10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참석자 수당지급 요청 - 품질관리과장 → 서무과장	
2001.12.11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개최 - 일시 : 2001.12.11. 14:00~16:30 - 보성녹차 지리적표시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심의 의결함	
2001.12.12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개최결과 보고(최종)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내부보고	
2001.12.12	▷ 지리적표시등록심의 결과 통보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 농관원장	
2001.12.14	▷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공고 관보게재의뢰 (농관원공고 제2001-2호) - 농관원장 → 행자부(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2001.12.18	▷ 지리적표시의등록신청공고 관보게재(농관원공고 제2001-2호) 및 농관원 홈페이지 게재(1개월간 이의신청 접수)	
2002.1.25	▷ 지리적표시의 등록증 교부 및 공고(농관원공고 제2001-1호) - 신청자에게 등록증 교부, 관보게재 의뢰, 농림부보고, 지원 및 보성군 통보, 홈페이지 게시	
2002.1.28	▷ 지리적표시 등록 보도자료 제공 - 1. 29 연합통신 등 게재	
2002.1.30	▷ 지리적표시 등록 공고문 관보게재	

II. 보성녹차-지리적특산품의 표시 및 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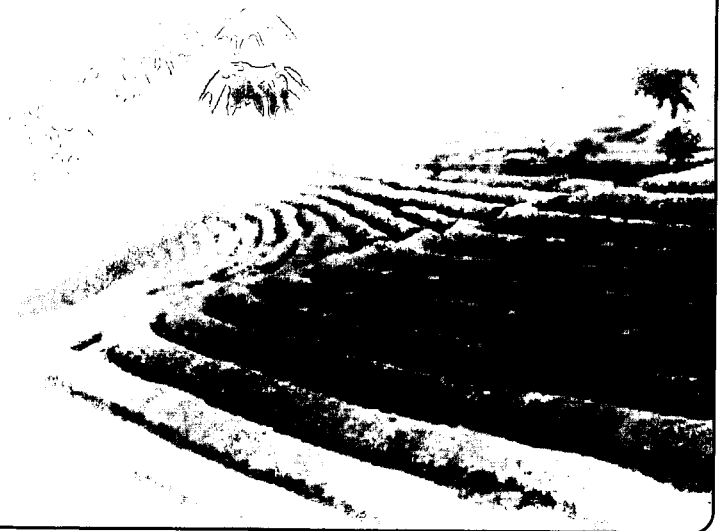
가. 상표 및 지리적특산품 라벨 부착



나. 지리적특산품 표시방법 및 출하

- ▷ 지리적표시등록을 필한 보성녹차연합회가 『지리적특산품 표지 및 표시사항』라벨을 인쇄하여 각 회원사별 지리적특산품의 수량에 맞추어 나누어주면 회원사는 녹차 포장의 표면에 동 라벨을 붙여 출하

II. 지리적표시등록제도의 이해



여 백

1. 개요

가. 도입배경 및 목적

- ▷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협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협상의 대상으로 추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영역을 상품 및 서비스생산 중심에서 지적재산권 영역까지 확대시켰음
- ▷ 「TRIPs」협정에 대한 일반적 이행은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부터 의무화하고 있으나, EU는 '92년부터 EU규정을 제정하여 지리적표시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고, '96년 10월 한·EU기본협력협정 체결시 EU의 지리적표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
- ▷ 「TRIPs 협정」상의 신지적재산권으로 포함된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상품의 지리적 표장을 권리화의 대상으로 삼는 제도임
- ▷ 한·칠레 FTA협정에서는 칠레산 주류에 대한 지리적표시보호 강화 요구
- ▷ 이와 같이 최근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적 특산품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99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지리적표시등록제 도입
- ▷ 지리적표시등록제도는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및 소비자정보제공으로 생산자 및 소비자보호가 그 목적
 - 우수한 지리적특성을 가진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적특산품의 품질향상,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 도모
 - 국내 지리적 특산품 생산자를 보호하여 우리 농산물 및 가공품의 경쟁력 강화
 - 소비자에게 충분한 제품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



나. 실시경과

-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시행근거 규정마련(99.7.1. 농산물품질관리법)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구성·운용규정 제정(2000.9.21)
- ▶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고시(2000.9.26)
 - 녹차,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 ▶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2001.8.25)
 - 당연직 10명, 위촉직 17명

다. 법적근거

- ▷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내지 제11조(표시변경 등의 처분), 제33조(청문),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제16조(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등), 제17조(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제1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 제19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지리적표시 등록의 신청), 제17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심사 등), 제1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등), 제1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등), 제20조(지리적특산품의 표시방법)

라. 지리적표시의 개념정립

(1) 지리적표시 개념의 생성과정

- ▷ 지리적표시에 대한 보호는 1883년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for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에서 처음으로 규정된 이후, 1891년 '허위·기만적 출처표시금지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 1958년의 '원산지명칭보호와 국제등록에 관한 리스본협정(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Regulation)'으로 보호수준이 강화되고, '92년의 '농산물 및 식료품의 원산지명칭 및 지리적표시보호에 관한 EU규정'과 '94년의 'WTO/TRIPs협정'으로 정착되었음

(가) TRIPs 협정 이전의 지리적표시 특징

▶ 파리협약에서의 지리적표시 도입

- 최초로 지리적표시가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받게 되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상품의 수입금지가 가능하게 되었음
- 파리협약에서는 지리적표시(indication of origin)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고 있으며, 허위표시도 기만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일반인들에게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에는 적용되지 않게 했음

▶ 마드리드협정에서의 지리적표시

- 파리협약보다 지리적표시에 대해 좀더 넓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음
- 지리적표시를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로 표기하고 있으며, 기만적인 허위표시 뿐 아니라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지리적표시도 규제대상이 되고 있음
- 원산지국의 지리적표시가 수입국의 일반명칭(종류표시)이 되는지 여부를 수입국의 관계기관이 판단하게 하고 있음. 다만, 포도제품의 지리적표시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 리스본협정에서의 지리적표시

-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으로 표기되는 이 협정상 지리적표시는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해당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는 경우 그 상품에 부여될 수 있는 지리적 명칭을 의미(WIPO, 1994 : 제1조 2항)



※ WIPO는 1967년에 창설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로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WIPO체제의 전통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이 높지 않고 그 권리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에 불만을 갖고 UR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미비함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결국 TRIPs협정이 채택되었음
- 이러한 정의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원산지명칭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첫째, 명칭이 특정한 지역 내지 지방의 지리적 명칭이어야 함
- 둘째, 원산지명칭이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특정상품을 지칭하는데 사용되어야 함
- 셋째, 그러한 상품과 지리적 환경간에는 품질상의 연관이 있어야 함. 이는 「리스본 협정」상의 지리적표시가 단순한 출처표시가 아니라 품질과 연관된 지리적표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 함
- 등록된 원산지명칭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음
- 등록된 원산지명칭은 협정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서 보호받게 됨
- 오인이나 혼동유발의 가능성이 없는 도용이나 모방에 대해서도 규제가 이루어지게 됨
- 원산지명칭은 소비자의 보호 뿐 아니라 생산자의 보호 및 권리확보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상품의 특성이나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가 기만되지 않을지라도 원산지명칭을 사용할 수 없는 자의 권리침해로부터 생산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됨

(나)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

1) 「TRIPs 협정」의 특징

- ▷ 「TRIPs 협정」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분야가 가장 크게 부각되었음
- ※ 「TRIPs 협정」 이전에도 여러 지적재산권 관련 무역협정이 있었지만 가입에 대한 강제



력이 없는 회원국 당사자간의 (자발적) 무역협정에 불과하여 협정에 가입하는 회원국 수가 적었는데, 「마드리드 협정」 가입국 수는 31개국이었으며, 「리스본 협정」 가입국 수는 17개국이었으며, 한국은 어느 협정에도 가입하지 않았음

▶ 「TRIPs 협정」은 우루과이라운드(UR)의 지적재산권 협정으로 성립되어 1995년 등장한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협상 대상이 되었음

- WTO 회원국 전체가 협정이행의 의무를 갖게 됨

- 한국의 경우 「TRIPs 협정」 이행은 2001년부터 의무화됨

▶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는 「리스본 협정」상의 원산지명칭을 기초로 하고 있음

- 지리적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의미

▶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산업제품을 포괄하고 있음

- 제품의 품질이 지리적 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우, 지리적표시의 대상은 농수산물로만 한정하지 않음

※ 지리적표시의 대상을 농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한정하는 유럽연합(EU)의 제도와 차이가 있음

2)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 보호내용

▶ 원산지 이외의 곳에서 생산된 상품이 허위표기를 해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이를 금지시키는 구체적 방법은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음(동 협정 제22조 제2항)

▶ 지리적표시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장은 상표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동 협정 제22조 3항)

▶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해서는 허위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진정한 원산지를 표시하였더라도 “유형”, “타입”, “모방” 등의 표현을 병기한 지리적표시의 사용 또한 금지하고 있음(동 협정 23조 1항)
- 포도주나 증류주의 지리적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는 등록을 거절하거나 무효화하고 있음(동 협정 제23조 2항)
- ▷ 지리적표시제의 이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출현을 막기 위해 지리적표시가 보호되기 이전에 등록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의 유효성이나 사용권리를 저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동 협정 제24조 5항)
- ▷ 원산지국에서 보호되지 않는 지리적표시는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동 협정 제24조 9항)

3) 「TRIPs 협정」상의 지리적표시제가 갖는 의미

- ▷ 「TRIPs 협정」에서는 원산지국에서 보호되지 않는 지리적표시는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지리적표시에 대한 제도화는 개별 국가들에 있어 자국의 통상무역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즉, 지리적표시를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상대국(외국)의 지리적표시는 보호해주면서 자국의 상품은 타국에서 지리적표시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각국은 지리적표시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2) 지리적표시의 정의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상의 정의

- ▷ 법 제2조(정의) 5에서 “지리적표시라 함은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음

(3) 지리적표시의 명칭사용

- ▶ 지리적표시란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또는 가공품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역, 특정 장소(예외적인 경우 국가도 포함)의 명칭을 의미함
- ▶ 예를 들어 “꼬냑”의 경우 원래 프랑스 꼬냑지역에서 생산되는 증류주에 지리적표시로 “꼬냑”이란 명칭이 사용된 것이었는데, 지금은 보통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이며, 쿠바의 하바나 시가, 프랑스의 브르고뉴 포도주, 보르도 포도주, 샴페뉴(샴페인) 등이 대표적인 지리적표시 명칭임
- ▶ 지리적표시는 반드시 지리적 명칭(특정한 지역, 지방, 산, 하천 등의 명칭)이어야 하며, 지리적 명칭과 관련이 없는 브랜드는 상표로는 가능하나, 지리적표시의 대상은 아님

(4) 유사개념과의 구분

(가) 상표와의 구분

▷ 상표의 개념

- 상표는 특정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의 표장을 의미(상표법)

▶ 공통점

- 타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식별표지

▷ 차이점

- 상표는 특정기업과 관련되며 특정기업은 해당 상표에 대해 배타적·독점적 재산권을 향유하는 반면, 지리적표시는 특정지역과 관련되며 특정지역 또는 지방의 지리적명칭에 대한 일종의 단체 사용권임
- 상표는 특정상품의 품질, 명성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



으나, 지리적표시는 이를 핵심요소로 함

- 품질인증은 일정기간동안(1년) 인증하고 갱신해야 하나, 지리적표시는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항구적으로 유효
- 품질인증은 신청자격에 제한이 없으나, 지리적표시는 원칙적으로 특정 품목에 대한 특정지역의 단체에 한함

마. 지리적표시등록제의 필요성 및 등록의 기대효과

- ▶ 지리적표시등록제의 필요성은 크게 적극적인 면과 소극적인 면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우선 지리적표시등록제의 적극적인 필요성에 대한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음
- ▶ 지리적표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처럼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 그러므로, 지리적표시는 항상 지역적인 명성과 함께 하는 것이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품질이 뛰어나고 명성이 있게된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여 보호해 줌으로써 성가를 보장받게 되는 것임
- ▶ 또한, WTO/TRIPs 협정에서도 지리적표시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 협정에서의 지리적표시는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본질적으로 자연적,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고, 생산 및 제조과정이 당해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상품의 산지를 명시해 등록,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과 결부되어 갖는 특정상품의 품질에 대한 명성이 훼손되거나 부당하게 이용

되는 것을 방지로 하고 있음

- ▶ WTO/TRIPs 협정에서는 원산지 이외의 곳에서 생산된 상품이 허위표기를 해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이를 금지시키는 구체적 방법은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으며(동 협정 제22조 제2항), 지리적표시의 오인,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지리적 표장은 상표로 등록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동 협정 제22조 3항), 지리적표시제의 이행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출현을 막기 위해 지리적표시가 보호되기 이전에 등록출원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의 유효성이나 사용권리를 저해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동 협정 제24조 5항), 또한, 원산지국에서 보호되지 않는 지리적표시는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있음(동 협정 제24조 9항)
- ▶ 따라서, 「TRIPs 협정」에서는 상품의 품질과 특성이 본질적으로 자연적, 인적 요소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 기인하고, 생산 및 제조과정이 당해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그 상품의 산지를 명시해 등록, 보호해주고 있으나, 원산지 이외의 곳에서 생산된 상품이 허위표기를 해 일반인의 혼동을 야기하는 경우 이를 금지시키는 구체적 방법은 국내법에 위임하고 있으며, 원산지국에서 보호되지 않는 지리적표시는 국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있으므로, 개별 국가들은 지리적표시에 대한 제도화가 자국의 통상무역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당해 국가의 생산자나 가공업자는 지리적표시 등록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즉, 지리적표시를 제도화하지 않거나 제도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는 상대국(외국)의 상품에 대한 지리적표시는 보호해 주면서 자국의 상품은 타국에서 지리적표시로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각국은 지리적표시등록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당해 국가의 생산자나 가공업자는 지리적표시 등록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임
- ▶ 다음은, 다소 소극적인 관점에서의 지리적표시등록제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농산물 및 가공품이 국내·외적으로 명성이 있어 타지역이나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것을 당해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유통시키는 경우 원산지 혼동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또한, 품질이 낮은 농산물 및 가공



품을 명성이 있는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품질저하에 따른 소비자 불신초래는 물론 유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정지역의 명백한 지리적명칭을 개별적인 상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임

- ▷ 이와 같이 지리적표시등록제는 당해 농산물 및 가공품이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품질이 뛰어나고 명성이 있게된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여 보호해 줌으로써 성가를 보장받게 해 주는 적극적인 필요성과 특정지역의 명백한 지리적명칭을 개별적인 상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혼란 초래 방지 및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다소 소극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임
- ▷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여 품질이 뛰어나고 명성이 있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여 보호해 줌으로써 성가를 보장받게 하는 것 외에, 지리적표시등록을 함으로써 얻게되는 유·무형의 기대효과는 지대할 것임
- ▷ 지리적표시 등록추진과 관련하여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로는 우선 소득향상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지리적표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게 될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시장차별화를 이룰 수 있으며, 시장차별화는 곧 부가가치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지역민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 ▷ 또 다른 효과로는,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농산물 뿐 아니라 명성이 있는 농산가공품을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할 경우는 가공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당해 지역에서 가공산업이 발전되게 되면 지역사회는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고용창출은 지역사회의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함은 물론 지역사회를 유지 발전시켜 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임
- ▷ 지리적표시등록 추진으로 기대 할 수 있는 효과로는 지자체의 자립기반 구축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지리적 명성이 있는 유명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함과 동시에 당해 지역의 관광명소를 연계하여 package로 관광상품을 개발 할 경우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며, 관광산업발전은 또 하나의 지역경제 개발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자체의 자립기반 구축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



- ▶ 다음은, 농산물 품질향상에 따른 대외경쟁력 확보를 들 수 있는데, 당해 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한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품질향상에 노력함으로써 당해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촉진할 수 있으며, 품질향상은 곧 농산물 수입개방에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대외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임
- ▶ 지리적표시 등록추진과 관련하여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생산자단체조직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긴밀히 유지 할 수 있으며, 협조체제가 원만히 유지 될 경우 생산품목의 전문화가 가능하며, 생산품목의 전문화는 곧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세계화에 따른 수출확대를 모색해 볼 수 있으며,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 지리적표시 등록제도는 소비자보호와도 관련이 있는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증명하는 “지리적표시 등록”을 해 줌으로써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가공품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명성이 있는 특정지역의 명백한 지리적명칭을 무분별하게 개별적인 상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임
- ▶ 지역문화유산 창달 및 보존과 관련된 것으로, 국가적으로 명성이 있는 유명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 할 경우 당해 농산물 및 가공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자체의 자립기반 구축은 물론 지역문화 행사와 연계하여 추진할 경우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정립 될 수 있으며, 지역문화로 정착될 경우 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임



- ▶ 지역특산물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데, 각 지역별로 가장 특성이 있는 품목을 1품목씩 선정해서 지역명품으로 육성하여 지리적특산품으로 등록을 추진하여 주력 상품화 할 경우 경쟁력 제고와 함께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지역특산물 육성과 함께 농업·농촌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임
- ▶ 특정농산물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방지 및 적정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데, 현행 지역특화사업과 연계하여 각 지역별로 가장 특성이 있는 품목을 1품목씩 선정해서 지역명품으로 육성하여 지리적특산품으로 등록을 추진, 주력 상품화 할 경우 경쟁력 제고와 함께 지역특화 품목으로 자리잡게 됨으로써 적정생산을 유도할 수 있으며, 적정생산에 따른 가격조절 기능이 가능해져 결국 농업·농촌경제에 도움이 될 것임
- ▶ 그 외 지리적표시등록제의 효과로는 농가소득증가 및 지가 상승을 들 수 있는데, 지리적특산품의 명성과 함께 당해 상품의 가격이 상승 할 경우 직접적인 소득증대는 물론 부수적으로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토지가격 상승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음
 - ※ 지리적표시제의 효과와 관련한 외국의 사례로 프랑스의 예를 들면, AOC(원산지명칭보호) 승인 이후 당해 지역의 토지가격이 150배까지 상승한 곳이 있으며, 상빠뉴의 경우 1ha의 포도밭에서 5억원 정도의 수입(밀농사의 1천배)이 발생한 지역도 있으며, 브르고뉴지역의 포도 경작면적은 1.8%이지만 농가소득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

바. 지리적표시의 등록 요건 및 실효성

- ▶ 지리적표시의 등록 대상이 되려면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함
 - 해당 지역, 특정 장소 또는 국가에서 기원(지리적 기원)
 - 지리적 원산지에서 기인하는 특수한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지리적인 특성)
 - 해당 상품의 '생산, 가공 준비과정이 동시 또는 각각'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함 (지역과의 연계성)



- ▶ 지리적표시 등록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려면 원료농산물 보다 농산물 가공품의 등록이 바람직함
- 신선야채류 등은 유통기간이 짧아 지리적표시 등록의 효과가 낮으므로 유통기간이 비교적 긴 가공품의 등록이 효과적임(적정한 유통기간)
- 가급적 당해 지역내에서 생산되고 가공되어야 희소가치가 인정되어 지리적표시등록이 쉽고 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임

2. 외국의 지리적표시제 운용현황

가. 유럽연합(EU)의 지리적표시제

EU는 지리적표시를 원산지명칭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 PDO)와 지리적표시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PGI)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AOC'나 이탈리아의 'DOC' 스페인의 'denomination de origen'은 모두 원산지명칭보호(PDO)를 의미함

※ PDO와 PGI의 차이점

원산지명칭보호(PDO)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과정 모두가 해당지역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표시보호(PGI)는 생산, 제조 및 처리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연계성이 있으면 이 범주에 포함됨, 예를 들어 원료를 외지에서 가져오더라도 어느 지역의 특수한 제조방법에 의해 생산되면 PGI에 해당되며 보호수준은 PDO와 동일함

(1) 등록현황

2000.3월 현재 527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으며(PDO 326개, PGI 201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프랑스 112, 이탈리아 101, 그리스·포르투갈 각각 76, 독일 60, 스페인 48개 등이, 품목별로는 치즈 139, 과일·채소 109, 육류·육가공 133, 광천수 31개 등이 등록되어 있음

(2) 보호내용

- ▷ 다음의 표시에 의해 보호상품의 명칭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 처벌을 가하고 있음
- 지리적표시에 대한 유사·허위표시, 번역이 되어 사용되는 경우
- '양식', '유형', '방식', '어느 산', '모조품', 및 '유사한' 등의 표현을 수반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유발하는 모든 표시
- 내·외부포장, 광고물 또는 관계서류, 용기의 포장 등에 잘못된 또는 오인케 하는 표시

※ 벨기에의 Bel'Ardenne 회사의 지리적표시 사례

□ 회사개요

- ▶ 1902년에 설립한 DETRY라는 육가공업체의 방계공장으로 Wallon지방 Bastonge군에 위치
- ▶ 주요 생식품목: 햄과 소시지, 베이컨 등 11종류의 돈육가공품을 주당 약 20톤씩 생산
- ▶ 원료는 현지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가져오지만 지역의 전통적인 제조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리적표시 보호대상으로 선정

□ 지리적표시 내용

- ▶ 1991년 벨기에 정부로부터 “Jambon d'Ardenne”라는 지리적표시 사용을 허가받고, 그후 1996년 7월 EU규정에 의해 지리적표시(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PGI)로 등록됨
- ▶ 햄이 지리적표시 품목으로 선정된 이유는 너도밤나무와 참나무 톱밥에 향신료를 첨가한 약한 불에 8주일 이상 서서히 그을리는 지역의 고유한 제조방법을 따르기 때문임
- ※ 햄만이 지리적표시 품목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같은 회사에서 제조하는 돈육가공품인 소시지나 베이컨 등은 지리적표시를 할 수 없음
- ▶ 생산물에 대한 지리적표시는 품질을 확인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차별화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타사와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함

□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품질확인 및 검사

- ▶ “PPOMAG”란 검사기관이 정부와 계약에 의해 생산량을 확인, Stamp를 공급하고 수시로 표본을 추출하여 지리적표시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확인
- ▶ 생산업체는 생산계획과 실제 생산량을 PROMAG에 신고해야 함
- ▶ 생산량에 따라 15~30일간 사용할 Stamp를 미리 판매하는데 Stamp 당 10BF(약 250원)

나. 프랑스의 지리적표시제

(1) 지리적표시의 도입배경

- ▶ 프랑스에서는 1900년대를 전후하여 외국산 포도 및 포도주에 밀려 자국산 포도관련산업에 위기(품질하락, 가격폭락, 표시문란)가 도래함에 따라 포도주산업의 부흥을 위해 AOC(원산지명칭보호)제도를 도입
- ▶ 1935년에 '포도주 및 증류주 국가위원회'를 설치
- ▶ 1947년에 INAO(국립원산지명칭관리소)를 설치하면서 AOC제도가 본격화 되었음
- ▶ 1955년에 치즈에 대한 보호체계를 확립
- ▶ 1990년에 기타의 모든 농산물 및 식료품에 대해 확대 적용함으로써, 프랑스의 AOC(원산지명칭보호)제도는 품질관리, 농가소득보장, 소비자보호 등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음

(2) 등록현황

- ▶ 현재 와인, 증류주, 치즈 기타 버터, 농축우유, 건포도, 당근, 간, 천연수 등이 PDO(원산지명칭표시, 약 550개) 혹은 PGI(지리적표시, 약 150개) 보호대상으로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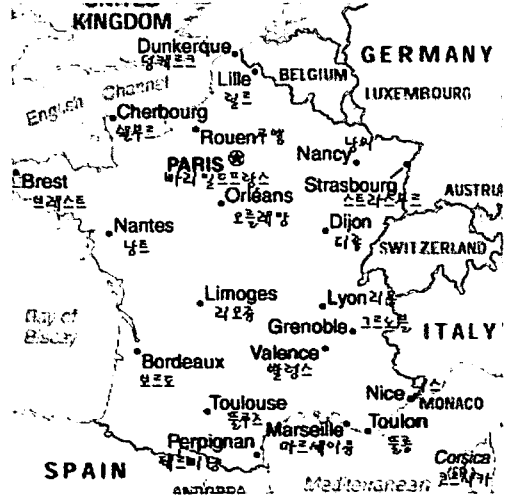
(3) 등록 및 관리운영

- ▶ INAO(Institute National les Appellation d'Origine)이 등록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데 생산자단체(가공 및 유통업체 포함)들이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한 후 INAO에 제출하고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품목별 규정에 대한 초안을 마련한 다음 농무성에 제출하면, 농무성에서 최종 승인

(4) 보르도 포도주의 지리적표시 사례

(가) 개요

- ▶ 보르도(Bordeaux)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급포도주 생산 지역임. 보르도의 명성은 Medoc, Saint-Emilion, Pomerol 및 Sauternes(white wine) 지역에서 생산되는 적포도주에서 비롯되었지만, 백포도주 등 기타 여러 종의 우수한 포도주도 생산되고 있음



- ▶ 보르도지역에는 57종류의 원산지명칭, 9000여의 포도주 생산 포도원, 13,000의 포도생산자가 있음

(나) 보르도 포도주 생산지역

- ▶ 적포도주 생산지역
 - Bordeaux and Bordeaux Superieur
 - Cotes de Bordeaux
 - Libournais(Pomerol and St-Emilion)
 - Medoc
 - Graves Grape Varieties, (eg: Merlot, Cabernet Franc)
- ▶ 백포도주 생산지역
 - Entre-Deux-Mers and Graves(Dry)



- Sauternes and Barsac(sweet) (eg: Semillon, Sauvignon Blanc, and Muscadelle)

(다) 포도주 등급구분 및 표기

▶ 보르도 포도주는 크게 3단계로 등급을 구분하며 다음처럼 라벨에 표시

▶ Bordeaux

- 단순히 보르도 표시만 되어 있는 포도주는 보르도의 원산지명칭 보호중 첫단계로 가격이 가장 싼

- 이 종류의 포도주는 싸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보급형 포도주이며, 특정지역명 또는 특정포도원의 이름으로 불리워지기보다는 Mouton-Cadet 같이 브랜드명으로 불리워지는 것이 보통임

▶ Bordeaux + 지역

- 오직 일정한 정의된 지역내에서 생산될 때 Medoc나 St-Emilion과 같은 지역명을 보르도 다음에 붙여 표시할 수 있음

- 보르도만 표기되어 있는 포도주보다 상급의 포도주임

▶ Bordeaux + 지역 + 포도원(Chateau)

-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최상급의 포도주에는 보르도 명칭 다음에 지역명과 포도원의 이름을 표시하고, 개별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는 Chateau wines(포도원 포도주)이라 불리게 됨

- 보르도 지역에는 약 9,000여개의 포도원이 있으며,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포도원은 수백개 정도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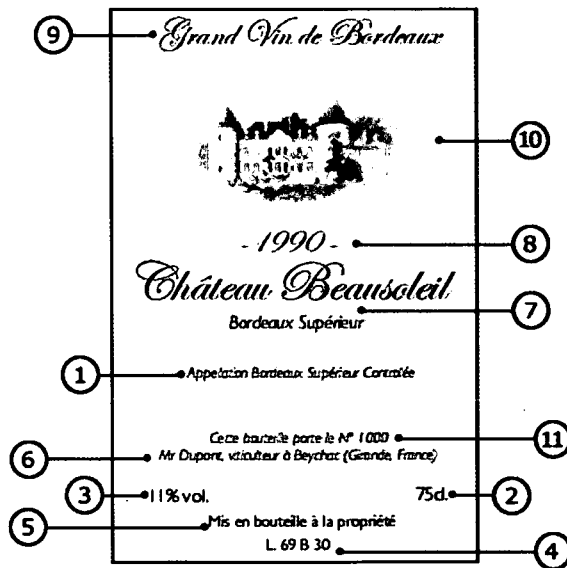
· 예를 들어 Medoc지역에서는 61개의 포도원이 1855년에 공식적인 구분작업을 거쳐, 최고급생산지역에 해당하는 Grand Cru Classe라고 불리워지고 있으며, 한단계 낮은 등급의 포도주생산지역인 Cru Bourgeois에는 240여 포도



원이 지정되어 있음

- 포도원의 이름이 표기된 포도주는 보르도 포도주 중에서 최상급의 포도주이며, 그중에서도 Grand Cru Classe에서 생산되는 포도주는 전세계적으로도 가장 비싼 포도주로 알려져 있음

보르도 포도주 지리적표시 라벨표기



□ 필수표기사항

- ① A.O.C(원산지명칭보호 ; PDO)의 명칭
예) Saint-Emilion 지역에서 생산되는 포도주에는 "Appellation Saint-Emilion Contrôlée" 로 표기
예) 프랑스에서는 지리적표시로 원산지명칭보호(PDO)와 지리적표시보호(PGI) 2가지 형태가 존재함
- ② 포도주의 액체량, 보통 75cl(centiliter)가 표준임
- ③ 알코올의 함량
- ④ 식별번호
- ⑤ 포도주가 병에 담겨진 곳의 이름
- ⑥ 생산자의 주소, 이름, 국가명

□ 선택표기사항

- ⑦ 포도주가 만들어진 포도원의 이름, 보통 고급 포도주에 chateau(포도원의 이름)가 표시됨.
- ⑧ 포도주의 원료로 사용된 포도가 수확된 년도
- ⑨ 보통 보르도 포도주에 붙이는 호칭
- ⑩ 포도주가 생산된 포도원의 로고
- ⑪ 용기번호



보르도의 57종 원산지명칭

▶ 보르도 포도주생산지역에는 아주 소량만 생산하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57종의 원산지 명칭이 존재한다.

Red wine appellations :

- Bordeaux
- Bordeaux Superieur
- Premieres Cotes de Blaye
- Bourg or Cotes de Bourg
- Bordeaux - Cotes de Francs
- Cotes de Castillon
- Graves de Vayres
- Premieres Cotes de Bordeaux
- Sainte-Foy Bordeaux
- Medoc
- Haut-Medoc
- Margaux
- Moulis
- Lustrac-Medoc
- Saint-Julien
- Pauillac
- Sainte-Estephe
- Graves
- Pessac-Leognan
- Saint-Emilion
- Saint-Emilion Grand Cru
- Lussac - Saint-Emilion
- Montagne - Saint-Emilion
- Puisseguin - Saint-Emilion
- Saint Georges - Saint-Emilion
- Pomerol
- Lalande-de-Pomerol
- Fronsac
- Canon-Fronsac

Rose wine appellations :

- Bordeaux rose
- Bordeaux claiert
- Cremant de Bordeaux

Dry white wine appellations :

- Bordeaux
- Sauvignon de Bordeaux
- Cremant de Bordeaux
- Entre-deux-Mers
- Entre-deux-Mers Haut-Benauge
- Bordeaux Haut-Benauge
- Blayais
- Cotes de Blaye
- Premieres Cotes de Blaye
- Cotes de Bourg
- Bordeaux-Cotes de Francs
- Graves de Vayres
- Graves
- Pessac-Leognan

Sweet white wine appellations :

- Bordeaux Superieur
- Premieres Cotes de Bordeaux
- Cotes de Bordeaux - Saint Macaire
- Sainte-Foy Bordeaux
- Graves Superieures
- Sauternes
- Barsac
- Cerons
- Cadillac
- Loupiac
- Sainte-Croix-du-Mont

(5) Cognac의 지리적표시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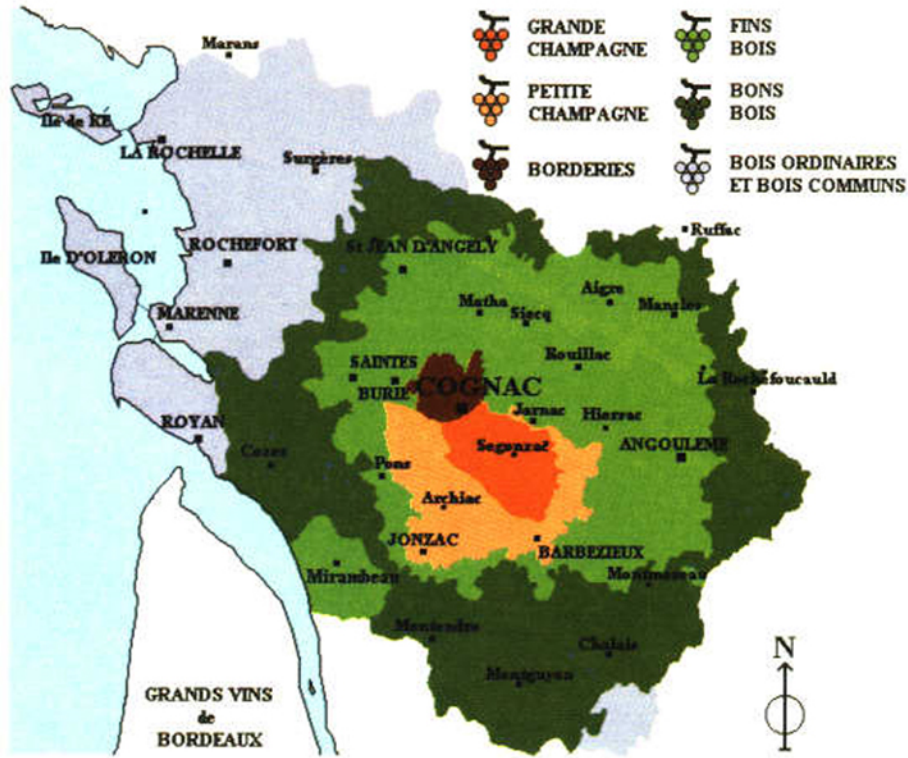
- ▶ Cognac이란 원래는 Cognac(Charentes지역 및 Deux Servres의 일부지역)에서 White grapes(ugni blanc)로 생산되는 브랜드에 지리적표시를 한 것이었음
- ▶ 지금은 보통명사화되어 브랜드의 한 종류로 인식이 되고 있는 등 지리적표시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음

(나) Cognac이 생산되는 지역

- ▶ 토양의 특성(토양에 따라 최종 생산물의 품질도 상이)에 따라 6개의 지역으로 구분됨
 - ▶ 지역 구분
 - Grande Champagne Cru : Segonzac 지역, 13,000ha, clay and compact chalk soil, Premier Cru du Cognac 생산
 - Petite Champagne : 16,000 ha, clay and a more compact chalky layer of soil
 - Borderies : 4,000ha, Charente 강 위의 평원지대, 견과류 맛의 브랜드 생산
 - Fins Bois : 37,000 ha, 빨리 숙성되는 환경
 - Bon Bois : 16,000ha, less chalky but more earthy soil
 - Bois Ordinaires et Bois Communs(Bois a Terroir) : 30,000ha, 해양성(대서양)기후
- ※ 포도밭의 가격은 속한 지역에 따라 결정되며, 가장 비싼 지역은 Grande Champagne 지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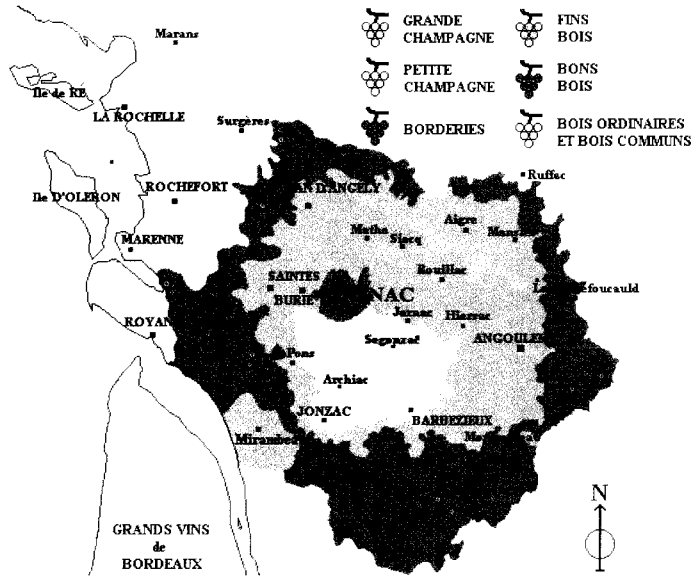


Cognac 지역 지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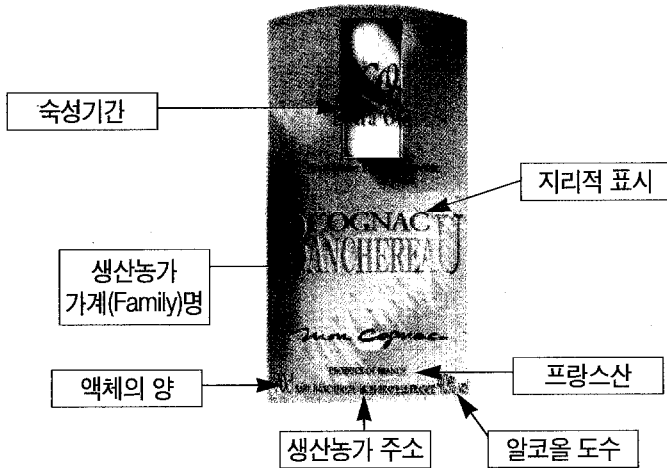
〈프랑스 Cognac〉

Cognac 지역 지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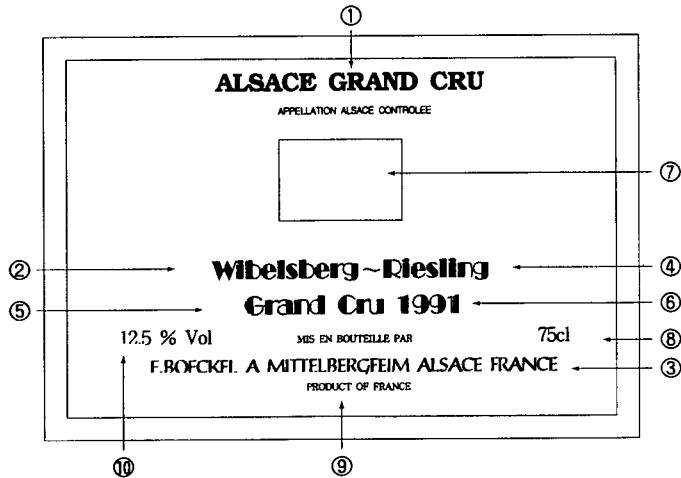


〈프랑스 Cognac〉

Cognac의 지리적표시 라벨표기



(6) 알사스지역의 포도주(지리적표시) 상표 표기



- ① 지리적 명칭의 이름(알사스)
- ② 포도주를 병에 담은 사람의 이름과 주소(장소)
- ③ 정평있는 (지정된) 곳의 이름
- ④ 포도묘목(나무)
- ⑤ Grand Cru(일급포도주)의 기재
- ⑥ 제조년도
- ⑦ 표장 그림
- ⑧ 액체의 양
- ⑨ 프랑스 산임을 표시
- ⑩ 알코올의 도수



다. 독일의 지리적표시제

(1) 지리적표시의 도입개요

- ▷ 독일은 '94년에 '68년부터 시행되던 구(舊)상표법을 폐지하고, '9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신(新)상표법(Gesetz über den Schutz von Marken und sonstigen Kennzeichen: 약칭 Markengesetz)을 제정
- ▷ 상표법은 모든 영업상의 표지보호(Kennzeichenschutz)를 규율한다는 폭넓은 구상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지리적표시도 상표 및 영업표지(geschäftliche Bezeichnung)와 함께 상표법에 의해 보호되는 하나의 표지(Kennzeichen)가 됨
- ▷ 신상표법 상의 지리적표시는 거래권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지리적 출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자, 기호, 도형 등의 표기를 말하는데(동 법 제126조 1항), 이는 해당 지역의 영업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표지만을 의미
- ▷ 상표법 제126조 2항에는 지리적표시를 종류표시(Gattungsbezeichnung)와 구별하고 있으며, 종류표시란 그 표시 안에 지리적표시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지리적표시로부터 생겨난 표시로서 지리적표시로서의 원래 의미를 상실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이름으로, 혹은 상품 또는 서비스의 종류(Art), 성질(Beschaffenheit), 품종(Sorte) 또는 기타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시를 말함

(2) 지리적표시 보호방법

- ▷ 독일의 신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보호는 3단계로 구성되어 있음
- ▷ 단계별 보호내용
 - 제1단계는 기초적인 지리적표시로 출처가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가 특정 지역의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상표법 제127조 1항), 이는 타 지역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지역의 지리적표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의 보호규정임
 - 제2단계는 품질관련적인 지리적표시로서 해당 지역의 상품 또는 서비스라 하더라도



일정한 품질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지리적표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상표법 제127조 2항에는 “특별한 속성 또는 품질을 지닌”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 이러한 지리적표시를 부여하고 있음

- ※ 특별한 속성 또는 품질의 의미는 객관적인 특성이나 품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계의 신뢰에 상응하는 생산원칙 내지 품질조건을 의미하고 있으며, 거래계의 신뢰는 어떤 지리적표시를 갖고 있는 상품이 특정한 전통적 생산방법에 따라 혹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해당 지역의 품질관리 조건에 따라 생산되고 있다고 신뢰하는 것인데, 이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임. 따라서 해당 지역에 위치한 생산자가 그곳의 지리적표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생산원칙 또는 품질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것임
- 제3단계는 상표법 제127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명성이 있는 지리적표시의 보호로서 지리적표시에 대한 보호가 매우 강하여 이것이 지니고 있는 명성의 희석화(Verwässerung)나 오용으로부터 보호됨

(3) 지리적표시 보호방식

- ▷ 지리적표시에 대한 보호방식은 원칙적으로 단체상표 등록에 의한 보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동 법 제102조 1항 및 2항)
- ▷ 단체상표 사용에 관한 정관에 포함할 사항
 - 단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요건
 - 단체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생산자의 범위
 - 단체상표 사용의 요건
- ▷ 단, 한 개인이나 법인이 배타적 권리를 갖는 개별상표 등록은 지리적표시에 대한 공동사용의 필요성이 결여된 경우와 해당 지리적표시가 특정한 영업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통용되고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됨



(4) 지리적표시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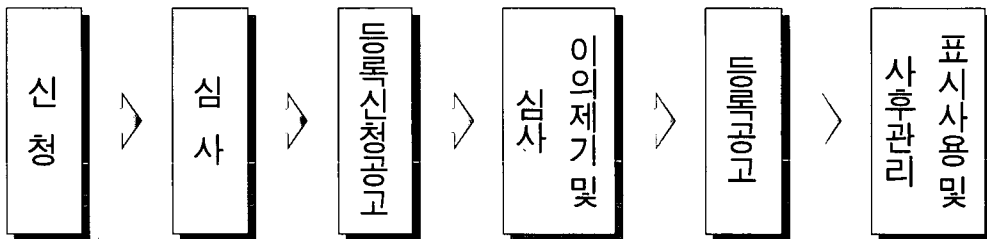
- ▶ 독일의 지리적표시 등록 절차는 (단체)상표 등록과 동일하여 상표심사 이외에 지리적표시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없음

(5) 지리적표시 대상 품목

- ▶ 지리적표시의 대상을 농수산물 및 식료품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상품 및 서비스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3. 지리적표시 등록절차와 주요내용

가. 등록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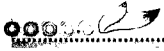
나. 주요내용

(1) 등록대상품목

- ▶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

(2) 신청자격

- ▶ 원칙적으로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단체에 한하고, 예외적으로 지역내에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만 존재하는 때에는 개인도 가능



(3) 등록신청 및 심사

- ▷ 등록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리적표시관리기관에 제출하고 표시관리기관은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심사요청
- ▷ 등록심사기준은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일 것, 품질등급이 표준규격의 최상등급일 것,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4) 이의신청 및 심사

- ▷ 등록신청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누구든지 이의제기 가능하며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서 이의제기사항 심사

(5) 지리적특산품의 사후관리 및 보호내용

- ▷ 지리적특산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등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
- ▷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행위 금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4. ~~지리적표시등록제도 세부내용~~

가. 신청자격(시행령 제17조)

(1) 신청자격

- ▷ 특정지역 안에서 지리적 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함
- ▷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지역 내에 1인만 존재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신청가능

(2) 신청자인 단체의 조건 및 역할

(가) 단체의 조건

- ① 농협, 축협, 인삼협, 농협중앙회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②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한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 위의 ①, ②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함

(나) 단체의 역할

- ▷ 지리적표시의 등록 및 기등록신청서류의 수정등록
- ▷ 회원관리: 신규회원의 가입 및 부적합한 기존회원의 탈퇴 관리
- ▷ 등록기준 준수 및 자체품질관리관련 교육 실시
- ▷ 해당 지리적표시에 대한 각종 침해행위로부터 방어
 - 국내외에서의 각종 침해행위(허위, 유사, 혼동유발 표시) 조사
 - 침해행위 시정요구 또는 소송
- ▷ 자체품질관리노력 및 품질발전대책 강구
 - 역사적으로 형성된 해당 품목의 명성을 유지·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 노력 강구
- ▷ 해당 상품의 수요촉진 및 판매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나. 신청대상품목(시행령 제16조)

- ▶ 농산물 및 가공품 중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
- ▶ 현 고시품목 : 녹차,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다. 등록신청 및 등록심사(시행규칙 제17조)

(1) 등록신청

- ▶ 신청인은 등록신청서(수수료는 10만원 상당의 수입인지 첨부)와 7가지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를 제출코자 하는 경우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출장소에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신청서를 접수받은 지원 또는 출장소는 계통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송부
- ▶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
 - ①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 1부
 - ②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 ③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④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 ⑤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 ⑥ 자체품질기준 1부
 - ⑦ 품질관리계획서 1부
- ※ 구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작성방법을 참조



(2) 등록심사 요청

- ▶ 신청서를 접수한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심사 요청

(3) 심사 항목

- ▶ 지리적표시의 명칭
-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4) 등록기준(시행령 제15조)

- ▶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
- ▶ 품질등급이 표준규격의 최상등급 또는 관행적 최상등급일 것
- ▶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 ▶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 지역 안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일 것
- ▶ 기타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라. 심사결과의 처리(시행령 제18조)

- ▶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심의결과를 참작하여 처리
- ▶ 부적합 통지



- 지리적표시를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

▷ 보완 통지: 부적합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등록신청공고: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때

▷ 등록신청공고 내용

- 지리적 표시 등록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지리적 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신청자의 자체품질기준

-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마. 이의신청 및 심사(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8조)

▷ 지리적표시는 해당지역의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신청단체가 지역주민의 합의를 모아 등록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이의가 제기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현행법에는 일정기간의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음

▷ 등록신청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누구든지 등록신청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방법은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심사하여 거쳐 다음과 같이 이의사항을 처리하게 됨

- 지리적표시 등록: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 부적합통지: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 등록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바. 지리적 표시의 등록 및 등록공고 (시행령제18조, 시행규칙 제19조)

-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 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증 발급
-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 공고를 해야 함
- ▷ 등록공고 사항
 -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 지리적표시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 및 등록명칭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사. 지리적특산품의 표시(시행규칙 제20조)

- ▷ 지리적표시등록을 받은 자는 지리적특산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별표4의 표시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관련법령(발체) 참조)

아. 등록취소 및 취소공고(법제11조, 시행규칙 제19조)

-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취소사유가 있어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취소공고를 하여야 함
- ▷ 등록취소사유
 -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3차에 걸쳐 한 때
 -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2차에 걸쳐 위반한 때
 -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제품에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를 한 때



- 지리적 표시등록을 받은 자가 전업·폐업 등의 사유로 지리적특산품의 생산이 곤란 한 때

▷ 등록취소공고 사항

- 취소일자 및 등록번호
-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취소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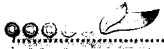
자. 지리적특산품의 보호 및 사후관리

(1) 허위표시 등의 금지(법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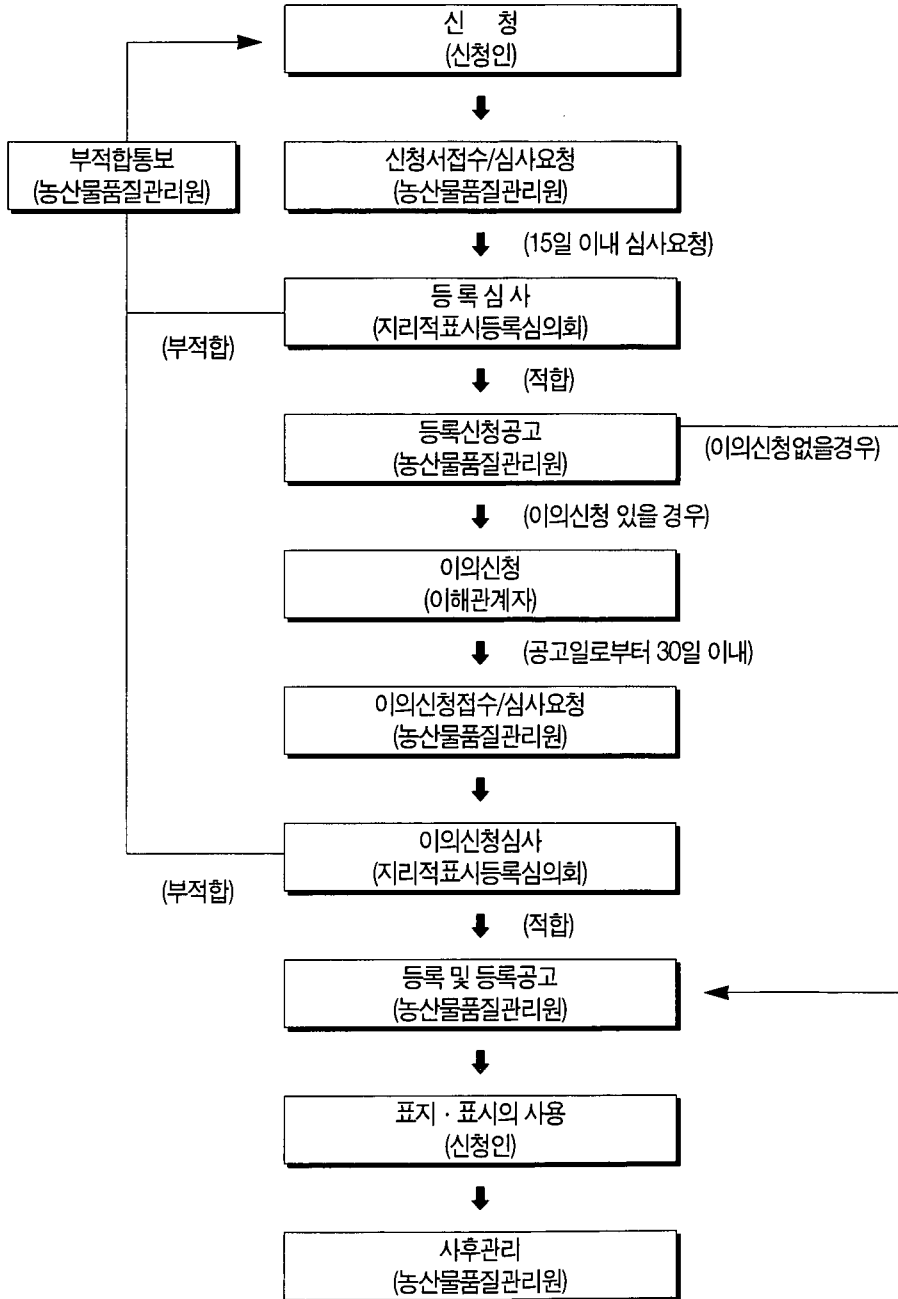
- ▷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산물 및 그 가공품에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금지
- ▷ 지리적특산물에 지리적특산품이 아닌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금지

(2) 사후관리(법 제10조)

- ▷ 지리적표시관리기관장은 지리적특산품의 품질수준의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조사를 할 수 있음
 - 지리적특산품의 등록요건에의 적합성 조사
 - 지리적특산품의 관련서류 등의 열람
 - 지리적특산품의 시료수거·조사 또는 전문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의뢰



〈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도〉





□ 주체별 지리적표시 등록절차상의 내용

신청인	① 신청서류 구비하여 신청서 제출 - 신청서에 7가지 구비서류 작성 첨부
지리적표시 관리기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② 신청서 접수 및 심의요청(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요청) ④ 등록신청 공고 및 부적합 통지 ⑥ 이의신청접수 및 심의회 회부 ⑧ 이의신청 심사결과에 따라 등록 또는 부적합 통지 ⑨ 등록, 등록증 발급 및 등록 공고 ⑩ 사후관리
지리적표시 등록심의회	③ 등록기준 적합성 심사 -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서의 검토 및 사실조사와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⑦ 이의신청 심사
이해관계자	⑤ 이의신청(등록신청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

5.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의 선결요건 및 성공요인

가. 등록대상품목 고시

- ▶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으로 고시한 품목을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이 가능함
- ▶ 비고시 품목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은 불가함
- ▶ 따라서, 지역의 명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는 당해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품목 고시를 위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지리적표시 등록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산림청장 또는 농림부장관에게 당해 품목의 지리적표시 대상품목 고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농림부장관은 당해 자료를 근거로 하여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친 후 대상품목으로 고시를 하게 됨
- ▶ 이때,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 회부를 보류하거나, 동 심의회에 회부를 하여 심의한 결과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으로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심의를 할 우려가 있으며, 부적합으로 심의가 될 경우는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으로 고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임

나. 당해 품목의 명성 증명

- ▶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명성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알려져 있어 다른 지역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당해 지역산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등 명성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야 함
- ▶ 명성에 대한 또 다른 증명 방법으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게 될 것임

- ▷ 그러므로, 지리적표시 등록추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산, 강, 들녘 등으로 구분되는 지역구획이 단일 시·도나 시·군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주 생산지도 특정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어 생산지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것이 지리적표시 등록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음
- ▷ 가공품의 경우는 당해 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농산물을 지리적표시의 대상 지역 안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타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여 당해 지역 내에서 가공하여도 가능하나, 가급적 당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 가공하여야 특징적일 수 있는 것임
- ▷ 원료농산물을 수입품이나 타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 가공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정통성이 희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대량생산에 따른 희소가치성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품질 차별화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리적표시 등록의 성가가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임
- ▷ 따라서, 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통성 확보나 희소가치 및 품질 차별화를 이루는 측면에서 가급적 당해 지역내에서 생산된 원료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할 것임. 다만, 전통적으로 원료농산물 중 주재료가 아닌 부재료로 사용되는 일부를 이웃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여 제조하여 왔다면 부득이 당해 품목에 대해서는 이웃지역의 원료농산물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마. 신청자의 조직화

- ▷ 지리적표시 등록은 개별적인 상표로 등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명칭을 사용한 지역전체의 공동브랜드이므로 등록을 추진하고자 하는 품목이 당해 지역의 생산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지 몇 명만 참여하여 조직을 결성하여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접수가 되어도 등록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등록이 불가할 것임



- ▷ 따라서,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 하고자 할 경우는 사전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당해 품목을 대상으로 당해 지역 안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어 당해 지역의 생산자조직을 구성하여 조직화하여야 되는 것임
- ▷ “고려인삼” · “고려수삼” · “고려홍삼” ·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내 전체를 대상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인삼류의 경우는 인삼류를 생산하는 국내전체 농가 및 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조직을 구성하여 조직화하여야 등록 신청이 가능함
- ▷ 다만, 당해 품목의 생산자가 1명인 경우는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조직화는 해당되지 않음

바. 품질차별화 전략

- ▷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부분 중 하나가 당해 품목의 품질차별화임. 즉,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이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그 가공품과의 품질차별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또한 이를 증명하여야 함
- ▷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당해 품목의 품질이 차별화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 당해 품목에 대한 유효성분량에서부터 품위, 맛, 향기, 기호성 등 여러 항목에 대한 비교자료가 나와야 되며, 또한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임
- ▷ 그리고, 당해 지역내에서도 당해 품목의 품질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차별화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품질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 자체기준으로 한다면 다른 지역의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품질기준과 차이가 나지 않는 기준이라면 지리적표시의 성가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므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보다 강화된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



- ▷ 아무리 차별화된 품질기준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기준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것이므로 당해 조직에 참여한 조직원들은 스스로 자체품질기준을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조직은 자율적인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품질관리 체제를 갖추어 조직원들의 생산물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사. 이해관계자의 동의

- ▷ 지리적표시는 개별적인 상표가 아니라 지역전체의 공동브랜드이므로 당해 지역에서 당해 농산물이나 당해 가공품을 생산하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다함께 지리적표시 등록 및 표시에 참여하여야 하나,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않는 생산자가 있는 경우는 그 생산자는 지리적표시 등록 및 사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동의를 해 주어야 함
- ▷ 이를테면, 당해 지역에서 지리적표시 등록 참여를 원하지 않는 생산자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사전에 지리적표시 등록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지리적표시 사용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약속과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에서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을 하여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신청공고를 하게 되면 이해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있을 수 있고, 이의신청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한 지리적표시등록은 무산되는 것임
- ▷ 그러므로, 원만한 지리적표시 등록 및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당해 지역에서 당해 품목을 생산하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다함께 지리적표시 등록 및 표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생산자가 있는 경우는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겠다는 사전 동의를 있어야 하는 것임



아. 조직참여 제한 금지

- ▶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당해 품목을 대상으로 당해 지역 안에서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 당해 지역의 생산자조직을 구성하여 조직화하여야 되는데, 조직을 결성하게 되는 경우는 반드시 조직결성 및 운영을 위해 일정한 조건을 설정한 규약을 만들게 될 것이며, 그 규약에는 반드시 조직참여 자격항목에 대한 조건을 설정하게 될 것인데, 당해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당해 지역에서 당해 품목을 생산하는 자가 조건을 갖추어 당해 조직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됨
- ▶ 조직참여 자격항목에 대한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당해 조직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조직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게 되면, 기존 조직원에 대한 특혜가 되어 지리적표시 등록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자격조건을 설정한 경우 누구든지 자격조건을 갖추어 조직원이 되고자 한다면 조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자.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의지

-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자체가 어려워,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의 모든 제반요건을 두루 잘 갖추어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이 완료되었을 경우라도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으면 지리적표시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임
- ▶ 우선,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서는 지리적표시등록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조직결성에서부터 모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는 것으로, 조직결성을 위한 규약마련은 물론 자체품질기준과 품질관리기준 마련 등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 ▶ 자율적인 자체 품질기준과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의 자체품질관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으



면 지리적표시제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임. 즉, 지리적표시 등록 후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인기도에 따라 품질기준에 미달되는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출하하는 경우는 당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신용도가 추락할 것이며, 품질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다른 경쟁제품에 비하여 품질경쟁력에서 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지리적표시에 대한 효과는 기대 할 수 없으며, 지리적표시제 자체가 실패하게 될 것이므로 생산자나 생산자단체의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임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작성예시

(앞쪽)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6월
신청인	단체명	지리산야생녹차 협의회(가칭)		구성원수	00명	
	대표자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소	전남 00군 00읍 00리 00-0번지		전화번호	061-000-0000	
생산계획	품목	녹차				
	재배면적	000ha	생산지역	000	생산량	M/T
	포장 또는 가공공장 소재지	전남 00군 00읍 00리 00-0번지				
지리적표시 등록의 주요내용		표시에 들어가는 내용 등 표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				
<p>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00년 0월 00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지리적표시관리기관의 장 귀하</p>						
<p>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다) 1부 2.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1부 3.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부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1부 6. 자체품질기준 1부 7. 품질관리계획서 1부 						<p>수수료</p> <p>건당 10만원 (수입인지 뒷쪽붙임)</p>

27273-07011민
99. 6. 15 승인

210mm × 297mm
(신문용지 54g/㎡)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작성방법

1. 등록신청서 구비서류 작성요령

- ▷ 등록신청서 필요한 7가지 구비서류는 신청자가 해당 품목의 특성 및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자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므로 규정된 작성 양식은 없으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중점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임
- ▷ 구비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애로사항이나 질문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 작성

2. 구비서류 기재내용

가. 생산계획서(생산량)

생산계획서는 단체전체와 소속회원별 등 2가지 생산계획서를 작성

(1) 단체의 생산계획서(생산량)

- ▷ 원료의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급별 생산량 및 등급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품질에 따라 등급구분이 있을 경우)
가공품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급별 생산량 및 등급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품질에 따라 등급구분이 있을 경우)

(2) 단체소속 회원별 생산계획서(생산량)

- ▷ 단체전체의 생산계획서에 준하여 회원별로 각자 생산하고 있는 생산량에 대하여
기술

〈갑회원〉

- ▷ 원료의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급별 생산량 및 등급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
가공품의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급별 생산량 및 등급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



〈을회원〉

- ▷ 원료의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급별 생산량 및 등급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
- ▷ 가공품의 총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등급별 생산량 및 등급별 단위 면적당 생산량

·
·
·

나. 품질특성 설명서(등급별로 품질특성 설명 가능)

(1) 종자특성(품종)

- ▷ 품종이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서술
- ※ 품종은 학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통적 품종의 개량형 기재(예, Panax ginseng C.A. Meyer-000)

(2) 경작과정상의 특징

- ▷ 파종, 이식, 시비, 습기, 토양관리, 병충해방제, 수확시기 및 수확방법 등에 관한 내용 및 특징
- ※ 경작과정상의 특징은 해당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해 행해지는 특징적인 또는 표준적인 경작방법을 기재
- 예) 최종적으로 고려인삼이 되기 위한 경작방법 : 이식, 배수, 해가림 등

(3) 가공과정상의 특징

- ▷ 저장, 가공 및 포장 등의 방법 및 특징
- ※ 가공과정상의 특성은 해당품목의 품질유지를 위한 종류별·등급별 가공과정상의 특성을 기재
- 예) 백삼, 홍삼의 건조방법, 수분함량 등



(4) 최종산품의 품질특성

▷ 최종산품의 맛, 향, 색 등 관능적 특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예) 포도주라면 포도주의 맛, 향, 색 및 관능적 특성 기타 등을 서술

▷ 동종·유사상품과의 차별적 특성

예) 인삼의 경우 우리나라 인삼과 동종·유사상품인 타국(중국이나 미국) 인삼의 차별적인 특성을 서술

다. 유명특산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유명특산품임을 입증하는 자료에는 다음의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음

(1) 역사성 입증자료

▷ 해당 품목이 역사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과정 및 관련자료

▷ 해당 품목과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헌의 기록

▷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명성을 획득하였는가에 관한 자료

예) 동의보감의 기록 등...

(2) 국내적·국제적 인지도(유명성) 입증자료

▷ 해당 품목과 관련되어 수행된 연구·발표 자료

▷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 자료

▷ 국제적인 판매현황 및 인지도·신뢰도와 관련된 자료

(3) 수상경력, 주요언론보도 사례

▷ 각종 경진회 및 품평회 등에 수상한 경력

▷ TV·신문 등 보도매체에 보도된 내용

(4) 품질인증, 식품KS 등에 의한 인증 여부

▷ 품질인증, 식품KS 등 정부나 인증기관이 인증한 증명서

(5) 소비자인지도에 대한 설문자료

- ▶ 명성이나 인지도, 맛, 향기 등 품질에 관한 소비자 설문을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

라. 품질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1) 해당 품목 생산지역의 지리적 특성

- ▶ 자연환경적 특성 : 토양, 기후, 지형..... 등
- ▶ 인적특성 : 지역의 독특한 가공방법, 포장기술 또는 포장방법, 전통적인 가공방법.. 등

(2) 지리적 요인과 품질특성과의 인과관계

- ▶ 자연환경적 요인과의 관계
 - 토양, 기후, 지형.. 등 자연환경적 요인이 해당 품목의 원료 및 가공품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 ▶ 인적요인과의 관계
 - 해당 지역의 고유한 가공방법, 포장기술, 포장방법 등이 원료 및 가공품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기술
 - ※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또는 가공적 요인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

마.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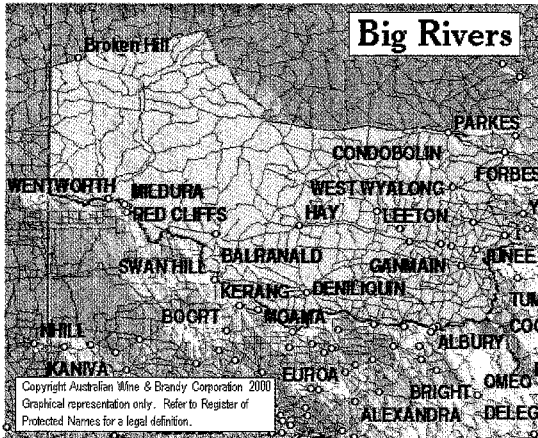
(1) 전체 대상지역 범위(하또는 평)(지도에 표시)

- ▷ 표시대상 품목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지로서 일반적인 행정구분상의 범위가 아닌 지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자연적인 요인(기후, 토양, 지형, 지세 등) 또는 인적요인(가공적 요인)에 의하여 구분된 지역



예) 호주의 포도주 지리적표시 대상지역 관련지도

GEOGRAPHICAL INDICATIONS



(2) 회원 농가별 생산지역 범위ha 또는 평(지도에 표시)

- ▷ 각 회원 농가별 생산지역을 지도상에 상세히 표시
- ▷ 생산물의 품질등급(ex. 1등급, 2등급...)이 존재하는 경우 등급에 따른 생산지역 범위를 지도상에 표시

예) 1등급품 생산지, 2등급 생산지 등 등급별로 지도상에 표시

- ▷ 회원 1농가 내에서도 여러 등급의 생산물이 생산될 경우 회원농가 내에서도 생산지역을 등급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

바. 자체 품질기준

(1) 등급기준

- ▷ 등급분류가 가능한 경우 등급별 기준 명시

예1)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의한 등급(홍삼, 백삼, 태극삼 등 품목별 연근, 품질, 포장, 표시 등의 등급) 참고

예2) 녹차의 경우 우전, 세작, 중작 등 관행적으로 존재하는 기존등급 활용

(2) 주요 성분의 최저, 최고 함량

- ▶ 함유성분중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의 최저, 최고 함량
예) 인삼의 경우 사포닌 함량 등

(3) 가공품의 경우 원·부재료 및 첨가물 사용기준

(4) 포장·표시사항 및 기타 규격·기준(필요시 참고)

- ▶ 식품위생법, 인삼산업법, 품질인증, 표준규격 등에 명시된 기준

(5) 표준규격 등의 최상등급 해당 여부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표준규격기준에 해당되는 품목의 경우 최상등급
- ▶ 다만 당해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기준에 의한 최상등급이거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기술

사. 품질관리계획서

(1) 품질검사 계획

(가) 품질관리조직, 시설, 기자재 확보내역 및 계획

▶ 품질관리조직

▶ 품질관리 관련 기자재

- 선택판별기, 함유성분 측정용 실험기기 등 품질검사에 이용되는 기기의 확보
내역

- 자체 품질관리 교육에 이용되는 기자재 확보내역

▶ 품질관리 시설

- 품질관리실 확보내역, 개소, 면적 및 활용계획



(나) 검사방법(검사시기, 검사수량, 검사방법 등)

▷ 자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표준화된 품질검사과정

- 검사시기, 검사수량, 검사방법 등

- 연간 검사계획

- 검사내용(예 : 지리적표시등록기준(신청서 및 부속서류) 적합성 등)

※ 지리적표시등록기준(신청서 및 부속서류) 적합성 여부를 통제하기 위해 필요함

(다) 자체 품질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계획

(2) 위반자에 대한 단체차원의 제재내용

▷ 단체의 회원이 지리적표시등록신청서상의 제반기준(생산지역, 생산량, 품종, 품질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단체가 자발적으로 취할 조치내용

- 위반자에 대한 단체에서의 제재·탈퇴 등에 관한 결정내용 또는 위반자에 대한 교육사항 등

아. 기타(의무적 서류는 아님)

(1) 법인등록 관련서류

(2) 식품위생법 및 세법관련 인·허가 서류

(3) 해당품목에 대한 경제분석 자료

▷ 시장동향, 유통상황, 최종산물의 가격

(4) 기타 해당품목의 특성, 지리적인과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Ⅲ. 참고자료



여 백

1. ~~지리적표시등록제도 관련 법령(발췌)~~

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관련 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설치)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이하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농산물심의회, 분과위원회 및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나. 지리적표시 등록관련 법령

농산물품질관리법

第8條(地理的表示의 登錄) ①農林部長官은 地理的 特性을 가진 優秀農産物 및 그 加工品의 品質向上과 地域特化産業으로의 育成 및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地理的 標示의 登錄制度를 실시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理的表示의 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農林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의 등록을 받은 者는 農産物 및 그 加工品(이하 “地理的特産品”이라 한다)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理的表示를 할 수 있다. 다만, 地理的特産品중 人蔘産業法에 의한 人蔘류의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표시방법 외에 人蔘류와 그 용기·포장 등에 “고려인삼”·“고려수

삼” · “고려홍삼” · “고려태극삼” 또는 “고려백삼” 등 “고려(高麗)”가 들어가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의 登錄의 기준 對象品目 對象地域 및 節次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標準規格品이 아닌 農産物에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品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品質認證品이 아닌 農産物에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3. 地理的 特産品이 아닌 農産物 및 그 加工品에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 表示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음 각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規格品表示를 한 標準規格品에 標準規格品이 아닌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2.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表示를 한 品質認證品에 品質認證品이 아닌 農産物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3.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理的表示를 한 地理的 特産品에 地理的 特産品이 아닌 農産物 또는 그 加工品을 混合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보관 또는 陳列하는 행위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 ①법 제8조제4항의 規定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품목의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일 것

2. 품질등급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의 최상등급일 것. 다만, 당해 품목에 대한 표준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이거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이어야 한다.

3.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일 것

4.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안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일 것

5. 기타 농림부장관이 지리적표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내에서 경작되는 인삼종자(*Panax ginseng* C.A. Meyer)를 국내에서 경작하여 생산된 수삼 또는 그 수삼을 원료로 하여 국내에서 제조된 품목으로 한다.

제16조(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 등)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은 농산물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

②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의 범위는 당해 품목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 지리적 특성이 동일한 행정구역, 산, 강 및 바다 등에 따라 구획한다. 다만, 인삼산업법에 의한 인삼류의 경우에는 국내로 한다.

제17조(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자격)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의 신청은 특정지역안에서 지리적표시의 등록대상품목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 또는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법인에 한한다)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품목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 및 가공업자로 구성된 단체는 특별한 사유없이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갖춘 자의 가입이나 탈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절차 등)** ①농림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회부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참작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청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 ③농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거부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사유를 기재한 서류와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⑤농림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 등록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지리적표시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산계획서(단체의 경우 각 구성원별 생산계획을 포함한다)

- 2. 품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 3. 유명 특산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4.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서
-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6. 자체품질기준
- 7. 품질관리계획서

제17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심사 등) 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 1. 지리적표시의 명칭
- 2.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3. 자체품질기준의 적정성
-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5. 기타 필요한 등록요건

제18조(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공고 등) ①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공고를 하는 때에는 그 공고내용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 3.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 4. 신청인의 자체품질기준
- 5.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②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한 결과 그 이의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등) ①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영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등록증을 발급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5.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6.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③산림청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취소일자 및 등록번호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의 품목 및 등록명칭
3.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4. 취소사유

제20조 (지리적특산품의 표시방법)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리적특산품의 포장·용기의 표면 등에 별표 4의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을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날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풋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별표 4]

지리적특산품의 표지 및 표시사항(시행규칙 제20조 관련)

1. 표지

	지리적특산품 : (등록명칭) KPGI : (영문등록명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리적표시등록 제000호 생산자 : 주 소 : (전화)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입니다.

2. 표시방법

- 가. 크 기 : 15kg들이(510×360×240mm)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되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한다.
- 나. 위 치 :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다. 문 자 : 도형의 글자 첫부분과 마지막 글자의 끝부분이 도형 양쪽의 수직선과 일치하도록 배열한다.
- 라. 색 상 : 도형 좌상단의 문양은 적색, 우하단의 문양은 청색으로 하고 글자는 흑색으로 한다.
- 마. 도안의 크기 : 가로 8cm×세로 8cm(15kg들이 기준) 내외로 한다
- 바. 글자의 크기(포장재 15kg들이 기준)
 - (1) 등록명칭(한글, 영문) : 가로 2.0cm(57point)×세로 2.5cm(71point)
 - (2) 등록번호, 생산자, 주소(전화) : 가로 1.0cm(28point)×세로 1.5cm(43point)
 - (3) 기타 문자 : 가로 0.8cm(23point)×세로 1.0cm(28point) 이 상품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는 특산품입니다.



2.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 고시

농림부고시 제2000-63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및그가공품의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0년 9월 26일

농림부장관

농산물및그가공품의지리적표시등록대상품목

농산물 및 그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농산물 및 그가공품의 지리적표시 등록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 인삼산업법 제2조에 의한 인삼류,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에 의한 인삼제품류
- 나. 녹차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에 의한 녹차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구성·운영 규정

농림부 훈령 제1042호(2000. 9.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의 구성) ①지리적표시등록을 심의 하기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에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이하 “등록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등록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자로 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 농촌진흥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부장관이 임명하는 자

2.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 중에서 지명한 자

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식품개발연구원

3. 농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유통·가공업에 종사하거나, 농산물 및 가공품 또는 지리적표시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위촉한 자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등록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등록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관리기관의 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등록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위원장은 등록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등록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등록심의회) 등록심의회는 지리적표시 등록신청품목이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1. 지리적표시의 명칭사용의 적절성
2.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대상지역 범위 선정의 적절성
3.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과의 관계, 즉 당해 품목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 또는 인적 요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품목인지의 여부
4. 당해 품목이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안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인지의 여부
5. 당해 품목의 품질의 특성 및 우수성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품목인지의 여부
6. 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규격의 최상등급 또는 표준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이거나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등급기준에 의한 등급이 최상등급인지의 여부
7. 당해 품목의 생산계획, 자체품질기준설정 및 품질관리계획의 적절성
8. 기타 농림부장관, 관리기관장 또는 등록심의회 위원장이 지리적표시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요구한 사항

등록심의회는 시행령 제18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등록심의회는 등록심의회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

항은 관리기관장이 농림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등록심의회 위원장은 지리적표시대상품목 중 특정품목을 전담하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 위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고려하여 등록심의회 위원장이 등록심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와 위촉하는 관계전문가로 하되 등록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분과위원회는 등록심의회 위원장이 등록심의회의 의결에 의해 위임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등록심의 및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의결은 위임할 수 없다.

⑦분과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⑨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조사위원회) ①등록심의회 위원장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지리적 표시등록 신청서와 등록기준의 적합성 여부 및 이의신청의 적합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등록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조사위원은 등록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품목과 지리적표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조사위원회는 대상품목을 조사함에 있어 해당품목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



행정기관의 일선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해당지역·해당품목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2항의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조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류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 각 항목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 조사보고서를 등록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위원 개인이 조사보고서와 다를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⑦ 조사위원은 해당품목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⑧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등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리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수당과 여비) 관리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등록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소집되어 활동중인 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견청취) 등록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등록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자,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조) 농림부장관, 관리기관장 또는 등록심의회·분과위원회·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등록심의 및 이의신청 심의와 관련하여 당해 품목의 특성, 지리적 인과관계에 관한 과학적·관능적 분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명단

소 속	직 책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HP)	비 고
고려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노형	58.12.29	02-3290-1885 (011-384-1885)	위촉직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과장	김태구	49.03.22	02-504-9474 (019-225-5597)	당연직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장	김상범	49.05.15	02-401-2057 (-)	당연직
농림부	식품산업과장	박형규		02-500-1843 (-)	당연직
농수산물유통공사	가공산업팀장	김중수	51.01.26	02-790-8014 (011-283-8526)	당연직
농업과학기술원	환경부장	엄기철	53.12.18	031-290-0204 (011-9034-8764)	위촉직
농촌생활연구소	농산물가공이용과장	전혜경	58.03.28	031-299-0400 (016-339-0564)	위촉직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장	이병목	46.07.31	031-299-2593 (011-897-2590)	당연직
농협중앙회	과수회훼부 차장	한상구	57.03.20	02-397-7228 (-)	당연직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사무처장	김영주	58.08.07	02-752-4227 (018-321-1283)	위촉직
생활협동조합중앙회	이사	권영근	51.03.09	02-744-8974 (011-9916-1922)	위촉직
서울대학교	농경제학부 부교수	김한호	62.02.25	031-290-2426 (016-277-2426)	위촉직
서울여자대학교	식품화학과 교수	노봉수	53.07.25	02-970-5636 (011-417-9765)	위촉직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과장	김석재	45.04.13	02-380-1726 (011-346-2905)	당연직
연세대학교	생명공학부 부교수	박지용	55.03.08	02-2123-2888 (011-288-3770)	위촉직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부회장	김조한	34.08.15	02-2265-3628 (011-321-0458)	위촉직
전남농업기술원 차시험장	시험장 장	임근철	51.03.20	061-853-5155 (011-647-3452)	위촉직
특허청	심사기준과장	이상용	53.05.13	042-481-5265 (016-450-0253)	당연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성명환	57.10.20	02-3299-4366 (011-896-0525)	당연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오원택	62.03.24	02-2194-7436 (017-326-7352)	위촉직
한국소비자보호원	표시광고팀장	최은실	64.01.25	02-3460-3441 (019-247-7436)	위촉직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규격연구팀장	김명호	59.03.01	031-780-9291 (017-329-9291)	당연직
한국인삼공사	제품개발팀장	우상기	54.08.25	042-600-0374 (018-425-7943)	위촉직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연구기획부장	박은경	46.12.10	042-866-5450 (011-438-6454)	위촉직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이사장	황종환	56.01.16	02-3452-4354 (-)	위촉직
한국차문화협회	이사	이원종	45.05.23	02-701-0475 (011-892-8029)	위촉직
한살림	전무이사	이상국	53.05.07	02-3486-9696 (018-256-9370)	위촉직
계	27개기관(단체)	27명			당연직 10 위촉직 17

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화번호

지 원	출장소	전 화 번 호	업무관할지역
경기지원		031-445-5514	안양,과천,의왕,군포, 안산,시흥,광명
	서울	02-2242-6060	서울
	인천	032-821-6060	인천, 경기 부천, 용진
	수원·오산·용인·화성	031-295-8070	수원,오산,용인시, 화성군
	의정부·동두천·양주	031-874-6061	의정부,동두천시 양주군
	평택·안성	031-657-6060	평택, 안성시
	구리·남양주·가평	031-565-6060	구리,남양주시, 가평군
	성남·하남·이천·광주	031-766-6060	성남,하남,이천시, 광주군
	파주·고양	031-944-6060	파주,고양시
	포천·연천	031-534-6060	포천,연천군
여주·양평	031-886-6060	여주,양평군	
강화·김포	032-933-6060	인천 강화군, 경기 김포시	
강원지원		033-254-3401	춘천시, 화천군
	원주·횡성	033-744-6060	원주시, 횡성군
	강릉	033-647-6060	강릉
	속초·양양·고성	033-631-6060	속초시, 양양,고성군
	삼척·태백·동해	033-574-6060	삼척,태백,동해시
	홍천	033-435-6060	홍천군
	영월	033-374-6060	영월군
	평창·정선	033-333-6060	평창,정선군
	철원	033-452-2504	철원군
	인제·양구	033-461-6060	인제,양구군
	043-254-6060	청주시, 청원군	
충북지원	충주	043-843-6060	충주시
	옥천·영동·보은	043-731-6060	옥천,영동,보은군
	괴산	043-832-6060	괴산군
	음성·진천	043-873-6060	음성,진천군
	제천·단양	043-646-6060	제천시, 단양군

지 원	출장소	전 화 번 호	업무관할지역
충남지원	천안·아산	042-256-9462 041-551-6060	대전광역시 천안,아산시
	공주·연기	041-853-6060	공주시, 연기군
	서산·태안	041-663-6060	서산시, 태안군
	논산·금산	041-736-6060	논산시, 금산군
	부여	041-835-3301	부여군
	보령·서천	041-932-6060	보령시, 서천군
	홍성·청양	041-632-2591	홍성,청양군
	예산	041-335-6060	예산군
	당진	041-354-6060	당진군
전북지원	익산·군산	063-243-9515 063-841-6060	전주시, 완주,임실군 익산,군산시
	정읍	063-533-5111	정읍시
	남원·순창	063-632-6060	남원시, 순창군
	김제	063-548-6060	김제시
	진안·무주·장수	063-432-6060	진안,무주,장수군
	고창	063-563-6060	고창군
	부안	063-582-6060	부안군
전남지원	목포·신안·무안	062-223-8871 061-243-6060	광주광역시, 전남 화순군 목포시, 신안,무안군
	여수	061-651-6060	여수시
	순천·광양	061-742-6060	순천,광양시
	나주	061-333-2034	나주시
	담양·장성	061-381-6060	담양,장성군
	곡성·구례	061-363-2037	곡성,구례군
	고흥	061-832-6060	고흥군
	보성·장흥	061-852-2641	보성,장흥군
	강진·완도	061-434-6060	강진,완도군
	해남·진도	061-536-6060	해남,진도군
	영암	061-473-6060	영암군
	함평	061-322-6060	함평군
	영광	061-351-2016	영광군



지 원	출장소	전화번호	업무관할지역
경북지원		053-941-1811	대구광역시
	포항·울릉	054-277-6060	포항시, 울릉군
	경주	054-743-6060	경주시
	김천	054-437-6060	김천시
	안동	054-856-6060	안동시
	영천	054-332-6060	영천시
	경산·청도	053-816-6060	경산시, 청도군
	구미·칠곡	054-457-6060	구미시, 칠곡군
	상주	054-636-6060	상주시
	의성·군위	054-832-6060	의성, 군위군
	영덕·청송	054-732-6060	영덕, 청송군
	성주·고령	054-931-6060	성주, 고령군
	문경·예천	054-655-6060	문경시, 예천군
	영주·봉화	054-672-6060	영주시, 봉화군
울진·영양	054-782-6060	울진, 영양군	
경남지원		055-275-2822	마산,진해,창원시
	부산	051-868-6060	부산광역시
	울산	052-265-6060	울산광역시
	진주·사천	055-755-2551	진주, 사천시
	통영·거제·고성	055-648-6060	통영, 거제시, 고성군
	밀양	055-352-6060	밀양시
	김해·양산	055-321-6060	김해, 양산시
	함안·의령	055-582-6060	함안, 의령군
	창녕	055-533-6060	창녕군
	하동·남해	055-884-6060	하동, 남해군
	함양·산청	055-964-0331	함양, 산청군
	합천·거창	055-931-6060	합천, 거창군
제주지원		064-753-2430	제주시, 북제주군
	서귀포·남제주	064-767-4900	서귀포시, 남제주군

2002년 5월 일 인쇄
2002년 5월 일 발행

지리적표시 등록업무 추진 백서

- 보성녹차 등록사례를 중심으로 -

발행인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김 선 오
편집인 : 품 질 관 리 과 장 김 상 범,
이 광 하, 김 준 규, 서 수 철
발행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33-2
☎ (031) 446-0126~7
FAX (031) 446-0903
인 쇄 : (주)이문기업 ☎ (02)504-1600

〈 비 매 품 〉